

영국의 PACE법 연구

영국의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현 숙

목 차

머리말	1
제1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제정 역사	3
제2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7
제1부 정지 및 수색할 권한	7
제2부 출입, 수색, 압수권한	21
제3부 체 포	44
제4부 유 치	63
제5부 경찰의 심문과 처우	103
제6부 실무규범일반	154
제7부 형사절차에서의 서류증거	157
제8부 형사절차상 증거-일반론	159
제9부 보칙	170
제10부 경찰의 민원과 징계	171
제11부 경찰-일반규정	173
제12부 잡칙 및 보칙	176
부칙	188
부칙 1 특별절차	188
부칙 1A 1981년 야생 및 지역공원법	194
부칙 2 제26조에 따른 체포권한의 근거	195

부칙 2A 지문채취와 샘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할 권한	197
부칙 3	207
부칙 4	208
부칙 5	208
부칙 6 사소하고 간접적인 개정	208
부칙 7 법률의 폐지	223

머리말

본 보고서는 1984년 제정된 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번역과 해설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기존에 대륙법계 국가들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측면에서 많은 번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찰관련 법규의 번역은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2011년 현재까지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형법, 프랑스 형법, 프랑스 형사소송법, 중국형사법,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일본 형법, 독일 형법 등을 번역하여 간행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최근 스위스 형법이 번역·간행된 바 있다.

영국법의 체계는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체계와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의 추세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찰과 형사증거법(1984)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하나의 법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모습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사권조정외 한 단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담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데에 착안하여 경찰이 형사소송절차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한 예로서 영국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영국의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을 해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지면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규정과의 자세한 비교 및 본법의 실무규범(Code of Practice)은 증보로 덧붙이고자 한다.

여기에서 번역의 대상을 삼은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원문은 영국의 입법부 홈페이지 (<http://legislation.gov.uk>)와 Zander M.,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2005, Sweet&Maxwell을 참고하였다. 후자는 출판된 것이나 최근의 법을 반영하지 않았고, 전자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데다가 계속 변동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령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만을 반영하였다.

그러다보니 최근 DNA샘플 채취와 관련된 규정들이 입법예고되어 발효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PACE법이 영국에서 제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법률의 번역본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각주에는 번역자의 주를 [역], 원문의 주를 [원]으로 표기하였다. 되도록 쉬운 한글로 풀어쓰다보니 우리나라의 규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나, 법률용어를 써야 할 부분에서 쓰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으며 직역을 위주로 하다보니 법률문장의 특성상 주어가 없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은 국내에 주로 PACE법이라는 용어로 소개되어 왔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직역을 통하여 영국 경찰관련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PACE법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경찰관련 영미법으로는 완역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제1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의 제정 역사

영국의 Common Law 전통에서는 국가라는 형벌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를 일반 시민에 의한 국법질서침해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았다.¹⁾ 따라서 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특별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국왕의 관리나 국민대표 등에 의한 공소추가 널리 행해졌기는 하였으나, 기본이념은 사인소추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다만 법질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범죄체포와 소추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때의 경찰소추는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소추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소추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통법 시대에는 국왕은 자신의 특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직접 궁정에서 또는 지방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대법관, 기록장관, 판사, 치안판사, 집행관, 검시관 그리고 경찰관등을 통하여 재판업무를 수행하였다. 국왕이 영국 전체 또는 각 지역의 치안유지자들을 통해 그의 특권을 지켜온 역사가 바로 보통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보통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나 범죄혐의로 고발받은 사람은 수사단계나 재판단계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의 어떠한 신문에도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지고 있지 않았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영국은 보통법의 기본이념을 계승하면서도 공정한

1) 김용진, 영미법해설, 박영사, 2009, 35면.

재판을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전에 영국 경찰의 수사 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성문법 규정이 없이 관례와 법관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법관규칙(Judge's Rule)은 1912년 상급 법원의 궁정의 판사들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고지, 피의자의 기소, 고 지하에서의 진술서 작성, 기소된 자에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의 제시 등 경찰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만든 업무지침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 법관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수집한 진술 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법관규칙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 영국에서는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을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PACE법의 제정은 10년 이상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60 년대에 형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형사사건의 증거에 관하여 연구가 시 작되었고, 1972년에 8년여의 연구 끝에 11번째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 였다. 그러다가 1977년 7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왕립' 형사사법개혁위 원회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였다¹⁾. 조사당사자의 관점에서 경찰과 피 의자 사이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려는데 설립취지가 있었다. 그러던 1978년 2월 노동당 정부가 퇴각하기 전에 '형사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설립은 무고한 3명의 청소년을 방화살인 범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Maxwell Confait사건과 직결된다. 형 사사법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적절 한 권한 행사와 전통적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1) Michael Zander,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weet&Maxwell, 2005, p.11.

것이였다¹⁾. 그에 따라 법률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경찰의 권한을 열거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경찰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개혁위원회의 보고서는 경찰관의 정지, 압수, 수색권을 강화하는 것을 권고하여 시민단체나 자유주의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다수의 법 관련 단체로부터는 ‘경찰의 권한과 피의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자 모두를 강화하려고 한 시도의 일환’으로 폭 넓은 지지를 받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법과 그 부속 실무규범의 제정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²⁾.

1984년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은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권 행사를 위한 실무규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러가지 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PACE는 경찰의 범인검거부터 피의자의 최초 법정출석까지의 절차 등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과 주거지에 대한 수색과 수색물건에 대한 압수, 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처우(신문을 포함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PACE는 종래 보통법이나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인정되어 오던 것(예: 체포권) 이외에 전혀 새로운 규정(예: 유치인보호관)을 두었다. 또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PACE는 경찰의 권한 이외에도 형사절차상 증거에 관한 중요한 규칙을 담고 있다.

PACE와 실무규범은 수사상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 PACE가 경찰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세밀하게 두고 있지만, 규정만으로 경찰수사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왕립위원회는 PACE가 경찰에 의하여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PACE와 실무규범을 위반한 경찰에 대하여 징계책

1) 김용진, 영미법해설, 박영사, 2009, 109면.

2) 이영돈,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1.8 참조.

임을 통하여 스스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이 불법 또는 불공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왕립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받아들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PACE와 실무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¹⁾.

영국에서 PACE의 제정과 시행은 형사사법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경찰의 수사활동 및 유치피의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많은 경찰관들에게 이 법은 문화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경찰관들이 기존의 수사 방식이나 관행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PACE는 수사실무 및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PACE는 2001년에는 테러관련법, 2004년에 중대조직범죄와 관련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였다.²⁾ 대체적으로 동법 내에서의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용의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무규범의 제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십년의 제·개정 역사는 현재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1) 그 내용은 이영돈, 앞의 논문, 29면과 김용진, 영미법해설, 박영사, 2009, 111면 이하 참조.

2) Michael Zander,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weet&Maxwell, 2005, p.15.

제2장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1984년 제60호

본법은 경찰의 권한과 임무,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사람, 형사증거, 경찰관 징계와 경찰에 대한 불편신고에 관한 규정을 담으며, 치안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부서장¹⁾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코틀랜드의 연방 경찰국²⁾과 경찰대 및 경찰후보생³⁾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1984년 10월 31일

본법은 고귀하신 여왕폐하와 현 의회의 (성직)상원⁴⁾의 조언과 동의, 보통법에 따라 제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정지 및 수색할 권한

1 경관의 사람, 차량 등 정지·수색권

- 1) [역] 부서장(deputy chief constable): 수도경찰국을 제외하고 영국의 지역경찰대에서 서열 2위에 있는 계급이다.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와 assistant commissioner와 같은 계급임.
- 2) [역] 연방경찰국(Police Federations):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모든 경찰관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2009년 7월까지 141,000명이 가입되어 있다.
- 3) [역] 경찰후보생(Police Cadets): 경찰관 후보생을 의미하거나 법집행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청년기구를 말한다.
- 4) [역] 성직상원(Lords Spiritual and Temporal):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 중 성직귀족 상원의원을 의미한다. 현재는 26명의 성직자가 상원의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1) 경관¹⁾은 본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a) 공공장소 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유료로 또는 권한있는 사람의 명시적·묵시적 허가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거나
- (b) 거주지²⁾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어떤 곳에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2) 경관은 본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 (a) 장물이나 금제품, 제8A항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제8B항의 불꽃놀이용 화약류를 발견하기 위하여
 - (i) 사람이나 차량
 - (ii) 차량의 내·외부에 있는 것을 수색할 수 있고,
- (b) 수색을 할 목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

(3) 경관은 본조에 따라 장물이나 금제품, 제8A항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제8B항의 불꽃놀이용 화약류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나 차량 또는 차량 내·외부를 수색할 수 있다³⁾.

(4) 사람이 점유하는 정원 또는 마당에 있고, 거주지나 다른 장소를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 [역] 경관(constable): 영국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이고, 우리나라의 순경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순경의 계급과 그 임무의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경관’이라고 번역한다.

2) [역] 거주지(dwelling):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사는 집(house)을 포함한 모든 거주장소를 의미한다.

3) [역]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a) 그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 (b) 문제가 되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경관은 본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수색할 수 없다.

(5) 차량이 점유하는 정원이나 마당에 있고, 거주지 기타 장소를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관은 차량이나 차량 내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본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수색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a) 차량을 간수중인 사람이 주거에 거주하기 않거나
- (b) 차량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시적·묵시적 허락하에 문제가 되는 장소에 있지 않은 때

(6) 수색과정에서 경관이 제8A조에 해당하는 장물이나 금제품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물품이나 제8B조의 불꽃놀이용 폭죽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본조 제1부에 따라 금지된다.

- (a) 공격적 무기 또는
- (b) (i)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개조된 물건, 본호를 적용하여 범죄와 관련된 물건
- (ii) 그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물건

(8) 제7항b호 i 목을 적용하는 범죄는

- (a) 주거침입절도
- (b) 절도

- (c) 1968년 절도법¹⁾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자동차 절취 또는 무단 양도)
- (d) 사기 (2006년 사기법 제1조에 반하는)
- (e) 1971년 기물파손법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 (재산의 파괴나 훼손)
- (8A)²⁾ 본항은 사람이 1988년 형사사법법 제139조³⁾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물건에 적용한다.
- (8B) 본항은 불꽃놀이용 화약류 규제법에 의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이 소지한 불꽃놀이용 화약류에 적용한다.
- (8C)⁴⁾ 본조에서
 - (a) “불꽃놀이용 화약류”는 2003년 화약류법 제1조제1항의 “불꽃놀이용 화약류” 정의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
 - (b) “불꽃놀이용 화약류 규제”는 위 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9) 본법에서 “공격적 무기” 란

- (a)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조·개조된 것이나
- (b) 그 또는 다른 사람이 상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말한다.

2 제1조에 따른 수색과 관련된 조항과 기타 권한

(1) 경관은

1) [역] Theft Act 1968: 1968년 절도법은 절도에 관한 영국법을 개혁하고자 한 형사법개정 위원회의 노력의 산물이다. 동법으로 절취 및 다른 기망 관련범죄에 관한 각각의 법조항이 통합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을 만들하고자 한 원칙에 가깝게 성안되었다고 평가된다.

2) [원] 본항은 1988년 형사사법법(제33호)에 따라 신설됨.

3) [역] 1988년 형사사법법 제139조: 공공장소에서 날이 있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행하는 범죄

4) [원] 제8B항 및 제8C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2005. 7. 1. 신설됨.

- (a) 위 제1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 (b) 체포없이
 - (i) 사람을 수색하거나
 - (ii) 차량을 수색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차량을 억류하는 경우에는
 - (i) 수색이 필요하지 않거나
 - (ii) 수색을 시행할 수 없으면 수색하지 않는다.

(2) 경관이 무주차량을 수색하려 할 때에는

- (a) 제1조에 따른 권한
 - (b) 제6조에 따른 권한과 1982년 항공보안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 (i) 체포하지 않고 먼저 사람을 수색하거나
 - (ii) 체포하지 않고 차량을 수색하는 때에는
- 본조 제4항에 따라, 적정한 사람이 참여하여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 (i) 사복경관은 경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 (ii) 정복 또는 사복인 때에는, 제3항에서 지정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친 후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3) 제2항 ii 호에서 지정한 내용이란

- (a) 경관의 성명, 소속경찰서명
- (b) 수색의 대상
- (c) 수색의 이유
- (d) 가능하다면 제3조제7항 또는 제8항의 효과를 말한다.

(4)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록의 작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경관은 참관인에게 제3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결과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본조에서 “지정인” 이란

- (a) 경관이 사람을 수색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 (b) 차량이나, 차량내부 또는 차량 위의 것을 수색하는 때에는,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 경관이 제2항에서 언급한 권한을 행사하여 무주차량이나 그 차량의 내외부 수색을 마친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통지문을 두어야 한다.

- (a) 경관이 수색했다는 진술
- (b) 경관이 소속한 경찰서명
- (c) 수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 (d) 제3조제8항의 효과에 대한 진술

(7) 경관은 차량에 손상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내부에 통지문을 두어야 한다.

(8) 사람이나 차량을 수색을 목적으로 억류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이나 차량을 최초로 억류한 곳이나 그 부근에서 수색을 할 때 필요한 시간과 같아야 한다.

(9)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유치하여 수색할 권한 또는 체포없이 차량을 억류하여 수색할 권한은

- (a) 경관이 공공장소에서 외투, 자켓, 장갑 이외의 옷을 탈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거나
- (b) 사복경관이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10) 본조와 제1조는 차량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나 호버크래프트에도 적용된다.

3 수색에 관한 기록의무

(1) 경관이 제2조제1항에서 언급한 권한을 행사하여 수색하는 때에는

- (a) 제6조에 따르거나
- (b) 항공보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만일

- (a) 제1항에 따라 경관이 수색사실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b) 즉시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경관은 수색을 종료한 직후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3) 사람에 대한 수색기록에는 경관이 인지한 경우 그 사람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사람을 억류할 수는 없다.

(4) 경관이 수색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수색기록에 그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차량에 대한 수색기록에는 차량에 대한 묘사를 포함한다.

(6)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수색기록에는

(a)

(i) 수색대상

(ii) 수색을 하게 된 근거

(iii) 수색을 한 날짜와 시간

(iv) 수색을 한 장소

(v) 발견된 것이 있는지 여부

(vi) 수색의 결과 경관이 사람에게 대한 상해나 재물훼손 상태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고

(b) 수색한 경관의 신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사람을 수색한 경관이 기록하는 경우 피수색자가 제9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그 기록의 복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8) 만일

(a) 수색당시 수색대상 차량의 소유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9항의 정해진 기한 내에 수색기록의 등본을 신청하고

(b) 수색을 한 경관이 기록을 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은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9) 제7항과 제8항에서 언급한 기간은 수색한 날로부터 12개월이다.

- (10) 본조의 차량수색의 기록요건은 선박, 항공기나 호버크래프트의 수색에도 적용된다.

4 도로검문

- (1) 본조는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로검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a) 도로교통 범죄 이외의 범죄 또는 차량이용 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 (b) 범죄를 목격한 사람
 - (c)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는 사람 또는
 - (d) 기타 위법하게 보이는 사람
- (2) 본조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검문은 1988년 도로교통법 제163조¹⁾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된 차량이나 그 인근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에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제5항에 따라,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때에 한하여 도로검문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도로검문을 승인할 수 있다
- (a) 제1항a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1) [역] 1988년 도로교통법 제163조(경찰의 차량정지권)

- (1) 도로에서 원동장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제복경관 또는 도로경찰이 요구하는 때에는 차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 (2)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제복경관 또는 도로경찰이 요구하는 때에는 자전거를 정지하여야 한다.
- (3) 본조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 (4) 삭제

- (i) 기소가능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 (ii) 승인된 도로검문에서 차량을 정지하는 지역에 기소가능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b) 그 범죄가 기소가능범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1항b호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 (c) 제1항c호에 특정된 목적을 위하여
 - (i) 범죄가 기소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와
 - (ii) 도로검문을 승인할 때 차량을 정지할 지역에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d) 그 지역에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d호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 (5)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제1항에 명시한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하여야 할 경우에 도로검문을 승인할 수 있다.
- (6) 만일 제5항에 따라 승인되면, 승인을 받은 경찰관은
- (a) 승인을 받은 시간을 서면기록에 기재하고,
 - (b)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승인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7) 제6항에서 부여한 의무는 가능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8) 제6항에 따라 기록을 하는 경찰관은 도로검문의 계속을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9) 경찰관이 도로검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a) 발생한 사실
 - (b) 도로검문을 중단한 목적
- (10) 본조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찰관은 그 지역에서 정지할 차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 (11) 본조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찰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제외하고
- (a) 도로검문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명시하여야 하며
 - (b) 그 도로검문을 그 기간 동안
 - (i) 계속하여야 하는지 또는
 - (ii) 지정된 시간에 행하여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12) 도로검문이 승인한 기간을 넘어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경급 이상 경찰관은 서면으로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을 넘지 않는다.
- (13) 모든 서면 승인에는
- (a) 승인한 경찰관의 성명
 - (b) 도로검문의 목적
 - (c) 차량을 정지시킬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4) 제9항과 제13항에 따라 부여된 도로검문의 목적을 명시할 의무에는 관련 기소가능범죄를 명시할 의무를 포함한다.
- (15) 도로검문으로 차량이 정지되면, 정지할 당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은 차량이

정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로검문의 목적을 서면으로 기재한 서류를 받을 권리가 있다.

(16) 본조는 제1항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정지할 경찰관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수색과 도로검문의 기록

(1)

(a) 1996년 경찰법 제22조¹⁾에 해당하거나

(b) 수도권경찰위원회가 작성하는

모든 경찰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i)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간 동안 관련보고서를 작성한 지역에서 행해진 수색에 관한 내용

(ii) 제4항을 적용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 승인된 도로검문

(1A) 삭제

1) [역] 1992년 경찰법 제22조(경찰서장의 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

(1) 각급 경찰서의 장은 각 회계연도가 끝나면 지체없이 경찰권을 행사한 지역의 당해년도 동안의 경찰권행사내용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 각급 경찰서장은, 경찰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경찰권행사내용을 경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경찰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경찰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보고서가 공익상 공개되지 말아야 하거나 경찰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서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서장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장관이 승인한 때에만 그 요청이 유효하다.

(6) 경찰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삭제

(2) 수색에 대한 정보에는 특별수색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나, 다음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

(a) 보고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i) 장물

(ii) 공격적 무기 또는 제1조제8A항을 적용한 물품

(iii) 기타 금제품

을 찾기 위한 월별 수색 총수

(b) 제a호 i 목에서 iii목에 명시된 각각의 수색결과로 월별로 체포된 사람의 총수

(3) 도로검문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각 도로검문을 승인한 이유

(b) 각각의 결과

6 공익사업자 등

(1) 공익사업자에 의해 고용된 경관은 공익사업자의 화물지역을 포함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정지, 억류 및 수색할 수 있다.

(1A) 제1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영국 운수경찰국에 고용된 경관은 영국 철도위원회를 승계업자의 화물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정지, 억류 및 수색할 수 있으며, 대부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2) 본조에서 “화물지역”이란 대부분을 물품의 저장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영국 철도위원회의 승계업자”와 “관련사업”이란 1993년 철도법의 1999년 (주요사항 개정)규칙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다.

(3) 삭제

(4) 삭제

7 제1부-보칙

(1) 다음 법은 효력을 정지한다.

- (a) 1824년 노숙자법 제8조
- (b) 1839년 대도시경찰법 제66조
- (c) 1840년 운하(범죄)법 제11조
- (d) 1871년 행상인법 제19조
- (e) 1980년 머지사이드 주법 제33조
- (f) 1980년 웨스트미들랜드 주법 제42조

(2)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도 효력을 정지한다.

- (a) 1984년 전에 통과된 법에 포함된 법률이
 - (i) 시민 일반법에 포함된 법률 또는
 - (ii) 공익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도품이나 불법으로 획득한 물건에 대한 수색권을 경관에게 부여한 것
- (b)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공익사업자와 관련된 법률

(3) 이 법 1부에서 “공익사업자”란 철도, 경전철, 육상수송, 해상수송, 운하, 국내운항, 부두 또는 항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출입, 수색, 압수권한

〈수색영장〉

8 장소의 출입과 수색을 허가할 수 있는 치안판사의 권한

(1) 경관작성 청구서상에

- (a) 기소가능범죄가 발생했으며
- (b) 제1A항에서 명시한 구역내에 (그 자체나 다른 물건과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수사에 합리적인 가치가 있을만한 물품이 있고,
- (c) 그 물품이 관련 증거일 가능성이 있으며
- (d) 법적 면책품, 제외품이나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이 아니면서
- (e) 제3항에 명시한 조건을 적용하였다고

치안판사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치안판사는 청구서에 명시된 각각의 장소에 경관이 진입하여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A)¹⁾ 제1항b호에서 언급한 장소에는

- (a) 영장신청서에 특정된 하나 이상의 장소(이 때 신청서는 “특정 장소 영장” 발부를 위한 것임) 또는
- (b) 신청서에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장소, 특정할 수 있는 종류의 장소가 포함된다 (이 때 신청서는 “포괄영장”을 위한 것임).

(1B) 포괄영장을 위한 신청서의 경우,

- (a) 제1항a호에서 언급한 범죄사실 때문에, 제1항b호에 언급된 물건을 발견

1) [원] 본조 제1A항~제1D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하기 위한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의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b) 신청서에 용의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고 수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치안판사가 납득하여야 한다.

(1C)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출입하는 것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치안판사가 납득한 때에는, 한 건당 한 사람 이상이 그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D) 다수의 출입을 승인한 때에는, 출입횟수에 제한이 없거나 최대횟수만을 제한할 수 있다.

(2) 경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수색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압수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3) 제1항e호에서 언급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장소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b) 장소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증거에 접근하게 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c) 영장이 없이는 장소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d) 그 장소에 도착한 경관에 즉시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수색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훼손될 때

(4) 본법에서 “관련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의 재판에 증거로서 허용될 만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5) 본조에서 부여한 영장발부권한은 다른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에 부가한 것이다.

(6) 본조는 기소가능범죄와 관련하여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1971년 이민법 제

28D조제4항의 정의처럼) 관련범죄에 적용한다.

- (7)¹⁾ 1881년 약식재판(절차)법 제4조 (스코틀랜드에서 영국법원의 절차집행)는 제 114조를 준용하여 본조에 따라 세관 및 관세청 공무원의 신청으로 발부한 영장에 적용한다.

9 접근에 대한 특별규정

- (1) 경관은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부칙 1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칙에 따라 제외품 또는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에 접근할 수 있다.
- (2) 본법이 통과되기 전의 법(지방법을 포함)에 따라 영장발부를 통하여 범죄조사를 목적으로 경관이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던 것은 다음의 수색 승인에 관한 효력이 상실된다.
- (a) 법적 면책 물품 또는
 - (b) 제외품 또는
 - (c) 문서 또는 문서 이외의 기록으로 구성된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을 찾기 위한 수색
- (2A)²⁾ 1881년 약식재판(절차)법(제24호) 제4조(스코틀랜드에서 영국법원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와 and 1851년 간이재판소(아일랜드)법 1851(제93호) 제25조 (북아일랜드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조항)는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제43호)의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절차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법 부칙 1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절차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1) 본항은 2007년 재정법(Finance Act)에 따라 2007. 7. 19. 신설됨.

2) [원] 본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에 따라 2001. 8. 1. 신설됨.

10 “법적 면책품”의 의미

(1) 제2항에서 규정한 이 법에서의 “법적 면책품”은, 이를 소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 (a) 전문법률고문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대리인 사이에 의뢰인에 대한 법률조언과 관련된 연락수단
- (b) 전문법률고문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대리인 사이, 그런 고문이나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 다른 사람 사이에 법적 절차를 고려중이거나 그와 관련된 그 절차를 위한 연락수단
- (c) 그런 연락수단에 동봉되거나 연락과정에서 언급된 물품
 - (i) 법적 조언과 관련된 물품 또는
 - (ii) 법적 절차와 관련되거나 이를 고려하여 생성된 물품과 그런 절차를 목적으로 생성된 물품을 의미한다.

(2) 범행목적에 쓸 의도로 가지고 있던 물품은 법적 면책 물품이 아니다.

11 “제외품”의 의미

(1)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제외품”이란

- (a) 무역, 영업, 전문직 기타 직업상 유·무료 업무를 위하여 만들거나 획득하여 비밀로 보관하는 사적인 기록
- (b)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추출하여 비밀로 보관하고 있는 인체조직이나 체액
- (c) 비밀로 소지한
 - (i) 문서
 - (ii) 문서 이외의 기록인 기사자료

(2)

- (a) 비밀로 소지한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 (b) 본법 이후에 통과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공개에 제한이 있는 것을 소지한 때에는 기사자료가 아닌 자료를 본조의 목적으로 비밀로 소지한 것에 해당한다.

(3) 다음에 해당하면 본조를 목적으로 기사자료를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 (a) 동의, 제한 또는 의무에 속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으며
- (b) 최초에 보도를 목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성된 이후 동의, 제한, 의무에 해당하여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자료

12 “사적인 기록”의 의미

본법의 이 부에서 “사적인 기록”이란 (생사를 불문하고) 그 기록으로부터 식별될 수 있고,

- (a) 신체적·정신적 건강
- (b) 심리적 상담이나 조언을 주고 받은 것
- (c) 개인복리를 목적으로
 - (i) 공무상 혹은 업무상의 이유로 개인복리에 책임이 있거나
 - (ii) 법원의 명령으로 감독 책임이 있는
 자원봉사기관이나 개인이 상담하거나 도움을 주고 받은 것에 관한 개인관련 서류 기타 기록을 말한다.

13 “보도자료”의 의미

- (1)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 법에서의 “기사자료”는 보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획득된 자료를 의미한다.
- (2) 이 법의 목적상 자료는 기사자료만을 의미하며, 보도를 목적으로 자료를 획득하거나 만든 사람이 소유한 때에 한한다.
- (3) 수령인이 보도에 사용하게 할 의도로 누군가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람은 보도를 목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본다.

14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의 의미

- (1) 이 법에서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이란
 - (a) 제2항을 적용하는 물품과
 - (b) 제외품이 아닌 기사자료를 의미한다.

(2) 본조의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항을 법적 면책물품이나 제외품을 제외한 다음의 사람이 소지한 물품에 적용한다.

(a) 무역, 사업, 전문직이나 기타 직업에서 획득·생성되었거나, 유·무급 근무를 목적으로 한 사람

(b)

(i) 비밀로 보관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약속이 있거나

(ii) 제11조제(2)항(b)호에 규정된 제약이나 의무에 속하여 소지하는 사람

(3) 물품이

(a) 고용기간 동안 고용인으로부터 피고용인을 통하거나

(b) 계열사로부터 회사를 통하여 획득된 때에는 취득전에 즉시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인 때에만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이 된다.

(4) 물품이 피고용인에 의하여 작업과정에서 생성된 때에는, 고용인이 만들었다면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에 해당했었을 때에만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이 된다.

(5) 물품이 계열사를 대신한 회사에서 제조된 때에는, 계열사에서 제조하였다면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에 해당했었을 때에만 특별절차를 요하는 물품이 된다.

(6) 2010년 법인세법 제449조¹⁾가 적용될 때에는, 회사는 본조를 적용한 다른 계열사처럼 취급된다.

1) [역] 2010년 법인세법 제449조(계열사)

본 장에 따라, 회사가 특정 기간(문제가 되는 기간 또는 12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회사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a)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때, 또는

(b) 두 회사가 모두 동일인 또는 동일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때

151) 수색영장보호조항

(1) 본조와 제16조는 본법 이후에 통과된 법이 담고 있는 법조문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경관에게 발부된 출입·수색영장에 관련하여 효력이 있으며 영장에 따라 장소를 출입·수색하는 것은 본조와 제16조에 따르는 때에만 적법하다.

(2) 경관이 영장을 적용하는 때에는

- (a)
 - (i) 청구서를 작성한 근거
 - (ii) 영장을 발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 (iii) 청구서가 한 건 이상의 출입·수색을 승인하는 영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영장을 적용하는 근거, 무제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최대횟수만 제한되는 출입을 승인하는 영장인지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고
- (b) 제2A항에서 규정한 물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 (c) 가능한 찾을 물건이나 사람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A) 제2항b호에 따라 물품이 특정되어야 한다.

- (a) 신청서가 하나 이상의 특정된 장소에 대한 것이면, 출입·수색하고자 하는 각각의 장소
- (b) 신청서에서 특정된 사람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
 - (i) 합리적으로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출입·수색하고자 하는 장소가 여럿인 때 그 장소
 - (ii) 그 장소와 출입·수색하고자 하는 다른 장소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1) [원] 본조 중 (2)(a)(iii), (2A), (5A)는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 (iii) i 목에 따라 특정된 것보다 많은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는 이유
- (iv) 출입·수색하고자 하는 모든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이유

(3) 영장발부를 위한 신청서는 일방이 작성하고 약식기소장에 의해 서면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4) 경관은 영장청구 심리에서 치안판사의 질문에 선서후 대답하여야 한다.

(5) 영장은 다중출입을 승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한 건의 출입만을 승인하여야 한다.

(5A) 다중출입을 승인하도록 명시한 때에는, 승인된 출입횟수가 무제한인지, 최대 횟수를 제한하였는지 여부도 명시하여야 한다.

(6) 영장에는

(a)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i) 영장이 적용되는 사람의 이름
- (ii) 발부된 날짜
- (iii) 발부된 영장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 (iv) 수색 대상구역, 또는 특정되어 수색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포괄영장의 경우) 수색하고자 하는 장소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b) 영장에는 가능한 한 찾고자 하는 물건 또는 사람을 확정하여야 한다.

(7) 하나의 장소만을 명시하고 다중출입을 승인하지 않은 영장은 2부의 사본을 작성한다. 다른 종류의 영장은 필요한 수만큼 작성할 수 있다.

(8) 사본은 사본으로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16) 영장의 집행

- (1)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는 영장은 경관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 (2) 그러한 영장에 따라 경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을 참여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2A)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의 점에서는 경관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영장의 집행
 - (b) 영장과 관련된 물건의 압수
- (2B) 단, 오직 경관의 감독하에 그 구역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3) 영장에 따른 가택 수색은 영장발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A) 영장이 포괄영장인 때에는,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서면으로 출입을 승인하는 때에만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있다.
- (3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장소 출입을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다중출입을 승인한 영장에 따라 두번째 혹은 그 이후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수색할 수 없다.
- (4) 영장에 따른 출입·수색은 경관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수색목적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 (5) 수색할 장소의 점유자가 있고, 경관이 들어가 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관은
 - (a) 점유자에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정복차림이 아닌 때에는 경관의 신분

1) [원] 본조(2A), (2B), (3A), (3B)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신설됨.

을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b)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 (c)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6)

- (a) 그 장소의 점유자가 없고 경관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 (b) 그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점유자에 대한 규정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경관이 수색장소에 입장했을 때 그 장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경관은 그 장소의 눈에 띄만한 곳에 영장의 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8) 영장에 따른 수색은 영장이 발부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색할 수 있다.

(9) 영장을 집행하는 경관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수색대상 목적물이나 사람의 발견여부와
- (b) 찾는 물건 이외에 다른 물건의 압수 여부, 영장이 두 장소만을 지정한 영장인 때에는, 출입·수색한 각각의 장소에 대하여 분리하여 각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영장은 제10A항에서 언급한 합당한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 (a) 영장이 집행된 때 또는
- (b)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특정장소의 경우, 포괄영장 또는 다중출입을 승인하는 영장인 때에는, 제3항에서 언급한 3개월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10A) 합당한 사람이란

- (a) 치안판사에 의하여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활동하는 지방사법관할지역의 지정된 경찰관이나
- (b) 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그 발부한 법원의 당직경찰관을 의미한다.

(11) 제10항에 따라 발송된 영장은 발송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 (a) 제10항 i 목에 따라 발송된 때에는, 지방사법관할지역의 지정경찰관에 의하여
- (b) ii 목에 따라 발송된 때에는 당직경찰관에 의하여

(12) 영장이 보관되는 기간 동안, 관련된 그 장소의 점유자는 이의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수색영장 없는 출입 및 수색〉

17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수색

(1)¹⁾ 본조의 다음항에 해당하고, 다른 법률을 침해하지 않으면, 경관은 다음의 목적으로 장소에 출입·수색할 수 있다.

- (a)
 - (i) 형사절차와 관련되거나 형사절차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 또는

1) [원] 본항 (c)(iii)은 1986년 공공질서법에 따라, (caa)는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신설됨.

- (ii) 1980년 치안관사법원법 제76조에 따라 발부된 영장¹⁾을 집행하기 위하여
- (b) 기소가능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 (c) 다음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 (i) 1936년 공공질서법 제1조(정치적 대상과 관련된 제복의 금지)
 - (ii) 1977년 형법 제6조에서 제8조 또는 제10조 (집안으로 침입하거나 남아있는 것과 관련된 범죄)에 포함된 법률
 - (iii) 1986년 공공질서법 제4조 (폭력의 위협 또는 선동)
 - (iiia) 1988년 도로교통법 제4조(음주 또는 마약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등) 또는 제163조(정북경관에 의한 정지요구 불응)
 - (iiib) 1992년 운송업법 제27조(음주 또는 마약과 연계한 범죄와 관련된)
 - (iv)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 제76조 (임시소지명령 준수 의무 위반)
 - (v) 2006년 동물복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물학대 방지와 관련된 범죄)
- (ca) 1969년 아동과 청소년법 제32조제1A항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의 지역기관시설에 보호구금되거나 수용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체포하기 위하여
- (caa) 1981년 동물건강법 제61조를 적용한 범죄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 (cb)
 - (i) 교도소, 소년범 구치소, 청소년 교정시설 또는 직업훈련원 또는
 - (ii) 2000년 형사법원(양형)권한법 제92조(증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가 적용되는 어떤 곳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한 일을 도모하고자 한 사람을 재체포하기 위하여
- (d) 위법한 일을 행한 사람과 이를 도모한 사람을 재체포하기 위하여 또는
- (e) 생명을 구하거나 불구가 되는 것을 막거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1) [역] 벌금채납자에게 추가로 벌금부과 및 징수를 하기 위한 영장

- (2) 제1항3호에서 명시한 목적을 제외하고, 본조에 따라 부여되는 출입·수색권은
 - (a) 경관이 그 장소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으며
 - (b) 둘 또는 그 이상의 분리된 거주지로 구성된 장소와 관련하여, 출입·수색권은 제한된다.
 - (i) 거주지의 점유자가 다른 거주지의 점유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이루어진 곳
 - (ii) 경관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주지
- (3) 본조에서 부여한 수색권은 제1항c호 ii 목 또는 iv 목에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복경관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 (4) 본조에서 부여한 수색권은 출입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도까지의 수색에 한정한다.
- (5) 제6항에 따라, 경관이 영장없이 장소에 출입할 권한에 대한 모든 보통법의 규정들은 이로써 폐지한다.
- (6) 제5항은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것을 처리·방지하기 위한 어떤 출입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체포후 출입·수색

- (1) 본조의 다음 항에 해당하여, 만일 장소에
 - (a) 해당범죄와 관련되거나
 - (b) 해당범죄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다른 기소가능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외의 증거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면, 경관은 기소가능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

- (2) 경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색할 수 있는 것을 압수·보관할 수 있다.
- (3) 제1항에서 부여한 수색할 권한은 위의 증거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수색할 권한에 한정된다.
- (4) 아래 제5항에 따라, 본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 (5) 경관은 제5A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제1항에 따라
 - (a) 사람이 경찰서에 인계되거나 제30A조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에
 - (b) 제4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수색할 수 있다
- (5A) 그 조건은 그 장소에 사람이 있는 것이(경찰서를 제외한) 효과적인 범죄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 (6) 경관이 제5항에 의해 수색한 때에는, 경위급 이상 경찰관에게 수색후 가능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 (a) 수색을 허가하거나
 - (b) 수색 제6항에 따라 통지한 경찰관은
 - (i) 수색의 근거와
 - (ii) 수색한 증거의 종류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8) 수색시 그 장소를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기록을 작성할 때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유치기록의 일부로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압수 등〉

19 일반적인 압수권한 등

(1) 본조 제2항, 제3항과 제4항에서 부여한 권한은 합법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 경관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경관은

(a) 범죄를 실행한 결과로 획득된 것으로

(b) 은닉, 손실, 손상, 대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3) 경관은

(a) 그 증거가 조사중인 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b) 증거가 은닉, 손실, 대체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4) 경관은 전자양식으로 저장된 것으로서 그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가서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하거나,

(a) 그것이

(i) 증거가 조사중인 범죄나 기타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ii) 범죄의 실행결과로 획득한 것으로

(b) 은닉, 손실, 조작 또는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달리 부여된 권한에 부가된다.
- (6) 법률(이 법 이후에 통과된 법에 담긴 규정을 포함하여)에 따라 경관에게 부여된 압수권한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관이 법적 특권에 속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물건의 압수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전자화된 정보에 대한 압수권한 확장

- (1) 본조를 적용하여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장소에 출입한 경관에게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압수권한은 컴퓨터에 저장되고 그 장소에서 접근가능한 전자양식에 담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하거나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되기 쉽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 (2) 본조는
 - (a) 본법 이전에 통과된 법에 포함된 법률과
 - (b) 제8조와 제18조
 - (c) 본법 부칙 1의 13항과
 - (d) 본법 이후에 통과된 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에 적용한다.

21 접근과 복제

- (1) 본법 이후에 통과된 법에 담긴 법률을 포함한 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여 물건을 압수한 경관은,
 - (a) 압수된 장소의 점유자
 - (b) 압수 직전에 구금 또는 통제상태에 있는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압수기록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제8항에 따라, 압수 직전에 그 물건을 보관 또는 관리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는 어떤 사람이
 - (a) 경관에 의해 압수된 것과
 - (b) 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의해 보관된 것에 접근허가를 조사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경찰관은 경관의 감독하에 요청한 사람에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4) 본조 제8항에 따라, 압수 당시에 물건을 압류 또는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대리인이 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촬영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 (a) 경관의 감독하에 사진촬영이나 복사를 위해 물건에 접근할 것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또는
 - (b) 사진촬영 또는 복사하거나, 사진촬영이나 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5) 경관은 사진촬영이나 복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요청 없이 압수할 권한이 있는 어떤 것을 촬영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6) 제4항b호에 따라 사진촬영하거나 복제한 때에는, 사진이나 복제물은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7) 사진이나 복제물은 요청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 (8)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압수하는 것이 다음의 절차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조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거나 사진 또는 복제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 (a) 수사
- (b) 그 물건을 압수한 수사의 목적이 되는 범죄 이외의 범죄수사 또는
- (c)
 - (i) 기소하기 위한 조사 또는
 - (ii) b호에서 언급한 어떤 조사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형사절차

- (9)¹⁾ 제1항, 제2항, 제3항a호와 제5항에서의 경관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장집행 경관에 동석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22 보관

- (1) 본조 제4항에 따라, 경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제거된 것은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든 경우에 필요한 만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일반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 (a) 제4항에 의해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범죄조사를 목적으로 압수한 것은

- (i)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 (ii) 법의학 조사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관할 수 있다.

- (b) 그 물건이 범죄실행의 결과로 획득된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 소유권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다.

- (3) 다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할 수는 없다.

- (a)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 (b)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 (c) 증거를 끼워넣거나
- (d) 경찰유치나 적법한 구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압수 대상자가 더이상 경찰유치 또는 법정구금상태에 있지 않거나 법정구금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때에는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없다.

- (4) 사진이나 복제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면 어떤 것도 제2항a호에

1) [원] 본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0. 신설됨.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5) 본조는 1897년 경찰(재산)법 제1조¹⁾에 따른 명령을 발할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²⁾ 본조는 1971년 이민법 제28H조제5항에 따라 경찰에서 보관하는 것도 적용된다.
- (7)³⁾ 본조제1항의 경관에 의한 압수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장집행 경관과 동석승인을 받은 사람에 의한 압수도 포함된다.

〈보 칙〉

23 “거주지” 등의 개념

이 법에서

“거주지”는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a) 차량, 선박, 항공기나 호버크래프트
- (b) 연안의 시설
- (ba) 에너지재생시설

1) [역] 1897년 경찰(재산)법 제1조(경찰이 보유한 재산과 관련된 명령을 발할 권한)
 (1) 어떤 물건을 혐의 범죄의 조사 또는 1872년 전당포법 제34조와 관련하여 경찰이 보유한 때에는, 약식법원은 신청에 따라 경찰관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치안판사법원에 출석하여 그 물건을 교부하거나 치안판사법원이 그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치안판사 또는 법원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본조에 따르더라도, 물건을 인도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명령이 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명령으로 그 물건을 다시 취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권리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삭제

2) [원] 본항은 1999년 이민 및 망명법에 따라 2000. 2. 14. 신설됨.

3) [원] 본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0. 신설됨.

(c) 텐트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

“연안시설”이란 1971년 광물채굴장(연안설비)법 제1조¹⁾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재생에너지 시설”은 2004년 에너지법 제2부 제2장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1) [역] 1971년 광물채굴장(연안설비)법 제1조: [1995년 연안설비 및 관로업(관리·행정) 규칙에 따라] 삭제. 동규칙 제3조에 개념정의가 되어 있음.

제3부 체 포

24 영장없는 체포: 경관

- (1) 경관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a) 범죄를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 (b) 범죄를 실행중에 있는 사람
 - (c) 범죄를 실행하려 한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d)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2) 경관은 이미 범죄라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3) 범죄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경관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a) 그 범죄의 범인이거나
 - (b) 그 범죄의 범인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4) 단,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부여된 긴급체포권한은 제5항에 언급한 용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고 경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만 실행될 수 있다.

- (5) 그 이유란
 - (a) 용의자의 성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경관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의 이름을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이 제시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b) 사람의 주소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사정이 있는 때

- (c) 용의자가
 - (i)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 (ii) 상해로 고통을 받거나
 - (iii)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때
 - (iv)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제6항에 따른) 때 또는
 - (v) 불법적인 고속도로 교통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때
- (d) 아동이나 다른 약자를 용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때
- (e) 범죄 또는 용의자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허용하기 위한 때
- (f) 용의자의 도주로 초래될 범죄 소추를 막기 위한 때

(6) 제5항c호iv목은 그들의 사무와 관련하여 용의자를 피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때에만 적용된다.

24A 영장없는 체포: 기타

- (1) 경관 이외의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a) 기소가능범죄를 실행중인 사람
 - (b) 기소가능범죄를 실행중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2) 기소가능범죄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경관 이외의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a) 그 범죄의 범인
 - (b) 범인이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부여한 긴급체포권한은 다음의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

다.

- (a) 제4항에서 언급한 이유로 용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사람을 체포한 때
- (b) 경관이 체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때 사람을 체포하는 사람

(4) 체포하는 자는 용의자가

- (a)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고
- (b) 신체적 상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 (c)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거나
- (d) 경관에 의해 체포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체포이유가 있다고 믿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5) 본조는 1986년 공공질서법 제3부 또는 제3A부¹⁾에서의 범죄에 적용하지 않는다.

25

삭제²⁾

26 영장이나 명령없이 체포한 법적 권한에 대한 항소

- (1) 본조 제2항에 따라, (지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 전에 통과된 법은 경관이
 - (a) 영장없이 범죄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 (b)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없이 범죄 이외로 사람을 체포한 것은 효력을 상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본법 부칙 2에서 지정된 법률에 따른다.

27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지문채취

1) [역] 1986년 공공질서법 제3부: 인종증오(racial hatred)범죄

2) [원] 본조는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의하여 2006. 1. 1. 삭제됨.

(1) 사람이

- (a) 입건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 (b) 그 범죄로 경찰유치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 (c)
 - (i)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하여 지문이 채취된 적이 없는 경우
 - (ii)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로 지문이 채취된 적이 없는 경우
 경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A)¹⁾ 입건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제1항c호에서 언급한 지문을 이미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그 범죄로 경찰유치상태에 있었던 때를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시하여야 한다.

- (a) 이전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이 완벽하지 않거나
- (b) 이전에 채취된 지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만족할만한 분석, 대조, 비교를 하기에 충분한 품질이 아닌 때

(1B) 제1항과 제1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a) 입건가능범죄로 경고를 받고, 범죄를 시인한 때
- (b)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제37호) 제65조에 따라 입건가능범죄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1) [원] 본조 (1A)항 및 (1B)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에 의하여 2003. 1. 1. 신설됨.

- (a) 출석일 이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 (b) 지정된 날짜의 시간 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경관은 영장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4) 국무장관은 어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 그 기록을 국가경찰기록에 등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A)

삭제¹⁾

(5) 본조에 따른 규칙은 행정명령으로 제정하고, 의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28 체포시 고지되어야 하는 정보

(1) 본조 제5항에 따라, 체포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그 체포는 체포후 가능한 신속하게 체포된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적법하다.

(2) 사람이 경관에 의하여 체포된 때에는, 제1항은 체포가 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제1항이 적용된다.

(3) 제5항에 따라, 체포자는 체포시 또는 체포 후 가능한 신속하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받지 않으면 그 체포는 불법이다.

(4) 사람이 경관에 의하여 체포된 때에는, 체포의 이유가 명확한지 여부와 관계없

1) [원] 본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에 의하여 2003. 4. 1. 삭제됨.

이 제3항이 적용된다.

(5) 본조에서 체포의 이유가 고지되기 이전에 대상자가 도주하여 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a) 체포된 사실 또는

(b) 체포의 이유가 고지될 필요가 없다.

29 경찰서에의 임의출석 등

조사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경관이 있는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출석하거나, 체포되지 않고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경관과 동행하였을 때에는

- (a) 체포되지 않는 한 원하는 경우 떠날 권리가 있다.
- (b) 경관이 자유로이 떠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때에는, 그를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¹⁾

30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체포

(1) 제1A항은,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

- (a) 경관에 의하여 범죄로 체포되거나
- (b) 경관 이외의 사람에게 의하여 범죄로 체포된 후 경관에 의하여 유치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1A) 체포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경찰서에 유치되어야 한다.

(1B) 제1A항은 제30A조(보석)와 제7항(무보석 석방)에 영향을 미친다.

(2) 본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1A항의 피체포자가 인계된 경찰서는 지정경찰서이어야 한다.

1) [역]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617호] 제51조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 (3) 본항을 적용하여 피체포자에게 6시간 이상 경찰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관은 피체포자를 어떤 경찰서에든지 인치할 수 있다.
- (4) 본조 제3항은
- (a)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경관과
 - (b) 경찰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경관에 적용한다.
- (5) 경관은 다음의 경우 어떤 경찰서로든지 피체포자를 인치할 수 있다.
- (a) 다음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 (i) 경관 다른 경관의 도움 없이 체포하였으며 도울 수 있는 다른 경관이 없는 경우
 - (ii) 경관이 경관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다른 경관의 도움없이 피체포자를 인계받은 경우에 도울 수 있는 다른 경관이 없는 경우
 - (b) 지정경찰서에 피체포자를 인계할 때 피체포자 자신, 경관 또는 다른 사람을 상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6) 피체포자가 체포된 후 인계된 최초 경찰서가 지정경찰서가 아닌 때에는, 석방되지 않는 한 최초경찰서에 도착한 후 6시간 이내에 지정경찰서에 인계되어야 한다.
- (7)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경관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은 제7A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석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 (7A) 그 조건은, 피체포자가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경관이 체포하여 유치하거나 제30A조의 보석으로 석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8) 제7항에 따라 사람을 석방한 경관은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9) 경관은 석방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10) 제1A항 또는 제30A항은 경관이 경찰서에 사람을 인치하거나, 제10A조의 조건에 부합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10A) 그 조건이란 (경찰서를 제외한) 어떤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즉시 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때에 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 (11) 지연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연사유를 그 사람이 최초로 경찰서에 도착하였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한 때에 기록하여야 한다.
- (12) 제1A항 또는 제30A조는
 - (a) 1971년 이민법의 부칙 2 제16(3) 또는 제18(1)
 - (b) 1972년 형사사법법 제34조제1항 또는
 - (c) 2000년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에 적용하지 않는다.
- (13) 제1항은 1971년 이민법 부칙 2 제18(3)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A¹⁾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보석

- (1) 경관은 제30조제1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체포되거나 유치된 사람을 보석석방할 수 있다.
- (2)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석석방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보석석방된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 (3A) 경관이 제1항에 따라 보석석방할 때에는
 - (a) 보석보증금을 받지 않아야 하고,

1) [원] 제30A조~제30D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따라 2004. 1. 20. 신설됨.

- (b)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치 않으며,
- (c) 보증금 또는 보증인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아야 하고
- (d) 석방전 숙소에서 거주할 조건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다.

(3B) 제3A항에 따라, 경관이 제1항의 보석으로 석방하는 때에는, 그 경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석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a) 구금을 위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보증할 것
- (b) 보석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할 것
- (c) 목격자에 개입하거나, 그 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법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것
- (d) 자신을 보호할 것 또는 17세 미만인 때에는, 그 사람의 복지 또는 이익을 위할 것

(4) 제1항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되는 때에는, 본조의 전항에 명시한 보석조건만을 부과할 수 있다.

(5) 출석대상 경찰서는 어떤 경찰서이든 무방하다.

30B 제30A조에 따른 보석: 통지

(1) 제30A조에 따라 경관이 보석을 허가한 때에는, 석방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서에는

- (a)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와
- (b) 체포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통지서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통지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경찰서와 출석하여야 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
- (4A)¹⁾ 제30A조제3B항에 따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때에는, 통지서에는
 - (a) 부과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 (b) 제30CA조제1항과 제30CB조제1항에 따라 이 조건들을 변경할 기회를 설명하여야 하며
 - (c) 출석할 경찰서를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0CA조제1항b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경찰서를 특정하여야 한다.
- (5) 통지서에 제4항에서 언급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추후통지를 하여야 한다.
- (6) 보석대상자는 제1항 또는 제5항의 통지서에 명시된 날에 다른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다른 시간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 (7) 제6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변경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한번 이상 그러한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다.

30C 제30A조에 따른 보석: 보칙

- (1)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던 사람은 더이상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지 않는다.
- (2)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도착후 6시간 이내에

1) [원] 본항은 2006년 경찰·사법법(제48호)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 (a) 석방되거나
- (b) 지정경찰서에 인계되어야 한다.

- (3) 1976년 보석법은 제30A조에 따른 보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 (4) 석방된 때로부터 체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제30A조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을 영장없이 재체포할 수 있고, 제30A조 또는 제30B조와 본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0CA¹⁾ 제30A조에 따른 보석: 경찰에 의한 조건변경

- (1) 제30A조제1항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한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보석한다.
 - (a)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해당경찰관 또는
 - (b) 제30B조에 따라 지정된 경찰서가 통지서에 없을 때에는, 해당경찰관 제30B조제4A항c호에 따라 특정된 경찰서의 해당경찰관이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2) 동일한 보석에 관하여 추가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한다. 단, 그 요청은 이전에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경찰관이 이전 요구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정보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
- (3) 제30A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조건이 제1항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는
 - (a) 제30A조제3A항의 a호에서 d호를 적용하고,
 - (b) 변경된 조건에 의하여 부과된 보석조건은 해당경찰관이 제30A조제3B항의 a호에서 d호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어야 하고

1) [원] 제30CA조~제30CB조는 2006년 경찰·사법법(제48호)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c) 조건을 변경한 해당경찰관은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변경할 권한이란, 제3항a호와 b호에서는

- (a) 어떤 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할 권한과
- (b) 추가조건을 부과할 권한을 말한다.

(5) 본조에서 지정경찰서와 관련하여 “해당경찰관”은 유치인보호관¹⁾을 의미하나, 기타 경찰서에서는

- (a)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제30A조제1항에 따라 보석되는 때에 체포 상태에 있고, 체포의 근거가 되는 범죄의 조사와 관련이 없으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관을 의미하는데
- (b) 만일 그런 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없으면
 - (i) 가능하다면 보석을 승인한 경관을 제외한 경관을
 - (ii) 그런 경관이 없다면, 보석한 경관을 의미한다.

30CB 제30A조에 따른 보석: 법원에 의한 조건변경

(1) 제30A조제1항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람이 조건부 석방되는 때에는, 치안판사법원은, 그 사람에 의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한 신청서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a) 그 조건이 제30A조제3B항에 따라 부과되어 제30CA조제1항에 의해 변경된 때,
- (b) 제30CA조제1항에 따른 조건변경 요청이 거부되는 때 또는

1) [역] 유치인보호관(custody officer): 번역자에 따라 유치관리관 또는 구금관리관으로 번역함. 우리 법에서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직책은 없으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640호]’ 제4조에서 ‘유치인보호 근무에 당하는 경찰관’을 ‘유치인보호관’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므로 본 법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이라 함.

- (c) 제30CA조제1항에 따른 조건변경 요청이 있고 철회 또는 요청에 응하여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그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48시간이 초과하여 기한이 도래한 때

(2) 제1항에 따른 조건변경신청 절차에서, 그 근거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 (a) 제1항a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제30CA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 변경된데 대응한 요청에 따른 것
- (b) 제1항b호 또는 c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각 호에서 언급된 요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단, 법원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의 상황변경으로 인한 다른 근거를 고려하여 신청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30A조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때에는

- (a) 제30A조제3A항 a호에서 d호를 적용하고,
- (b) 변경되어 부과된 조건은 제30A조3B항의 a호에서 d호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변경한 조건이어야 하며,
- (c) 보석이 변경된 조건에 따라 경과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제3항a호와 b호에 속한 권한은,

- (a) 그 조건의 변경 또는 폐지와
- (b)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30D 제30A조의 보석에 불응한 때

(1) 경관은 다음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a) 제30A조에 따라 지정경찰서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b)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

(2) 제1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체포 후 가능한 신속하게 (특정된 경찰서이거나 기타) 경찰서에 인계되어야 한다.

(2A)¹⁾ 제30A조에 따라 보석석방된 사람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경관이 의심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B) 제2A항에 따른 피체포자는 체포 후 (제1항에서 언급한 특정 경찰서나 기타) 경찰서에 가능한 신속하게 인계되어야 한다.

(3) 제1항에서, “특정된”의 의미는 제30B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서 또는 동조제7항에 따라 변경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서에 특정된 것을 의미 한다.

(4)

(a) 제30조와 (제2항과 제2B항의 의무에 따른)

(b) 제31조에 근거하여

본조에 따른 체포는 범죄에 대한 체포로 취급된다.

31 추가범죄에 따른 체포

(a) (i) 범죄로 체포되어

(ii) 그 체포의 결과로 경찰서에 인치된 사람과

(b) 체포상태에서 석방되었으나, 경관이 다른 범죄로 체포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다른 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

32 체포에 따른 수색

1) [원] 본조 제2A항 및 2B항은 2006년 경찰·사법법에 따라 2007. 4. 1. 삽입됨.

- (1) 경관은 경찰서 이외의 곳에서 체포된 사람을 수색하는 경우에, 피체포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리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체포자를 수색할 수 있다.
- (2) 본조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경관은 또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다음의 경우 피체포자를 수색할 권한
 - (i) 법적 구금상태로부터의 도주원조에 사용할 물품
 - (ii) 범죄관련증거에 해당하는 것
 - (b)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가 기소가능범죄이면, 범죄와 관련된 증거로 체포되기 적절이나 체포된 때에 그 장소에 들어가 수색할 권한
- (3) 제2항에서 부여한 수색권한은 어떤 물건 또는 증거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만 수색할 권한이다.
- (4) 본조에 따라 수색할 권한은 경관이 공공장소에서 외투, 자켓, 장갑이외의 의복을 탈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수 없으며 사람의 입을 수색할 수도 없다고 해석된다.
- (5) 경관은 피체포자가 제2항a호에 따라 수색이 허용된 어떤 것을 감출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동호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사람을 수색할 수 있다.
- (6) 경관은 제2항b호에서 수색이 허용된 장소에 증거가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동호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 (7) 제2항b호에 따라 부여된 수색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분리된 거주지로 구성된 장소에 대한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권한이 다음으로 제한된다.

- (a) 피체포자가 체포직전에 있었거나 체포된 거주지
- (b) 그 거주지의 점유자가 그 장소의 다른 거주지의 점유자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역

(8) 본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사람을 수색한 경관은 피수색자가 이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리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발견한 물건을 압수, 보관할 수 있다.

(9) 본조제2항a호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여 사람을 수색한 경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적 특권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그가 발견한 것을 압수·보관할 수 있다.

- (a) 법적 구금상태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돕는데 사용할 물건 또는
- (b) 범죄의 증거이거나 범죄실행의 결과로 획득된 물건

(10) 본조는 2000년 테러방지법 제43조에서 부여된 권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33 경관이 소지하지 않은 영장의 집행

1980년 치안관사법원법 제125조

- (a) 제3항의, “범죄로 기소된 피체포자”는 “본항을 적용한”으로 바꾼다.
- (b) 다음 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첨부한다.

“(4) 제3항을 적용한 영장은

- (a)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체포하는 영장
- (b) a호에 해당하지 않는, 1955년 육군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영장, 1955년 공군법 제186조제3항의 영장, 1957년 해군규율법 제105조제3항의 영장 또는 1980년 예비군법 부칙 5(탈영 등)의 영장
- (c) 다음에 해당하는 영장

- (i) 1967년 일반세법 제102조 또는 제104조(재정적 곤경의 불충분함)
- (ii) 1978년 가사절차와 치안판사법원법 제18조제4항(혼인상대방과 가정의 아동보호)
- (iii) 제55조, 제76조, 제93조 또는 제97조의 영장”

제4부 유치

〈유치-조건과 계속〉

34 경찰유치에 대한 제한

- (1) 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본법 제4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유치 상태에 들 수 없다.
- (2) 제3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이
 - (a) 피유치자와 관련된 유치사유가 중단된 것을 인식하고
 - (b) 본법의 제4부 규정에 따라 유치계속을 할 근거가 없다면, 유치인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즉시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 (3) 피유치자에 대한 경찰유치가 승인되면 이를 마지막으로 승인한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 (4) 체포시 도주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본조제2항에 따라 석방되지 않는다.
- (5) 본조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무보석 석방되어야 한다. 단, 유치인보호관이
 - (a) 유치기간동안 유치의 원인이 된 것과 관련한 사실을 추가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 (b) 그러한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거나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65조에 따라 견책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석조건부 석방을 할 수 있다.
- (6) 본법의 제4부에 따라 1988년 도로교통법 제6D조 또는 1992년 수송업법(제42

호)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범죄로 체포된다.

(7) 본법의 제4부에 따라

- (a) 제30A조에 따라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사람,
- (b) 제4부에 따라 보석에 응하여 경찰서에 귀소하거나
- (c) 제30D조 또는 제46A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범죄로 체포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범죄는 보석의 대상이 된 범죄이다.

(8)¹⁾ 제7항은 제47조제3항b호에서 언급된 의무에 따라 보석석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 (b)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제46A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
(제4부의 목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46ZA조에 따라 제정한 조항임)

35 지정경찰서

(1) 각 관할지역의 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내에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제30A조제5항, 제30D조제2항에 따라 그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유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경찰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본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의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만한 경찰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2A)²⁾ 영국 교통경찰대의 장은 (본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찰서에 추가하여) 경찰서를 지정하여 체포된 사람을 유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원] 본항은 2006년 경찰·사범법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2) [원] 본항은 2001년 형사사범 및 경찰법에 따라 2001. 12. 14. 신설됨.

- (3) 1978년 통역법 제12조(의무의 계속)를 위반함이 없이 경찰서장은
 - (a) 이전에 지정되지 않은 경찰서를 지정할 수 있고
 - (b) 기존에 지정한 경찰서에 지속적인 운영을 명할 수 있다.

- (4) 본법에서 “지정경찰서”란 본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정된 경찰서를 의미한다.

36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

- (1) 각각의 지정경찰서에는 한 명 이상의 유치인보호관이 선임되어야 한다.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을 지정경찰서에 임명하여야 한다.
 - (a) 지정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청장 또는
 - (b)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 지명한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 (2A)¹⁾ 제35조제2A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을 지정경찰서에 선임하여야 한다.
 - (a) 영국 교통경찰대의 장 또는
 - (b) 그 장이 지명하는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 (3) 경사급 이상 경찰관만이 유치인보호관으로 선임될 수 있다.
- (4) 유치인보호관이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모든 계급의 경찰관이 지정경찰서에서 유치인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5) 본조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의 임무는 경찰유치중인 사람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행할 수 없다.
- (6) 제5항의 유치인보호관은

1) [원] 본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에 의하여 2001. 12. 14. 신설됨.

- (a)
 - (i) 본법 또는
 - (ii) 본법의 실무규범에 의하여
 - 유치인보호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 (b) 유치인보호관 제39조에 의해 유치인보호관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며
- (c) 용의자 식별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 (d) 1988년 도로교통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7) 피체포자가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 인계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경찰서에서 유치인보호관이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a) 가능하다면 경찰유치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 (b) 그런 경찰관이 없으면, 경찰서에 인계한 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

(7A)¹⁾ 제7B항에 따라, 제7항은 그 경찰서에 인계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30A조에 따른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7B) 제7A항에 따라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7항b호의 경찰서에 인계한 경찰관이 보석석방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통지서를 읽어준다.

(8) 본법의 다음 조항에서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통지서는 제4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인보호관을 제외한 경찰관에 대한 통지서를 포함한다.

(9) 제7항에 따라 경찰서에 피체포자를 인계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은 유치인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은

1) [원] 제7A항 및 제7B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0. 신설됨.

- (a) 지정경찰서에 소속되어 있고
- (b) 경위급 이상인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0) 제9항에 의해 부여된 의무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1) 삭제¹⁾

37 기소전 유치보호관의 의무

(1)

- (a) 범죄로
 - (i) 영장없이 또는
 - (ii) 보석보증 없이 영장에 의해,

(b) 삭제

체포된 때에는, 체포후 유치된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할 수 있다.

(2) 유치인보호관이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없이 유치하는 것이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확인 또는 보전하거나 질문을 통해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보석부 또는 무보석부로 석방하여야 한다.

(3)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유치상태에 두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원] 본항은 2009년 경찰활동 및 형법에 따라 2010. 1. 12. 삭제됨.

- (4) 유치보호관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경찰유치상태에 두는 것을 승인한 때에는, 신속히 그 유치의 근거를 서면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제6항에 따라, 서면기록은 피체포자가 참석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유치인보호관은 피체포자에게 유치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6) 제5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피체포자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
 - (b) 폭력적 또는 폭력적으로 변하려 하는 때
 - (c)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서면기록을 하고자 한 때
- (7) 제41조제7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이 피체포자의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로 그 사람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피체포자는
 - (a)
 - (i) 기소없이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 (ii) 경찰유치상태에 두어야 하며
 검찰총장이 제37B조상의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b) 기소없이 보석부 석방하여야 하나, 그 이유 때문은 아니어야 한다.
 - (c) 기소없이 무보석부로 석방되거나
 - (d) 기소되어야 한다.
- (7A) 제7항에 따른 피체포자의 처리방식의 선택은 유치인보호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7B) 제7항a호에 따라 처분할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석방사실을 알려주거나 (사안에 따라) 유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검찰총장이 제37B조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 (8)

- (a) 피체포자가 제7항b호 또는 c호에 따라 석방되고
- (b) 석방과 동시에 체포사유가 되는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유치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치인보호관의 의무이어야 한다.

(8A) 피체포자의 체포이유가 되는 범죄가 유치인보호관이 제63B조에 따라 체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B항을 적용하고 유치인보호관은

- (a) 본조제항에 따른 피체포자 석방이나 보석부 석방을 결정하거나
- (b) 제7항a호에 따른 불기소 보석부 석방을 결정한다.

(8B) 제63B조에 따른 샘플채취를 위하여 유치를 계속할 수 있으나, 본항에 따라 기준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유치할 수 없다.

(9) 피체포자가 제7항에 따른 처분에 부적법한 때에는,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경찰유치상태에 둘 수 있다.

(10) 제1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에게 부과된 의무는 피체포자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피체포자가 경찰서에 있는 때에는 체포 후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11) 삭제¹⁾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본법에서

“체포된 소년”이란 17세 이하로 영장에 따라 또는 영장없이 체포된 사람을

1) [원] 본조 제11항~제14항은 1991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1992. 10. 1. 삭제됨.

의미한다

“보석 보증된”이란 1980년 치안관사법원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보석지시로 보증되었다는 의미이다.

37A1) 지침

(1) 검찰총장은

- (a) 유치인보호관이 제37조제7항 또는 제37C조제2항, 제37CA조제2항에 따라 피체포자를 처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 (b) 제38B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정보에 관하여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2) 검찰총장은 때때로 본조에 따라 발행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3) 유치인보호관은 제37조제7항, 제37C조제2항, 제37CA조제2항에 따른 피체포자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조에 근거하여 발행된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4) 1985년 범죄기소법 제9조에 따른 보고(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것)는 발행된 지침과 보고와 관련된 그 해의 개정된 지침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검찰총장은

- (a) 본조에 따른 지침과
- (b) 그러한 지침에 대한 개정
에 부합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6) 본조에 따른 지침은 각각의 사안, 상황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 본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19. 신설됨.

37B¹⁾ 검찰총장과의 협의

- (1) 피체포자를 제37조제7항a호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범죄의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검찰총장에게 제37A조의 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검찰총장은 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 어떤 범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a) 기소여부와 기소를 한다면, 그 기소대상 범죄
 - (b) 경고여부와 경고를 한다면 그 경고대상 범죄
- (4) 검찰총장은 그 범죄의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4A)²⁾ 제4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37조제7항a호에 따른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두로 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 만일
 - (a) 범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 (b) 범죄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는 있으나, 그 범죄로 기소하거나 범죄로 경고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피체포자에게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원] 본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9. 신설됨.

2) [원] 본항은 2006년 경찰·사법법에 따라 2007. 1. 15. 신설됨.

- (6) 검찰총장이 기소하기로 결정하거나,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라 기소 또는 경고하여야 한다.
- (7) 경고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범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하여야 한다.
- (8) 동조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한다.
 - (a) 경찰유치상태에 있거나 (보석에 응하기 위해서이건, 제37조제7항a호 또는 다른 이유로 유치되었던 관계없이),
 - (b) 2003년 형사사법법 제29조에 따른 때
- (9) 본조의 “경고” 에는
 - (a) 2003년 형사사법법 제3부에서 의미하는 조건부 경고와
 - (aa)¹⁾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4부 제1장에서 의미하는 소년조건부경고
 - (b) 동법 제65조의 주의 또는 견책을 포함한다.

37C²⁾ 제37조제7항a호에 따른 석방 후 보석위반

- (1) 본조는
 - (a) 제37조제7항a호 또는 제2항b호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그 보석에 따라 제46A조에 해당하여 체포되고
 - (b) 제46A조제2항에 명시된 경찰서에 체포된 후 유치한 때에 제37B조제4항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원] 본호는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따라 2009. 11. 16. 신설됨.
 2) [원] 본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9. 신설됨.

(2) 피체포자는

- (a) 기소되거나
- (b) 보석부 또는 무보석부로 불기소 석방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피체포자 처리결정은 유치인보호관이 한다.

(4) 제2항b호에 따라 보석조건부 석방된 사람은 (가능한) 체포전에 적용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보석석방되어야 한다.

37CA¹⁾ 제37조제7항b호에 따른 보석위반

(1) 본조는 제37조제7항b호 또는 제2항b호에 따른 보석조건부 석방자에게 적용한다.

- (a) 제46A조에 따라 보석조건부 석방된 사람
- (b) 제46A조제2항에서 명시된 경찰서에 체포 후 유치된 사람

(2) 피체포자는

- (a) 기소되거나
- (b) 보석부 또는 무보석부 석방되어야 한다.

(3) 본조제2항에 따른 처분결정은 유치인보호관이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보석석방된 사람은 체포직전에 적용될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보석되어야 한다.

1) [원] 본조는 2006년 경찰·사법법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37D¹⁾ 제37항의 보석석방: 추가규정

- (1) 제37조, 제37C조제2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에 따라 보석석방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추후에 보석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2) 유치인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는 보석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제37조제7항a호 또는 제37C조제2항b호에 따라 보석석방되어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귀소하거나 경찰서에 유치된 때에는, 제37B조 또는 제37C조에 따라 처우하거나 본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
- (4A) 제37조제7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에 따라 보석석방되어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귀소하거나 경찰서에 유치된 때에는, 제37CA조에 따라 처우하거나 본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
- (5) 제4항 또는 제4A항에서 명시한 사람이 동항에 따라 처우하거나 본조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태에 합당할 때까지 유치를 계속할 수 있다.
- (6) 제5항과 제37조제1항에서 제3항, 동조제7항(제37조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제40조제8항 포함)에 따라 유치중인 때에는, 제37조제7항, 제37C조제2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에 따른 보석석방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38 기소후 유치인보호관의 임무

1) [원] 본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9. 신설됨.

(1) 피체포자가 보석보증하지 않은 범죄로 기소된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 제25조에 해당하면, 피유치자를 보석부 또는 무보석부로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피체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 (i) 이름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유치인보호관이 그가 제공한 이름이나 주소가 가짜라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ii) 피체포자가 보석에 응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iii) 피체포자의 범죄가 수감가능범죄의 경우에, 피체포자의 유치가 범죄 실행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iiia) 제63B조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 유치하는 것이 샘플을 채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iv) 피체포자가 수감가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피체포자의 유치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해를 막는데 필요하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v) 피체포자의 유치가 사법절차, 범죄의 조사, 특정범죄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또는
- (vi) 피체포자의 유치가 그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b) 피체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i) a호의 조건을 만족하거나(a호 iii a목의 경우, 체포된 미성년자가 최소 연령에 도달하여야 함)
- (ii)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c) 기소된 범죄가 살인에 해당한 때¹⁾

- (2) 제1항에 의하여 피체포자의 석방이 요구되지 않으면,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계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단, 범죄로 기소된 후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a호 iii a목에 따른 경찰유치를 승인할 수 없다.
- (2A)¹⁾ 제1항a호와 b호(a호 i 목과 vi목, b호 ii 목은 제외)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유치인보호관은 법원이 1976년 보석법 부칙 1의 제1부 제2(1)항에서의 결정에서 고려한 것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유치인보호관이 유치계속을 승인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유치근거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4) 제5항에 따른 서면기록은 기소된 사람이 동석한 곳에서 기록되어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의 근거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 (5) 본조제4항은 서면기록을 하는 때에 기소된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a) 그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 (b)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 (c)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때
- (6) 유치인보호관이 본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유치계속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체포미성년자를 지방관할시설로 이송해주어야 한다.
- (a)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 (b) 12세 이상의 피체포미성년자에게 적당한 감호시설이 없고 다른 지방관할시설에 두는 것이 미성년자가 끼칠 심각한 해악으로부터 일반인을 보

1) [원] 본호는 2009년 검시 및 사법법에 따라 2010. 2. 1. 추가됨.

1) [원] 본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신설됨.

호하는데 적당하지 않을 때

(6A)¹⁾ 본조에서

“지방관할시설”이란 정부기관에 의하거나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제공된 (1989년 아동법의 개념 내에서의) 숙소를 말한다.

“최소연령”이란 제63B조제3항b호에서 명시한 나이를 말한다.

“감호시설”이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공된 숙소를 의미한다.

“성범죄”란 2003년 형사사법법 부칙 15의 제2부에 특정된 범죄를 말한다.

“폭력적 범죄”는 살인 또는 위 부칙 제1부에 특정된 범죄를 말한다.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기소된 체포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그가 실행하는 다른 후속범죄로 사망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6B) 본조제6항에 따라 체포된 미성년자를 지방관할시설로 옮기는 경우, 누구든지 유치할 권한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

(7) 본조제6항의 체포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증명서는 처음 인계되기 전에 법원이 발부하여야 한다.

(7A)²⁾ 본조에서 “수감가능범죄”란 1976년 보석법 부칙 1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8) 본법 제4부에서 “지역당국”은 1989년 아동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39 유치인에 대한 책임

1) [원] 본조 제6A항 및 제6B항은 1989년 아동법(제41호)에 따라 1991. 10. 14. 신설됨.

2) [원] 본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신설됨.

(1) 본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경찰서소속 유치인보호관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경찰서의 모든 피유치자는 본법과 피유치자의 처우에 관하여 제정된 실무규범에 따라 처우되어야 하고
- (b) 그 사람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법과 실무규범에 따라 유치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2) 본법으로 제정된 실무규범에 따라, 유치보호관은

- (a) 피유치자의 범죄를 수사중인 경찰관 또는
- (b) 경찰서 밖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게로 유치인을 이송하거나 이송을 허락할 수 있으며,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a호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고 인계받은 경찰관이 본법과 제1항에서 언급한 실무규범에 따른 처우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유치인이 유치인보호관에게로 다시 인계할 때에는, 범죄조사 경찰관은 유치인 보호관에게 본조와 실무규범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피체포미성년자가 제38조제6항의 지방관할시설로 이송되면,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서 부과한 의무를 더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

(5) 삭제¹⁾

(6)

- (a) 유치인보호관보다 상급 경찰관이 피유치자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 (b) 그 지시가
 - (i) 본법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유치인보호관의 결정이나 조치 또는

1) [원] 본항은 1989년 아동법(제41호)에 의하여 1991. 10. 14. 삭제됨.

- (ii)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결정 또는 조치와 상충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보호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관장하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에게 일단 그 문제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삭제¹⁾

40 경찰유치의 심사

- (1) 범죄수사와 관련있는 경찰유치중인 사람의 유치심사는 본조의 다음 규정에 정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a) 체포 및 기소된 사람의 경우, 유치인보호관
- (b) 체포되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위급 이상 경찰관

- (2) 심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본 조에서는 “심사경찰관” 이라고 한다.

- (3) 제4항에 따라

- (a) 첫번째 심사는 첫 유치승인후 6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 (b) 두번째 심사는 최초 심사 후 9시간 이내에 행하며
- (c) 이후의 심사는 9시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4) 다음의 경우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 (a) 제3항에서 지정한 마지막 기간에 모든 영향을 미칠 상황을 고려하여, 그 때 심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 [원] 본항은 2009년 경찰활동 및 범죄법(제26호)에 의하여 2010. 1. 12. 삭제됨.

- (b) 다음에 해당하여 a호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i) 경찰관 및 심사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있는 유치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심사를 하기 위한 질문에 개입하여 질문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
 - (ii) 적당한 심사경찰관이 없는 때

- (5) 본조제4항에 따라 심사가 연기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마지막 심사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본조제4항에 따른 연기 후 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런 사실은 후속심사가 실행 될 때의 본조에 따른 조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7) 심사경찰관은 심사연기사유를 유치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8) 제9항에 따라, 심사중인 피유치자가 심사를 받기 전에 기소되지 않은 때에는, 제37조제1항에서 제6항이 적용되나 제8A항에 명시한 수정사항도 적용한다.
- (8A)¹⁾ 수정사항이란
 - (a) 심사중인 유치인을 피체포자로
 - (b) 심사경찰관을 유치인보호관으로 대체하고
 - (c) 제6항의 a호 이후에 다음 호를 삽입하는 것이다.

“(aa) 줄린”

- (9) 제37조제9항 또는 제37D조제5항에 따라 유치계속 중인 때에는, 제37조제1항에서 제6항은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사경찰관의 의무이다.

- (10) 유치심사중인 사람이 심사를 받기 전에 기소된 때에는, 제38조제1항에서 제

1) [원] 본항과 동조제10A항은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의하여 2003. 4. 1. 신설됨.

6B항은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10A항에 명시된 수정에는 영향을 받는다.

(10A) 그 수정사항은

- (a) 유치심사중인 사람을 피체포자 또는 기소된 사람으로
- (b) 제5항의 a호 뒤에 다음 호를 삽입하는 것이다.
“(aa) 줄린”

(11)

- (a) 심사경찰관보다 상위계급 경찰관이 경찰유치중인 사람 사람과 관련한 지시를 한 때와
- (b) 그 지시가
 - (i) 본법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경찰관의 결정 또는 조치나
 - (ii)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한 결정 또는 조치와 상충될 때에는,
심사경찰관은 유치심사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위하여 일단 그 문제를 경찰서를 관장하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유치계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경찰관은

- (a) (수면 중이 아닌) 사람 또는
- (b) 심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유치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 본조제14항에 따라, 유치심사중인 사람 또는 그의 변호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12항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14) 의견진술이 그의 상태나 행동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경찰관은 유치심사중인 사람의 구두의견진술 청취를 거부할 수 있다.

40A¹⁾ 제40조의 심사를 위한 전화사용

- (1) 제40조제1항b호의 심사는 피체포자가 유치된 경찰서에서 한 명 이상의 전화를 통한 토의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a) 심사에 제45A조에 따른 화상회의장치를 사용한 승인을 한 때
- (b) 규칙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때

- (3) 피체포자가 유치된 곳에 출석하지 않은 경찰관이 심사를 하는 때에는

- (a) 그 경찰관이 심사수행에 관한 기록을 할 의무는 다른 경찰관이 기록을 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 (b) 피체포자가 참석하여 기록해야 할 요건은 다른 경찰관의 기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c) 제40조제12항과 제13항의
 - (i) 피체포자 또는
 - (ii)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은 본조제4항에 의하여 승인된 방식으로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는 데에 적용되어야 한다.

- (4) 의견진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1)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1. 1. 10. 신설됨.

- (a) 심사경찰관에게 서면의견을 즉시전송할 장치가 있는 경우
 - (i)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사용하여 구두로 하거나
 - (ii) 그 전송장치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고
- (b) 기타의 경우에는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사용하여 구두로 한다.

(5) 본조에서 “화상회의장치”는 제45A조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41 기소하지 않은 유치기간의 제한¹⁾

- (1) 본조의 다음 조항과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기소전 24시간 이상 계속유치할 수 없다.
- (2) 피유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본법에서는 “기준시” 라고 함)
 - (a) 본호를 적용한 사람의 경우
 - (i) 경찰서에 도착한 시점 또는
 - (ii) 체포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시점
 - (b) 잉글랜드와 웨일즈 밖에서 체포된 경우
 - (i) 그 범죄로 체포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계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서에 최초로 도착한 시점 또는
 - (ii) 그 사람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들어온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
중 빠른 시점
 - (c)
 - (i) 임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였거나
 - (ii) 체포되지 않고 경찰서에 경관과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체포된 때에는 체포시점

1) [역]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ca)¹⁾ 제30A조에 따라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도착한 시점
- (d) 본조제5항의 적용을 제외한 경우, 체포후 인계된 첫번째 경찰서에 도착한 시점

(3) 제2항a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a) 체포가 영국 및 웨일즈 지역에서 이루어진 때
 - (b) 다른 지역에서 체포되고
 - (c)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하여 체포된 지역에서 신문받지 않은 때
- 동호 i 목에서 “해당경찰서”란 체포되어 인계된 최초경찰서를 의미한다.

(4) 본조제2항은 그의 체포 또는 과거에 체포되었던 사항이 최초로 체포되었던 범죄로 체포된 상태이거나 체포에 참고가 되는 것처럼 제31조에 따른 피체포자에게 적용된다.

(5)

- (a) 영국 및 웨일즈의 한 관할지역(“첫번째지역”) 내의 피유치자가
- (b) 영국 및 웨일즈의 다른 관할지역에서 범죄로 추포(“두번째 지역”)되어
- (c) 첫번째 지역에서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신문을 하지 않고 범죄조사를 위하여 두번째 지역으로 인계된 때의 기준시는,
 - (i) 유치중이던 첫번째 지역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때 또는
 - (ii) 인계된 두번째 지역의 최초경찰서에 도착한 시점 중 빠른 시점이다.

1) [원] 본호는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의하여 2004. 1. 20. 신설됨.

- (6) 피유치자를 치료목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한 때에는, 병원에서 신문한 시간 또는 이송에 걸린 시간, 범죄관련 증거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시 이송된 시간이 본법의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단, 병원에 있거나 이송하거나 재이송된 그 밖의 시간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 (7) 제8항에 따라, 기준시에서 24시간이 경과하여 경찰유치중이면서 기소되지 않는 사람은 보석부 또는 무보석부로 석방하여야 한다.
- (8) 제7항은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유치계속 승인을 받은 후 24시간 이상 유치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9) 본조제7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후 추가체포를 정당화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 때에만 이전에 체포했던 범죄로 영장없이 재체포할 수 있다. 단, 본항은 제46A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유치계속의 승인

- (1) 사람을 유치하고 있는 경찰서에 책임을 지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 (a) 기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인 또는 보전하고 질문을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하고
 - (b)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가 기소가능범죄이며
 - (c) 범죄에 대한 조사가 부지런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기준시부터 36시간까지 피유치자에 대한 경찰유치의 계속을 승인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한 경찰관이 제1항의 피유치자에 대하여 기준시부터 36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계속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경찰관은 승인시에 제1항

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 그 시점부터 36시간까지 피유치자의 유치계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피유치자를 관할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유치계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경찰관은 이송의 거리와 시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승인은

- (a) 기준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 (b) 제40조에 따른 두번째 유치심사가 있기 전에 할 수 없다.
- (5) 제1항에 따라 피유치자의 경찰유치 계속을 승인한 때에는
 - (a) 유치계속의 이유를 고지하고
 - (b) 피유치자의 유치기록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치계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관은

- (a) 피유치자 또는
- (b) 가능하면 경찰관이 승인여부를 결정할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유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본조제8항에 따라, 유치인 또는 그의 변호인은 제6항의 의견진술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8) 승인여부의 결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유치인의 상태나 태도 때문에 구두의 견진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유치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구두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9)

- (a)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이 유치계속되는 유치인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 (b) 승인의 시점에 제56조 또는 제5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

았다면

경찰관은

- (i) 그러한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고
- (ii)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 (iii) 유치기록에 그 결정을 기록하여야 하고
- (iv)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유치기록에 그 결정의 이 유도 기재하여야 한다.

(10) 경찰관이 기소없이 유치된 사람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치계속 승인을 한 때에는, 36시간이 초과하면, 보석으로 또는 무보석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단,

- (a) 피유치자가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거나
- (b) 유치계속이 승인되거나 제43조에 따라 허가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10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체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체포되었던 그 범죄로 영장없이 재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본항은 제46A조의 체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 유치계속 영장

(1) 청구서상 경관의 선서가 있고, 약식기소장에 의해 뒷받침되어, 치안판사법원이 청구서에 기재된 사람의 유치계속이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유치자에 대한 유치계속승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치안판사법원은 청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 (a) 그 약식기소장의 사본을 제공받았고
- (b) 심리를 위해 법원에 그 약식기소장을 가져온 때에만

유치계속을 위한 영장청구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3) 청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심리에서 법적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희망하는 때에는

- (a) 법원은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심리를 연기하여야 하며
- (b) 연기된 기간 동안 청구대상자는 유치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치계속은 본조 또는 제44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a) 기소없는 유치가 체포이유가 되는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고 보전하거나 질문에 의해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며
- (b)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가 기소가능범죄이고
- (c) 범죄조사를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행한 때

(5) 본조제7항에 따라, 유치계속 영장의 신청서는

- (a) 기준시로부터 36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또는
- (b)
 - (i) 치안판사법원에 기준시로부터 36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서를 심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 (ii) 법원이 6시간 안에 심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6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6) 제5항b호를 적용하는 경우

- (a) 청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영장심리가 열리기 전에 계속 유치될 수 있고

- (b) 유치인보호관은 구금기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i) 기준시로부터 36시간을 초과하여 유치한 사실
 - (ii) 그 이유

(7)

- (a) 유치계속 영장 청구서가 기준시로부터 36시간을 초과하여 작성되었고
- (b) 기간이 초과하기 전에 영장을 청구할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치안판사법원이 판단하면
법원은 청구서를 기각하여야 한다.

(8) 제1항에서 언급한 내용이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고, 치안판사법원이 청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유치계속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원은

- (a) 청구를 기각하거나
- (b) 기준시로부터 36시간이 초과할 때까지 심리를 연기하여야 한다.

(9) 청구서의 대상이되는 사람은 연기된 기간동안 경찰서에 유치될 수 있다.

(10) 발부된 유치계속 영장에는

- (a) 발부일시와
- (b) 영장에 기재한 기간동안 피유치자에 대한 유치계속 승인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11) 제12항에 따라, 유치계속영장에 기재된 기간은 치안판사법원이 증거를 확보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 (12) 그 기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3) 유치계속영장의 청구서를 작성할 때 피유치자를 유치되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관할경찰서로 이송할 때에는, 청구서를 심리하는 법원은 이송 거리와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4) 본조에 따라 청구서에 덧붙여 제출되는 약식청구서에는
 - (a) 청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체포한 이유가 되는 범죄의 본질
 - (b) 사람을 체포한 증거의 일반적인 본질
 - (c) 경찰서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한 질문내용과 추후에 예정된 질문내용
 - (d) 추후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5) 본조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인을 즉시 기소하거나, 제16항에 따라 보석 또는 무보석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 (16) 다음에 해당하면 제15항에 따른 석방이 필요하지 않다.
 - (a) 기준시로부터 24시간 이내인 때
 - (b) 유치계속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거나 제42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때
- (17) 본조에 따른 청구가 거부된 때에는, 거부된 때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그 대상자에 관하여 본조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18) 유치계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의 만료시한 전 또는 시간이 도래한 때에는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기소하지 않는 한 보석 또는 무보석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 (19) 제18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시부터 다시 체포해야 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이전에 체포된 그 범죄로 영장없이 재체포할 수 없다. 그러나 본항은 제46A조의 체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 유치계속 영장의 연장

- (1) 청구서상 경관의 선서가 있고, 첨부한 약식기소장에 의해 기초하여, 치안판사 법원이 청구서에 기재된 사람의 유치계속 연장이 정당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발부한 유치계속영장을 연장할 수 있다.
- (2) 제3항에 따라, 유치계속영장의 연장기간은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 (3) 그 기간은
 - (a) 36시간을 넘을 수 없고
 - (b) 기준시로부터 96시간 이내여야 한다.
- (4) 제1항 또는 본항에 따라 기준시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유치계속영장을 추가 연장하는 때에는, 본조에 해당하는 청구서상의 내용이 치안판사법원이 영장의 기간을 연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며 제1항에 따라 연장을 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내용도 적용하여야 한다.
- (5) 본조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연장하는 때에는 유치계속영장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6) 제43조 제2항, 제3항 및 제14항은 본조에 따른 청구에 준용한다.
- (7) 본조에 따른 청구가 거부되면, 청구대상자를 즉시 기소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석 또는 무보석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 (8) 본조에 따라 청구하여 연장 또는 추가연장과 관련한 유치계속 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제7항에 따른 석방을 할 필요가 없다.

45 기소전 유치부칙

- (1) 본법의 제43조와 제44조에서 “치안판사법원”은 공개법정이 아닌 둘 또는 그 이상의 치안판사로 구성된다.
- (2) 이 법의 본 장에서 언급한 기간 또는 일시는 근사치로 취급된다.

〈유치-잡칙〉

45A¹⁾ 유치 결정을 위한 화상회의장치 이용

- (1)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은 경찰서에 유치중인 피체포자의 경우에 제2항에서 언급한 경찰관에 의한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다.
 - (a) 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없으나
 - (b)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과 화상회의장치²⁾를 사용하여 대화가 가능한 때
- (2) 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지정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인계된 피체포자, 보석에 응한 자와 관련된 업무, 피체포자를 지정경찰서로 인계한 경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따른 유치인보호관의 업무
 - (b) 제40조제1항b호에 따른 심사(경위급 이상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으

1)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3. 4. 1. 신설됨.
 2) [역] 화상회의장치(video-conferencing facilities): (한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6조(전자식 장비에 의한 조사) ① 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간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기소되지 않고 유치된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하는 업무

- (3) 본조에 따른 규칙은 제1항의 장치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 (4) 본조에서 규칙은 지정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이 아닌 제1항에서 언급한 경찰관에 의해 제2항a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5) 본조제2항의 업무를 본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행할 때에는
 - (a)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록해야 할 의무는 다른 경찰관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며
 - (b) 피체포자의 참석하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경찰관의 기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6) 본조제2항b호에 따른 업무가 본조에 따른 규칙에 따라 승인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때에는
 - (a) 피체포자 또는
 - (b) 그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제40조제12항과 제13항의 조건은 본조제7항에 의하여 승인된 방식으로 의견진술할 기회를 피체포자 또는 변호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 (7) 의견진술은 본항에 의하여 승인된 방식으로 한다.
 - (a) 업무 수행 경찰관에게 서면의견을 즉시전송할 기구가 있는 경우
 - (i)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화상회의장치를 이용하여 그 경찰관에게 구두로 하거나
 - (ii) 진술의견의 즉시전송이 가능한 기구를 이용하여 그 경찰관에게 서면으

로 하고

(b) 기타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화상회의장치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구두로 할 수 있다.

(8) 본조에 따른 규칙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각각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규칙에서 지정하거나 명시한 경찰서에만 효력을 발하게 할 수 있다.

(9) 본조에 따른 규칙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며, 의회의 결의에 따라 폐지하여야 한다.

(10) 본조에서 업무와 관련한 화상회의장치에 관한 언급은, 경찰관이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텔레비전 생중계 기타 장치) 장치로, 유치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46 기소 후 유치

(1)

(a)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b) 기소후

(i) 유치중인 사람 또는

(ii) 제38조제6호에 따라 심사를 위해 기관에 유치중인 사람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치안판사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2) 기소된 경찰서가 있는 지방사법관할 내의 치안판사법원에 기소된 사람을 인치하는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법원에 인치하여야 하며, 범죄로 기소된 후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인치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치안판사법원이 기소된 그 날 혹은 그 다음날에 개정되지 않는 때에는, 기소한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지역의 지정경

찰관에게 이를 일러야 한다.

- (4) 기소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방사법관할 내의 치안판사법원에 기소된 사람을 인치하는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지역에서 이송하여 그 구역에 도착한 후 가능한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야 하며, 그 구역에 도착한 후 첫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치안판사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 (5) 해당 지역의 치안판사법원이 도착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개정되지 않은 때에는
 - (a) 그 지역 경찰서에 인계되어야 하며
 - (b) 해당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제4항의 지정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6) 본조제8항에 따라, 지방사법관할의 지정경찰관은 다음의 내용을 보고받아야 하고,
 - (a) 본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을 적용한 지역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 (b) 본조제5항에 따라 제4항을 적용한 지역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지정경찰관은 다음 기준일 이전에 치안판사법원에 인치할 일정을 정해야 한다.
- (7) 본조에서 “기준일”이란
 - (a) 기소한 경찰서가 있는 지방사법관할 내의 치안판사법원에 인치된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의미하고
 - (b) 그 외 다른 지방사법관할 내의 치안판사법원에 인치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 (8) 기준일의 다음날이 성탄절, 성금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본조제6항에 따른 지정

경찰관은 이 날들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치안판사법원에 인치하도록 일정을 정할 의무가 있다.

- (9) 본조는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안판사법원에 인치될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6ZA¹⁾ 거주지 지정 보석

- (1) 본조는 제47조제3항b호(“거주지 지정 보석”)의 보석에 관하여 적용한다.

- (2) 거주지 지정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은 본법에 따라 피 유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 (3) 본조제2항은 다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a)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7C조에 따라 거주지 지정 지시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경관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이 경관에게 알린 때
- (b)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7C조에 따른 거주지 지정 지시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본조의 목적에 따라 거주지 지정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경관이 피고인에게 알린 때
- (c) 동조에 따른 거주지 지정 지시와 관련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지시에 동의를 받지 못한 때
- (d) 법원이 어떤 이유로 거주지 지정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때

- (4) 제3항 b호 또는 d호를 해당인에게 적용하는 때에는, 본 장의 목적에 따라 처우되어야 한다.

- (a) 보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때와 마찬가지로

1) [원] 본조는 2006년 경찰·사법법(제48호)에 의하여 2007. 4. 1. 신설됨.

(b) 그와 관련하여 최초로 적용한 때에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우하여야 한다.

(5) 거주지 지정 보석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서 제46A조를 적용하여 체포되어 본조에 따라 경찰서에 인치된 피고인은, 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우하여야 한다.

(a) 보석의 원인이 된 범죄로 체포되어 기소된 때와 마찬가지로

(b) 경찰서에 인치된 때에는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우하여야 한다.

(6) 본조제4항 또는 제5항은 제47조제6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6A¹⁾ 경찰보석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체포권

(1) 경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람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1ZA)²⁾ 제1항에서 언급한 정해진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a) 제47조제3항b호에서 언급한 의무에 따라 보석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b)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7C조의 거주지 지정지시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지시에 불응하겠다는 점을 경관에게 알리지 않고 경찰서를 벗어난 사람

(1ZB)³⁾ 제1항에서 언급한 지정된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는

1) [원] 본조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의하여 1995. 4. 10. 신설됨.

2) [원] 본항은 2006년 경찰·사법법(제48호)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다음의 사람도 포함된다.

- (a) 제47조제3항b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석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 (b) 제54B조에 따른 수색을 거부한 사람

(1A)¹⁾ 제37조, 제37C조제2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에 따라 보석석방된 사람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고 경관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본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가능한 신속하게 정해진 경찰서에 인치되어야 한다.

(3)

- (a) 제30조와 (본조제2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 (b) 제31조에 해당하여

본조에 따라 체포된 때에는, 범죄로 체포된 때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47 체포 후 보석

(1)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사람을 보석석방한 때에는, 경관에 의한 보석과 마찬가지로 1976년 보석법 제3조, 제3A조, 제5조 및 제5A조를 적용하여 보석하여야 한다.

(1A)²⁾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일반조항은 제37조 또는 제38조제1항(제40조제10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이 보석으로 석방하는 때에만 적용된다. 본항에서,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일반조항”이

3) [원] 본항은 2009년 검시 및 사법법(제25호)에 의하여 2009. 12. 14. 신설됨.

1) [원] 본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2004. 1. 29. 신설됨.

2) [원] 본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의하여 1995. 4. 10. 신설됨.

란 1976년 보석법 제3조제6항의 의미와 같다.

(1B)¹⁾ 제37조, 제37C조제2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에 따라 보석석방되는 때에는, 1976년 보석법 제5B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C) 본조제1D항에서 제1F항은 제37조, 제37C조제2항b호 또는 제37CA조제2항b호의 보석조건에 따른 석방에 적용된다.

(1D)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 제43B조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1E) 치안판사법원은 보석대상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본항에서 “변경”은 1976년 보석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1F) 제1E항에 따라 치안판사법원이 보석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보석이 실효되지 않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2) 석방후 재체포를 정당화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1976년 보석법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할 의무를 조건으로 한 피보석자를 영장없이 재체포할 수 없다.

(3) 본조제3A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본법에서 “보석”이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보석을 의미한다.

- (a) 유치인보호관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의 치안판사법정에 출석할 것
- (b) 유치인보호관이 지정한 시간에 다음을 위해 지정경찰서에 출석할 것
 - (i)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7C조의 거주지 지정 지시와 관련한 절차(경찰서에 유치된 피고인의 예심에서 거주지 지정 지시 활용)
 - (ii) 그러한 지시와 관련된 예심절차
- (c) b호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목적을 위해 유치인보호관이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경찰서에 출석할 것

(3A)²⁾ 유치인보호관이 치안판사법원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보석한 때에

1) [원] 본조제1B항 ~ 제1F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의하여 2004. 1. 29. 신설됨.

는

- (a) 범죄로 기소된 후 범정의 최초공판일이 도래하지 않은 날 또는
- (b) 지정경찰관이 지방사법관할에 해당일까지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린 때에는 그 마지막 날까지 출석하여야 한다.
- (4) 유치인보호관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은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5) 삭제¹⁾
- (6) 본장에 따라 보석이 허가된 사람과 보석허가조건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제46A조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중인 사람은, 보석허가 전 유치기간의 전부를 본법의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 (7) 경찰서에 출석할 의무를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재체포된 때에는, 처음 체포된 사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나, 본항은 제46A조에 따라 체포되거나 보석허가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제46ZA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할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8)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에서
 - (a)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바꾼다.
 - “43 체포중 보석 (1)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에 따라 치안판사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때에는,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출석하기 위한 보석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 (2) 경찰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데 부과하는 보석보증금은 보석보증서에 기재된 경찰서의 관할지역 치안판사법원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2) [원] 본항은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제37호)에 따라 1998. 9. 30. 신설됨.

1) [원] 본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삭제됨.

한 때만큼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b) 제117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본조제1항에 따라 영장으로 보석을 보증한 때에는

(a) 피체포자가 보증금없이 보석으로 석방된 때에는, 경찰서에 인계할 필요는 없으나, 인계한 때에는, 그 보증보석으로 석방하여야 한다.

(b) 보석보증금으로 석방된 때에는, 체포시 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하고, 유치인보호관은 (보증에 부합하는 보석금을 승인하면) 보증을 원인으로 하여 석방하여야 한다.”

47A1) 법원 서기에 의한 조기행정심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경찰서에 있는 때에는, 본법에 따라 치안판사법원에 인치되는 조건으로 석방된 때에는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50조(조기행정심사)에 따른 법원서기에 의한 심사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48 경찰유치장 구금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 제128조

(a) “경관의 구금”이라는 말은 “유치경찰서에”로 바꾸고

(b) 제7항 뒤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8) 본조제7항에 따라 경찰서에 사람을 유치한 때에는

(a) 다른 범죄로 신문하기 위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으면 유치를 계속하여서는 안되고

(b) 유치를 계속하는 때에는, 중지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치안판사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c) 본법의 피유치자는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39조(유치인에 대한

1) [원] 본조는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제37호)에 따라 1998. 9. 30. 삽입됨.

- 책임)에 따른 의무가 있는 피유치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d) 유치하는 때에는 동법 제40조(경찰유치심사)와 같은 정기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49 유치형에 산입하는 경찰유치

- (1) 1967년 형사사법법 제67조제1항 (유치형의 계산)에서 “범죄자”와 관련한 맨 처음 나오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 ...한 때”로 대체한다.

- (2) 다음 항을 동조제1항 뒤에 삽입한다.

“(1A) 제1항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 (a) 신고받은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유치상태에 있었던 기간 또는
- (b) 구금된 기간
 - (i) 신고절차, 신고된 범죄, 관련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구금한 기간
 - (ii) 법원 명령 이외의 이유로 구금 또는 유치된 기간.”.

- (3) 다음 항은 본조제6항 뒤에 삽입한다.

“(7) 본조에 따른 피유치자는

- (a)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에 따라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때 또는
 - (b) 1984년 (임시규정) 테러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유치된 때에는 언제든지
- (8) 경찰유치기간은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조에 따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0 유치기록

- (1) 각 경찰서는 다음의 사항을 연물로 보여주는 서면기록을 하여야 한다.

- (a) 24시간 이상 계속유치된 후 기소없이 석방된 사람의 수

- (b) 추가유치영장의 신청건수와 그 신청결과
- (c) 추가유치영장과 관련하여
 - (i) 추가유치영장 승인기간
 - (ii) 그 승인으로 경찰유치된 사람의 유치기간
 - (iii) 기소 또는 불기소 석방 여부

(2) 연간보고서는

- (a) 1996년 경찰법 제22조 또는
- (b) 광역경찰위원회가 작성하고,
제1항에서 언급한 기록과 관련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51 예외조항

본법은

- (a) 1971년 이민법 부칙 2의 제4항으로 이민국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정조항)
- (b) 2000년 테러방지법 제41조 또는 부칙 7(체포·유치권)에 의해 부여된 권
한
- (c) 삭제¹⁾
- (d) 인신보호영장 또는 다른 구제책을 신청할 유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2

삭제²⁾

1) [원] 본호는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삭제됨.
2) [원] 본조는 1989년 아동법(제41호)에 따라 1991. 10. 14. 삭제됨.

제5부 경찰의 심문과 처우

53 경관의 신체수색권 폐지

(1) 제2항에 따라 (지방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도 다음을 승인하면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a) 경찰서 피유치자의 경관에 의한 수색

(b) 경관에 의한 내밀영역 수색

수색을 승인하는 보통법 규칙은 a호와 b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지한다.

(2) 삭제¹⁾

54 피유치자에 대한 수색²⁾

(1)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다음을 확신하는 때에 수색할 수 있다.

(a) 다른 곳에서 체포된 후 그 경찰서에 인계되었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된 후 경찰서에 인계된 사람 또는

1) [원] 본항은 1989년 테러방지법(입시규정)(제4호)에 따라 삭제됨.

2) [역] (한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640호]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우리나라의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는 1) 외표검사, 2) 간이검사, 3) 정밀검사로 나눈다.

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 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b) 제34조제7항, 제37조에 해당하여 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유치된 사람 또는 제46ZA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한 사람
- (2)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확신하는 모든 물건과 그 이유를 기록할 수 있다.
- (2A) 피체포자의 경우에 그 기록은 유치기록에 기재될 수 있다.
- (3) 제4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은 그 물건을 압수·보관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압수·보관하게 할 수 있다.
- (4) 의류와 사유품은 피유치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고 유치인보호관이 믿을 때에만 압수할 수 있다.
 - (a)
 - (i) 자기 또는 타인의 상해 초래
 - (ii) 재물 손괴
 - (iii) 증거 인멸
 - (iv) 도주원조에 사용될 수 있거나
 - (b) 그 물건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5) 물건이 압수되는 때에는, 압수한 사람은 압수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폭력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때
 - (b) 고지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을 때
- (6) 유치인보호관이 제7항에 따라 본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치인보호관이 그 목적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람을 수색할 수 있다.
- (6A)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거나, 경찰서 이외의 곳에 경찰유치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4항에 특정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수색할 수 있다.

(6B) 경관은 제6C항에 따라 압수·보관하거나 수색으로 찾아낸 물건을 압수·보관하게 할 수 있다.

(6C) 경관은 제4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되는 때에만 의류와 사유품을 압수할 수 있다.

(7) 내밀영역 수색은 본조에 따라 행할 수 없다.

(8) 본조에 따른 수색은 경관이 행하여야 한다.

(9) 수색을 행하는 경관은 수색을 받는 사람과 동성(同性)이어야 한다.

54A¹⁾ 신원확인을 위한 신체수색 및 검사

(1)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허가하면, 경찰서에 유치 중인 사람의 신체수색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a) 범죄실행에 연루된 사람으로 신원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b)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a) 문제의 표식을 확인할 수색 및 검사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었거나

(b) 그러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때

(3)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1항의 허가를

1)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24호)에 의하여 2001. 12. 14. 신설됨.

할 수 있다.

- (a) 용의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때
- (b)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고 경찰관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4)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두로 허가한 때에는, 서면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5) 수색 또는 검사에서 발견된 신원확인용 표식은 다음의 경우 사진촬영할 수 있다.

- (a) 동의를 얻거나
- (b) 동의를 철회하거나 사실상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때

(6) 본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가 행해지거나, 사진을 촬영한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경관에게만 있다.

(7) 본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의 대상자와 성별이 다른 사람은 수색·검사·신체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8) 내밀영역 수색은 본조에 따라 실행할 수 없다.

(9) 본조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 (a) 범죄의 예방·인지, 범죄수사, 기소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 (b) 사용 또는 노출된 후에는 보관할 수 있으나, 관련 목적 이외에 사용·노출할 수 없다.

(10) 본항에서

- (a) 범치는 다음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i) (영국 본토법 또는 본토 이외의 국가 또는 영역의 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 (ii) 영국의 한 지역에서 모두 발생하였고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b) 조사와 기소는 각각 영국 밖에서의 범죄 또는 범죄혐의 조사와 영국 밖의 국가·영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기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11) 본조에서

- (a)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는 특정인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도 포함된다.
- (b) 사진촬영에는 시각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람을 촬영한 것을 포함한다.

(12) 본조에서 “표식”이란 모양새와 상처를 포함하고, 범죄실행에 연루된 사람으로 신원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때에는 어떤 표식은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한 표식이 된다.

(13)¹⁾ 본조는 범인인도조약상의 피체포자의 체포권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4B²⁾ 거주지 지정 보석에 응하는 사람에 대한 수색

(1) 경관은 언제든지

- (a) 거주지 지정 보석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과
- (b) 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1) [원] 본항은 2003년 범죄인인도법(제41호)에 의하여 2004. 1. 1. 신설됨.

2) [원] 제54B조 및 제54C조는 2009년 검시 및 사법법(제25호)에 따라 2009. 12. 14. 신설됨.

- (2) 경관이 본조제3항의 근거에 따라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관은 그 물건을 압수·보관하거나 압수·보관하게 할 수 있다.
- (3) 그 근거란 그 물건이
 - (a) 경찰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고
 - (b) 경찰서에 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 (c) 범죄의 증거 또는 관련된 물건일 수 있다는 점이다.
- (4) 경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보관된 모든 물품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본조에 따라 내밀영역 수색은 할 수 없다.
- (6) 제1항에 따른 수색을 행하는 경관은 피수색자와 동성이어야 한다.
- (7) 본조에서 “거주지 지정 보석”은 제47조제3항b호에서 언급한 본조 제4부에 따른 보석을 의미한다.

54C 압수물품 보관권한

- (1) 본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관은 제54B조에 따라 피압수자가 경찰서에서 나갈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 (2) 경관은 범죄실행의 결과로 획득되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적 소유권을 밝히기 위하여 제54B조에 따른 압수물을 보관할 수 있다.
- (3) 제54B에 따라 압수된 물건이 범죄의 증거 또는 관련된 물건인 때에는, 경관은

- (a) 범죄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 (b) 법의학 조사를 위하여 또는 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 (4) 사진이나 복제물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제3항의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할 수 없다.
- (5) 본조는 1897년 경찰(재산)법 제1조에 따른 법원의 명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본조에서 제54B조에 따라 압수된 것에는 2002년 경찰개혁법 부칙 4의 제27A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포함한다.

55 내밀영역 수색

- (1)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다음과 같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 (a) 체포되어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사람이
 - (i)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 (ii) 경찰유치 중 또는 법원 구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되거나
 - (b) 그 사람이
 - (i) A급 마약을 은닉하여
 - (ii) 체포전에 상당한 범의로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체포자에 대한 내밀영역 수색을 승인할 수 있다.
- (2) 내밀영역 수색을 통해서만 그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만 경찰관은 내밀영역 수색을 승인할 수 있다.

- (3) 경찰관은 본조제1항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구두로 승인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A)¹⁾ 마약범죄로 인한 수색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 (3B) 마약범죄 수색을 실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경찰관은 다음의 내용을 수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a) 승인을 받았다는 점
 - (b) 승인을 한 이유
- (4) 마약범죄만을 위한 수색으로 내밀영역 수색을 하는 때에는 적합한 사람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위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내밀영역 수색은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합한 사람에 의해 검사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 언급된 이외의 내밀영역 수색은 경관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7) 경관은 성별이 다른 사람의 내밀영역 수색을 할 수 없다.
- (8) 내밀영역 수색은 다음의 장소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 (a) 경찰서
 - (b) 병원
 - (c) 등록의료인의 진료소
 - (d)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장소
- (9) 마약범죄 수색만을 위한 내밀영역 수색은 경찰서에서 실행할 수 없다.
- (10) 내밀영역 수색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유치기록의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

1) [원] 본조 제3A항, 제3B항, 제10A항 및 제13A항은 2005년 마약법(제17호)에 따라 신설됨.

다.

- (a) 수색의 대상이 된 신체의 부위
- (b) 수색을 한 이유

(10A) 내밀영역 수색이 마약범죄 수색인 때에는, 유치기록에는 다음의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 (a) 수색을 하도록 한 승인
- (b) 승인을 한 이유
- (c) 동의를 받은 사실

(11) 제10항과 제10A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은 수색완료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2)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은 내밀영역 수색으로 발견된 것을 압수·보관하거나 압수·보관하게 할 수 있다.

- (a) 압수된 것을 다음의 경우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때
 - (i) 자신 또는 타인의 상해 초래
 - (ii) 재물 손괴
 - (iii) 증거인멸
 - (iv) 도주원조 목적
- (b) 범죄 관련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13) 본조에 따라 물건을 압수하는 때에는, 압수한 사람은 압수대상자에게 압수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폭력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때
- (b) 고지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때

(13A) 마약범죄 수색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어떤 절차에서든지 범죄에 대하여

- (a) 회신할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 (b) 1998년 범죄와 질서위반법 부칙 3의 2항(기각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신청에 대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와
- (c) 기소된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법원 또는 배심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거절을 기각할 수 있다.

(14)

- (a) 1996년 경찰법 제22조 또는
- (b) 광역경찰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는 연간보고서에는 해당기간 동안 보고지역에서 수행된 본조에 따른 수색정보를 담아야 한다.

(14A) 삭제¹⁾

(15) 그 수색정보에는

- (a) 수색의 총건수
- (b) 적합한 사람에 의한 검사의 방법으로 행해진 수색의 건수
- (c) 적합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않았으나 그러한 부류가 참여한 때에 행해진 수색의 건수
- (d) 수행한 수색의 결과가 포함된다.

(16) 정보 속에는

1) [원] 본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4. 1. 삭제됨.

- (a) 마약범죄 수색의 총 건수
- (b) 수색의 결과도 포함된다.

(17) 본조에서

“상당한 범의”는 다음의 범죄를 실행할 의도를 의미한다.

- (a) 1971년 약물오남용법 제5조제3항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한 통제약물 소지)
- (b) 1979년 관세 및 소비세관리법 제68조제2항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의도로 수출 등)

“해당경찰관”은

- (a) 경관
- (b) 2002년 경찰개혁법 부칙 4의 제33D항을 적용하여 지정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지정된 사람
- (c) 삭제

“A급 마약”은 1971년 약물오남용법 제2조제1항b호1)로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마약범죄 수색”은 제1항b호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찰관이 A급 마약을 찾기 위하여 내밀영역 수색을 하는 것이다.

“적합한 사람”은

1) [역] (영국)1971년 약물오남용법 상 통제약물(controlled drugs)은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2의 제1장 내지 제3장에 구분되어 있다.
 (한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구분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a) 등록의료인 또는
- (b) 등록간호사를 말한다.

55A¹⁾ 엑스레이와 초음파 스캔

(1) 범죄로 체포되어 경찰유치중인 사람이

- (a) A급 마약을 삼키거나
- (b) 체포전 상당한 범의로 이를 소지하였을 것이라고,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엑스레이 촬영을 승인하거나 초음파 스캔을 실행할 수 있다(둘 다 가능함).

(2)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촬영이나 초음파스캔을 실시할 수 없다.

(3)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스캔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경찰관은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a) 승인을 받은 사실
- (b) 승인을 한 이유

(4)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초음파 스캔을 시행하는 것은 다음의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a) 병원
- (b) 등록의료인의 진료실
- (c)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장소

1) [원] 본조는 2005년 마약법(제17호)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 (5) 유치기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엑스레이 촬영 또는 초음파스캔에 대한 승인여부
 - (b) 승인의 이유
 - (c) 동의를 받은 사실
- (6) 제5항에 따라 기재될 정보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초음파 스캔을 마친 후 (경우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7)
- (a) 1996년 경찰법 제22조 또는
 - (b) 광역경찰위원회가 작성하는 연간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본조에 따라 실행된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스캔 정보를 담아야 한다.
- (8) 엑스레이와 초음파스캔에 대한 정보에는 각각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 (a) 총 엑스레이 촬영건수
 - (b) 총 초음파 스캔 건수
 - (c) 엑스레이 촬영 결과
 - (d) 초음파 스캔 결과
- (9) 엑스레이 촬영 또는 초음파 스캔에 대하여 적법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어떤 절차에서든지 범죄에 대하여
- (a) 회신할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 (b) 1998년 범죄와 질서위반법 부칙 3의 2항(기각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신청에 대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와

(c) 기소된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법원 또는 배심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거절을 기각할 수 있다.

(10) 본조에서 “상당한 범의”, “해당경찰관”, “A급 마약” 및 “적합한 사람”은 제55조의 의미와 같다.

56 체포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고지할 권리

(1) 사람이 체포되어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구금된 때에는, 그는 친구, 친척 또는 그를 알거나 그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조에서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체포·유치된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연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a) 기소가능범죄로 피유치된 경우
- (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승인한 때

(3) 구금된 사람이 제41조제2항에서 정의한 기준시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제1항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본조제2항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구두로 승인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본조제5A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 (a) 기소가능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 또는 훼손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고
- (b) 그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체포되지 않은 다른 용의자에게 경고하거나
- (c) 범죄의 결과로 획득한 재산의 환수를 방해하리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만 경찰관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A)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 (a) 기소가능범죄로 유치된 사람이 범행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 (b) 그 이득이 되는 재산의 환수를 체포된 사람의 이름을 통지함으로써 방해받으리라는 점

(5B) 제5A항의 범행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2002년 형사 절차법 제2부에 따라 결정된다.

(6) 연기가 승인되면

- (a) 피유치자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 (b) 유치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부여된 의무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8)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유치된 사람이 본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리는 다른 장소로 이송할 때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조는 최초로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도 적용한다.

(9) 일단 연기승인의 이유가 중단되면,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

(10) 본조는 테러관련조항에서의 피체포자 또는 유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7 아동과 청소년의 추가 권리

1933년 아동과 청소년법 제34조제2항은 다음항으로 대체한다.

“(2) 아동 또는 청소년이 경찰유치중인 때에는, 그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각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확보한 때에는, 가능한 즉시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a) 아동 또는 청소년의 체포사실
- (b) 체포이유
- (c) 유치된 이유

(4) 본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5) 본조의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 (a) 부모 또는 후견인
- (b) 기타 일정기간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7) 체포시 1969년 아동과 청소년법 제11조에서 정의한 감독을 받고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8) 제5항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란

- (a)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기관
- (b) 자원봉사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1980년 아동 보호법 제64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기관을 의미한다.

- (9) 제2항부터 제8항에 의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부여한 권리는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56조상의 권리에 추가된다.
- (10) 본조제2항의 경찰유치중인 아동이나 청소년에는 테러관련조항에 따라 유치된 아동이나 청소년도 포함되며, 제3항에서의 “체포”에는 유치가 포함된다.
- (11) 제10항에서의 “테러관련조항”은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65조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58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 (1) 피체포자와 경찰서 또는 다른 장소에 구금된 사람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변호인과 교통할 권리가 있다.
- (2) 제3항에 따라, 본조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요구시간은 유치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그러한 요구를 기소후 법원에서 하는 때에는 유치기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 (4) 변호인접견을 요구한 때에는, 본조에 의하여 연기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허용하여야 한다.
- (5) 이 때 제41조제2항에서 정의한 기준시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변호인 상담이 허용되어야 한다.
- (6) 요청에 대한 연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a) 그 사람이 기소가능범죄로 경찰유치중이며
 - (b)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승인한 때

- (7) 경찰관은 본조제6항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구두로 승인하는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8) 제8A항에 따라, 경찰관은 유치인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에는 경찰관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 (a) 기소가능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 또는 훼손하거나 타인의 대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
 - (b) 범죄실행 후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가 알 수 있게 될 때
 - (c) 범죄의 결과로서 획득한 재산의 회수 방해로 하게 되는 때
- (8A)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 (a) 유치인이 기소가능범죄로 수익을 얻었고
 - (b)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 수익의 재산적 가치를 환수하는데 방해가 될 때
- (8B) 제8A항에 따른 범행으로부터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2002년 형사절차법 제2부에 따라 결정된다.
- (9) 지연이 승인되면
 - (a) 유치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 (b) 유치기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0) 제9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1) 일단 연기승인의 근거가 중단되면 제1항에서 부여한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추가 연기는 할 수 없다.

(12) 본조는 테러관련 조항에 따른 피체포자 또는 피유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9

삭제¹⁾

60 조사의 녹음

(1) 다음은 국무장관의 의무이다.

- (a) 범죄를 실행하고 경찰서에 유치된 용의자의 조사를 녹음하는 것과 관련된 실무규범을 제정하는 것
- (b) 일정기간 효력을 발하는 지침을 통하여 범죄실행 용의자의 조사과정 또는 명령으로 특정된 범죄에 대한 진술을 녹음하게 하는 명령을 발하는 것

(2) 본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령에 따라 제정되고 의회의 결의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60A²⁾ 조사의 녹화³⁾

- 1) [원] 본조는 1988년 법률구조법(제34호)에 따라 삭제됨.
- 2)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범 및 경찰법에 따라 2001. 6. 19. 신설됨.
- 3) [역] 우리나라의 조사과정 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영국은 녹음녹화에 관하여 실무규범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무장관은

- (a) 경찰서에서 경찰관에 의한 조사과정의 녹화를 위한 실무규범을 제정하고
- (b) 본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침을 통하여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명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2) 본조의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은 명령에서 지정되거나 특정된 어떤 경우나 어떤 지역의 경찰서에 관한 것이다.

(3) 본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령에 따라 제정되고 의회의 결의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4) 본조에서

- (a) 조사란 범죄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고
- (b) 녹화란 오디오녹음이 포함된 녹화를 의미한다.

611) 지문채취²⁾

- (1) 본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적정한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없다.
- (2) 지문채취대상자가 경찰서에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지문채취는 다음에 해당하면 적정한 동의를

1) [원] 본조제3A항, 제4A항 및 제4B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3. 1. 1. 신설됨. 제7A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의하여 1995. 4. 10. 신설됨. 제8B항은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따라 2002. 12. 2. 신설됨. 제10항은 2003년 범죄인인도법(제41호)에 따라 2004. 1. 1. 신설됨.

2) [역] (한국) 지문채취 관련 규정: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16호]

필요로 하지 않는다.

- (a) 입건가능범죄로 체포되어 구금중이며
- (b) 경찰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없는 경우

(3A) 본조제3항a호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사람이 이미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채취한다.

- (a) 이전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이 완벽한 지문이 아닐 때
- (b) 이전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만족할만한 분석, 대조, 비교를 할만큼 충분한 품질이 아닐 때(문제의 사건에서든지 일반적으로든지).

(4)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의 지문은 다음의 경우에 적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다.

- (a) 입건가능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거나 그런 범죄로 보고될 것을 통지받고
- (b)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하여 지문이 채취된 적이 없는 때

(4A) 보석을 위해 법정이나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의 지문은 다음에 해당하면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동의없이 채취할 수 있다.

- (a) 법원이 지문채취를 허가한 경우
- (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지문채취를 허가한 경우

(4B) 법원이나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만 제4A조상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a) 보석심리에 응한 사람이 이전 사건으로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 보석심리에 응한 사람이 이전 사건에서 지문을 채취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5) 경찰관이 제4A항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두로 허가한 때에는 가능한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정한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 (a) 입건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b) 입건가능범죄로 경고를 받고 동시에 범죄를 시인한 경우
- (c)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제37호) 제65조에 따라 입건가능범죄로 주의 및 견책을 받은 경우

(7)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한 때에는

- (a) 지문을 채취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 (b) 지문을 채취한 후에 가능한 지체없이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7A) 지문을 경찰서에서 채취한 때에는, 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 (a) 지문을 채취하기 전에, 경찰관은 임의대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채취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b) 임의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지문을 채취한 후 가능한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8)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지문을 채취한 때에는, 지문을 채취한 이유와 제7A항b호에서 언급한 사실을 유치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8A) 삭제

(8B) 동의없이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의 지문을 채취할 권한은 경관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9) 본조는

(a) 1971년 이민법 부칙 2의 제18(2)항에서 부여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b) 테러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0) 본조는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체포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61A¹⁾ **족적**

(1) 본조에 규정된 이외에는, 동의없이 족적을 채취할 수 없다.

(2) 채취대상자가 경찰서에 있는 때에는, 족적 채취에 대한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채취대상자가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면 동의없이 족적을 채취할 수 있다.

(a)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로 체포되어 유치중이거나 입건가능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입건가능범죄로 등록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때

(b)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족적을 채취한 적이 없는 때

(4) 제3항a호에서 언급된 사람이 이미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하여 족적을 채취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다음에 해당하면 무시되어야 한다.

(a) 기존에 채취된 족적이 불완전하거나

1) [원] 본조는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 (b) 만족할만한 분석, 대조, 비교를 하기에 충분한 품질이 아닌 경우(해당 사건에서이든지 일반적으로든지)

(5)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족적을 채취하는 때에는

- (a) 족적을 채취하기 전에, 경찰관은 임의대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채취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b) 임의대조 가능성을 고지받은 사실을 족적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채취대상자가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때에는, 유치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6) 본조 제3항에 해당하여 동의없이 족적을 채취하는 때에는

- (a) 족적을 채취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 (b) 족적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유치기록에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7)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의 족적을 채취할 권한은 경관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8) 본조는

- (a) 테러관련 규정으로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과
- (b)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체포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21) 내밀영역 샘플

(1) 제63B조에 따른 내밀영역 샘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찰유치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취할 수 있다.

- (a)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채취를 승인하고
- (b) 채취대상자가 동의한 때

(1A) 범죄수사과정에서 채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비내밀영역 샘플이 분석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 (a)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채취를 승인하고
 - (b) 채취대상자가 동의한 때
- 에 한하여 경찰유치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만 제1항 또는 제1A항의 승인을 할 수 있다.

- (a)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 (b) 그 샘플이 범죄혐의를 확인 또는 반증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3)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1A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

1) [원] 본조 제1A항, 제7A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신설됨. 제10항(aa)호는 같은 법에 따라 1995. 3. 2. 신설됨.

다. 단, 구두로 승인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 (a) 경찰관이 승인하고
- (b) 그 승인에 따라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샘플을 채취할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i)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 (ii) 승인을 한 근거

(6) 제5항 ii 목에 따라 부여된 의무에는 채취대상자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의무도 포함된다.

(7)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 (a) 근거가 되는 승인
- (b) 승인을 한 근거
- (c)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샘플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7A) 내밀영역 샘플을 경찰서에서 채취한 때에는

- (a)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경찰관은 임의대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채취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b) 임의대조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샘플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8)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으로부터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제7항 또는 제7A항의 내용을 유치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9) 치아흔과 같은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때에는 등록된 치과의사에 의해서만 채취할 수 있다.
- (9A) 소변을 제외한 다른 류의 내밀영역 샘플은
- (a) 등록된 개업의 또는
 - (b) 공인 전문의료인만이 채취할 수 있다.
- (10) 내밀영역샘플 채취에 대한 동의를 합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 (a)
 - (i) 그 사람에 대한 재판여부 또는
 - (ii) 질문에 대한 회신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 (aa)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부칙 3의 제2항 (기각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신청에 대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판사
 - (b) 기소된 범죄의 유죄여부를 결정할 법원 또는 배심원은 그 사람의 범죄를 근거로 그 거부를 기각할 수 있다.
- (11) 본조는 1988년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 제11조, 1992년 노동법 제26조에서 제38조의 실행에 따른 표본 채취에 적용되지 않는다.
- (12) 본조는 테러관련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본조제1A항은 2000년 테러방지법 부칙 8의 제10항에 따른 비내밀영역 샘플 채취에 적용되지 않는다.

631) 기타 샘플

- (1) 본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없다.
- (2)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A) 비내밀영역 샘플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동의없이 채취할 수 있다.
- (2B) 첫째,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로 체포되어 경찰유치상태에 있을 것
- (2C) 둘째,
 - (a)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하여 신체의 같은 부위로부터 같은 유형의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한 적이 없거나
 - (b) 채취한 샘플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었을 것
-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 (a) 채취대상자가 법원의 승인에 따라 경찰서에 유치중이고
 - (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동의없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승인한 때
- (3A)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유치중인지 여부나, 법원의 승인에 따른 경찰 유치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 (a) 입건가능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입건가능범죄로 등록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고
 - (b) 경찰에 의해 범죄조사과정에서 채취된 비내밀영역 샘플이 있으나 그 샘플

1) [원] 제63조제2A항 ~ 제2C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따라 2004. 4. 5. 신설됨. 제3A항, 제3B항, 제8A항 및 제8B항은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신설됨. 제3C항은 1997년 (개정)형사증거법에 따라 1997. 3. 19. 신설됨. 제5A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의하여 2003. 1. 1. 신설됨. 제9ZA항은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의하여 2002. 12. 2. 신설됨. 제11항은 2003년 범죄인인도법(제41호)에 따라 2004. 1. 1. 신설됨.

플이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입증된 때

(3B)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로 기소된 때에는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3C) 1997년 형사증거(개정)법 제2조(정신이상으로 석방되었거나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이 유치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 (a)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 (b) 채취하는 샘플이 범죄관련성을 확인 또는 반증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

(5) 경찰관은 제3항의 승인을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 구두로 동의한 때에는, 가능한 즉시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A) 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부흔을 구성하고 있는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 (a) 신체의 같은 부위의 피부흔을 범죄조사과정에서 이미 채취하였고
- (b) 이전에 채취한 흔적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때

(6)

- (a) 경찰관이 승인을 하고
- (b) 그 승인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샘플채취대상자에게

- (i) 승인을 하였다는 점
- (ii) 승인을 한 근거를 고지하여야 한다.

(7) 위 제6항ii 목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는 채취대상자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의 본질을 설명할 의무가 포함된다.

(8) 본조제3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하는 때에는

- (a) 채취에 대한 승인과
 - (b) 승인을 한 이유를
- 샘플을 채취한 후 가능한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8A) 본조제2A항, 제3A항, 제3B항 또는 제3C항에 따라 동의없이 샘플을 채취하는 때에는

- (a)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 (b) 샘플을 채취한 후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8B)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 (a) 샘플을 채취하기 전, 경찰관은 임의대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채취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 (b) 임의대조 가능성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샘플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9)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으로부터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제8항, 제8A항, 제8B항에 따른 내용을 유치기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9ZA) 동의없이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권한은 경관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9A) 본조제3B항은 1995년 4월 10일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단, 1997년 형사증거(개정)법 제1조(기존의 성범죄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구금 또는 유치된 사람)는 예외로 한다.

(10) 본조는 테러관련 조항에 따라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1) 본조는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체포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63A¹⁾ 지문과 샘플: 보충규정

(1) 채취대상자가 입건가능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그런 류의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입건가능범죄로 등록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때에는, 본법의 본장에 따라 지문, 족적이나 샘플 또는 채취한 샘플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다음과 대조해볼 수 있다.

- (a) 하나 이상의 법집행기관에 의하거나 대표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 범죄수사와 관련되거나 범죄수사의 결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접근가능한 기타 지문, 족적이나 샘플
- (b) 정보가 대조할 사람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것이라면 a호에 언급한 기관이 보관하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기타 샘플로부터 추출한 정보

(1A) 본조제1항의 “관련 법집행기관” 이란

- (a) 경찰
- (b) 중대조직범죄기관

1) [원] 본조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제33호)에 따라 1995. 4. 10. 신설됨. 동조제 3A항 및 제3B항은 1997년 (개정)형사증거법에 따라 1997. 3. 19. 신설됨.

- (d) 범죄를 조사하거나 범죄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본항 a호에서 c호에 해당하지 않는) 영국령제도의 공공기관
- (e) 영국 본토 이외의 국가나 영토에서
 - (i) 경찰력에 하는 사람 또는
 - (ii) 그 국가 또는 영토의 법에 위반한 사람을 조사하거나 그런 행위로 유죄로 인지하는 사람
- (f) 국제협약 하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 (i) 하나 이상의 장소의 법에 위반하거나,
 - (ii) 협약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 (iii)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런 행위로 유죄로 인지된 사람

(1B) 제1A항의 경찰력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a) 1996년 경찰법 제2조 (제16호)에서 언급한 경찰력(런던외곽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력)
- (b) 대도시 경찰력
- (c) 런던시 경찰력
- (d) 1967년 (스코틀랜드) 경찰법 (제77호) 제1조에 따라 운영되는 경찰력
- (e) 북아일랜드 경찰청
- (f) 북아일랜드 예비경찰청
- (g) 국방부 경찰
- (h) 왕실 해양경찰
 - (i) 왕실 육상경찰
- (j) 왕실 항공경찰
- (k) 삭제
- (l) 영국 철도경찰
- (m) 저지주 경찰대
- (n) 건지섬의 유급경찰력

(o) 맨섬 경찰대

(1C)

- (a)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지문, 족적이나 샘플을 채취하였으나 제1항이 적용될 상황에 있고
- (b) 지문, 족적이나 샘플 및 그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임의대조에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때에는 지문이나 족적, 사안에 따라, 그 샘플과 정보를 지문이나 족적, 샘플, 제1항 a호 또는 b호에서 언급한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1D) 제1C항 동의한 때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 (2) 음모를 제외한 모발 샘플이 채취할 때에는, 충분한 샘플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당한 량의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모발을 자르거나 모근채 추출하는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한다.
- (3) 샘플채취권이 사람에게 관하여 행사될 때에는, 샘플은 1952년 감옥법을 적용한 교도소 기타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3A)

- (a) 제63조제3B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권한은 1983년 정신건강법 제3장을 적용하여 유치된 사람에게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i) 해당 입건가능범죄의 기소에 따라 내려진 병원의 명령 또는 임시병원명령
 - (ii) 그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명령으로 유치된 때에 내려진 이송명령
- (b) 제63조제3C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권한을 사람에게 대하여 행사할 때에는

샘플은 본법의 본장에 따라 유치된 병원에서 채취할 수 있다.

본항에서 사용된 표현은 1983년 정신건강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 (3B) 제63조제3B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권한은 2000년 형사법원권한(양형)법 제92조에 의하여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유치인에게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샘플은 그가 유치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 (4) 허용된 기간 내에 경관은 유치상태에 있지 않거나 법원의 승인에 의해 경찰유치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a) 입건가능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그러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사람이 범죄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샘플을 채취한 적이 없거나 샘플을 채취한 적이 있으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샘플이 불충분한 때에 해당하거나
- (b) 입건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기소된 후 샘플을 채취한 적이 없거나 (기소전후에) 샘플을 채취하였으나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합하나 샘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5) 제4항에서 명시한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데 허용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a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일이나 동호에서 언급한 고지일로부터 1개월 또는 해당경찰관이 그 샘플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 (b) b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해당경찰관이 그 샘플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6) 본조제4항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출석 전 최소 7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 (b) 어떤 날의 정해진 시각에 출석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경관은 본조제4항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8) 본조에서 “해당경찰관”이란

- (a) 제4항a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것이라고 알려진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 (b) 제4항b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된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관장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63B¹⁾ A급 마약 소지여부 테스트

(1) 샘플나 소변, 비내밀영역 샘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체내에 A급으로 지정된 마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경찰유치중인 사람으로부터 채취할 수 있다.

- (a) 체포조건이나 기소조건에 부합한 때
- (b) 나이조건과 요구조건에 부합한 때
- (c) 통지조건이 체포조건, 기소조건 또는 나이조건(경우에 따라)에 부합한 때

1) [원] 본조는 2000년 형사사법과 법원법(제43호)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목적에 따라 2001. 6. 20, 2001. 7. 2, 2002. 5. 20, 2002. 9. 2, 2003. 4. 1, 2004. 4. 1, 2005. 4. 1 그리고 2005. 12. 1에 각각 발효됨. 본조제1A항, 제3항, 제4A항, 제4B항, 제5B항~제5D항, 제7항 aa호/ca호/cb호는 2005년 마약법(제17호)에 따라 신설됨. 제5A항, 제6A항, 제6B항, 제9항, 제10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따라 2004. 8. 1. 신설됨.

(1A) 체포조건은 범죄로 체포되었으나 아직 그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의

- (a) 범죄가 촉발범죄이거나
- (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A급으로 지정된 마약의 오용으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에 기여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샘플 채취를 허가한 경우이다.

(2) 기소조건이란

- (a) 관련자가 촉발범죄로 기소되었거나
- (b) 관련자가 범죄로 기소되고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어떤 A급 지정 마약을 오남용하여 범죄에 기여하거나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샘플의 채취를 승인하는 것이다.

(3) 나이조건이란

- (a) 체포조건이 부합하려면 해당자가 18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 (b) 기소조건에 부합하려면, 14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4) 요구조건은 경찰관이 관련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4A) 통지조건이란

- (a) 최고책임경찰관이 전반적으로 경찰지역 내 또는 특정경찰서의 경찰유치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국무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처리를 통지받은 적이 없고
- (b) 그 통지가 철회된 적이 없어야 한다.

(4B) 본조제4A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란 본조에 따라 통지서에 특정된 사람으로부터

터 본조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 (a) 체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b)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c) 18세 미만인 사람

(5)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요구를 하기 전에, 경찰관은

- (a) 일단 요구를 받게 되면,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하고
- (b) 제1A항b호 또는 제2항b호의 경우, 승인을 받았다는 점과 승인을 받은 근거를 알려주어야 한다.

(5A) 채취대상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 (a) 본조제4항에 따라 요구하고
- (b) 본조제5항에 따른 고지와 (가능하면)통지를 하며
- (c) 샘플을 채취할 때에는 보호자가 동석하여야 할 수 있다.

(5B) 본조에 따라 체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하는 때에는 같은 계속유치기간 동안 본조에 따라 다른 샘플을 채취할 수 없다. 단,

- (a) 기소조건에도 부합하면 언제든지 대상자로부터 그 기간동안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기소조건에 부합한 사실에 따른 샘플로서 처리되어야 한다.
- (b) 샘플이 처리된 사실은 유치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5C) 제1항a호에도 불구하고, 샘플은 다음에 해당하면 본조에 따라 채취될 수 있

다.

- (a) 범죄로 체포된 때(최초범죄)
- (b) 체포조건이 부합하나 기소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때
- (c) 제1항에 따른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d호에 언급한 이유로 체포되었으나) 경찰유치로부터 석방될 수 있을 때
- (d) 제1A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체포되어 계속유치상태에 있을 때
- (e) 최초범죄로 인한 체포로 유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샘플이 채취된 때

(5D) 보호인유치관에게 인계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사람의 샘플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채취할 수 없다.

(6) 본조에 따른 샘플채취는 부령으로 제정된 규칙에 의해 규정에 따라서만 채취할 수 있다. 본항에 따른 규칙은 초안이 의회의 결의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만 제정할 수 있다.

(6A) 국무장관은 명령으로 령을 개정할 수 있다.

- (a) 제3항a호의 나이를 일정기간 특정 나이로 바꿀 수 있고, 경찰구역에 따라 나이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b) 령에 따라 동항b의 나이를 일정기간 다른 나이로 지정할 수 있다.

(6B) 본조제6A항에 따른 령을 포함하여 부령은 그 초안이 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제정할 수 없다.

(7) 본조에 따른 샘플로부터 얻은 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면 공표될 수 있다.

- (a) (1976년 보석법에서의 의미에 한하는) 형사절차에서 관련자에 대하여 보석석방한 결정을 알리기 위한 때
- (aa) 관련자에게 2003년 형사사법법 제3부에 따른 조건부 경고를 발하거나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제4부 제1장에서 소년조건부 경고 결정을 알리기 위한 때

- (b) 관련자가 경찰유치상태에 있거나, 구금중이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거나 보석으로 석방된 때, 그의 보호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기 위한 때
- (c) 관련자가 범죄로 기소된 때 또는 석방된 때에 법원의 선고 및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한 때
- (ca) 관련자가 2005년 마약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한 때
- (cb) 동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절차를 위한 때
- (d) 관련자가 적절한 조언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때

(8) 상당한 이유 없이 본조에 따라 채취된 샘플제공을 거부한 사람은 범죄의 유죄로 간주한다.

(9) 삭제¹⁾

(10) 본조에서

“보호자”란 17세 미만인 사람과 관련하여

- (a) 부모 또는 후견인, 정부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의 보호아래 있으면, 그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b) 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
- (c) a호 또는 b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경찰관 또는 경찰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이 아닌 18세 이상의 책임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경찰최고책임자”란

- (a) 경찰구역과 관련하여, 그 경찰지역 경찰대의 경찰서장

1) [원] 본항은 2005년 마약법(제17호)에 따라 2005. 12. 1. 삭제됨.

- (b) 경찰서와 관련하여, 해당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 경찰대의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63C¹⁾ A급 마약 소지여부 테스트: 보충

- (1) 제63B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3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레벨4 미만의 벌금, 혹은 이 둘의 병과형으로 즉결처분을 받게 된다.
- (2) 경찰관은 제63B조에 따른 승인을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 구두로 동의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63B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샘플을 채취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승인 및 혐의의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 (4)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한 때에는, 본조제3항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을 유치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제62조 제11항 및 제12항은 제63B조에 준용하고, 제63B조는 제62조와 제63조의 일반칙에 반할 수 없다.
- (6) 본조제63B에서

“A급 마약”과 “오남용”은 1971년 마약오남용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지정된” (A급 마약과 관련하여)과 “축발범죄”는 2000년 형사사법과 법원법 제3부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64 지문과 샘플의 폐기

(1A)

1) [원] 본조는 2000년 형사사법과 법원법(제43호)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며, 목적에 따라 2001. 6. 20, 2001. 7. 2, 2002. 5. 20, 2002. 9. 2, 2003. 4. 1, 2004. 4. 1, 2005. 4. 1 그리고 2005. 12. 1에 각각 발효됨.

- (a)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지문, 족적이나 샘플을 채취하고,
- (b) 본조제3항에 따른 폐기 요구가 없으면,
 지문, 족적이나 샘플은 채취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보관할 수 있다. 단 범죄의 예방이나 발견, 범죄수사, 기소 또는 사망한 사람이나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람의 신원확인과의 관련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도 사용될 수 없다.

(1B) 위 제1A항에서

- (a) 지문이나 족적을 사용하는 참고자료에는 제63A조제1항 또는 제1C항에 따라 대조가 허용되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다.
- (b) 샘플을 사용한 자료에는 제63A조제1항 또는 제1C항에 따른 대조나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의 대조를 허용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샘플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범죄관련자료에는 다음의 행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 (i) (부분적으로 영국지역 또는 영국 이외의 국가·영토에서의 법에 해당하든)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ii) 그 행위가 모두 영국에서 발생하였고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
- (d) 조사와 기소에 대한 관련자료에는 각각 범죄나 혐의점을 영국 밖에서 조사한 것과 영국 이외의 국가·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기소를 포함한다.

(3)

- (a) 지문, 족적이나 샘플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채취되고
- (b) 채취대상자에게 범죄실행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본조의 다음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한 목적을 수행한 후 신속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3AA)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샘플, 지문 및 족적은 제3항의 폐기를 요구받지 않는다.

- (a)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채취되었을 때
- (b) 샘플, 지문, (경우에 따라) 족적이 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채취되었을 때

(3AB) 제3AC항에 따르면, 본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 족적, 샘플을 폐기할 권리가 주어지는 때에는(제3AA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지문, 족적, 샘플이나 샘플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 (a) 지문, 족적, 샘플을 폐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거나
- (b) 다른 범죄를 조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본조제1B항에도 제1A항에 적용된 것과 같은 목적이 적용된다.

(3AC) 지문, 족적, 샘플을 채취한 사람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관동의를 받은 때에는

- (a) 그 샘플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할 필요가 없고
- (b) 제3AB항에 따라 지문, 족적이나 샘플, 샘플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 (c) 그 동의는 제63A조제1C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본항의 목적으로 받은 동의는 철회될 수 없다.

(3AD) 제3AC항에서의 동의가 지문, 족적, 샘플의 폐기요구를 받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4) 삭제¹⁾

(5) 지문, 족적을 폐기할 때에는

- (a) 지문, 족적의 사본도 폐기하여야 하고
- (b) 지문, 족적과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권이 있는 담당선임경찰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6) 지문, 족적 또는 그 사본을 폐기할 때에는 입회허가 요구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6A)¹⁾

- (a) 제5항b호를 준수하고
- (b) 지문이나 족적이 관련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담당선임경찰관이나 그에 의해 승인된 사람, 본조의 목적으로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B) 본조에서 “담당선임경찰관” 이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구역의 선임경찰관을 말한다.

(7) 본조는

- (a) 1971년 이민법 부칙 2의 제18항2호, 1999년 이민과 망명법(제33호) 제20조(이민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무장관에 정보누설)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b) 테러방지규정에 따라 체포·유치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64ZA~64ZN²⁾

-
- 1) [원] 본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1. 6. 19. 삭제됨.
 - 1) [원] 제6A항 및 제6B항은 1988년 형사사법법(제33호)에 따라 신설됨.
 - 2) 제64ZA조~제64ZN조는 2010년 범죄 및 안보법(제17호)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고 아직 신설 또는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제목만을 열거함.

- 64ZA 샘플의 폐기
- 64ZB 임의로 제출한 데이터의 폐기
- 64ZC 통제명령에 따르는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 64ZD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 64ZE 18세 미만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과 관련한 데이터의 폐기: 한정범죄를 제외한 범죄경력등록범죄
- 64ZF 불기소처분을 받은 16세 미만의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한정범죄
- 64ZG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16세 혹은 17세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의 폐기: 한정범죄
- 64ZH 한정범죄를 제외한 등록가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폐기
- 64ZI 제64ZB조부터 제64ZH: 보칙
- 64ZJ 제61조제6A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의 폐기
- 64ZK 국가안보 목적의 보유
- 64ZL 동의를 받은 보관
- 64ZM 사본의 폐기 및 폐기의 통지
- 64ZN 보유한 물질의 사용

64A¹⁾ 피의자의 사진촬영 등

1)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24호)에 의하여 2001. 12. 14. 신설됨. 본조제 1A항 및 제1B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제1B항ca호는 2006년 폭력범죄근절법(제38호)에 따라 2007. 8. 22. 신설됨. 동항g호는 2006년 경찰·사법법(제48호)에 따라 2007. 4. 1. 신설됨. 제5항c호 및 제6A항은 2005

(1) 경찰서에 유치된 사람은 다음의 경우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 (a) 적절한 동의를 받거나
- (b)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의없이

(1A) 제1B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B항에서 언급한 관련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 사진촬영될 수 있다.

- (a) 적절한 동의를 받거나
- (b) 적절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의없이

(1B) 본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 (a) 범죄로 경관에 의해 체포된 적이 있거나
- (b) 범죄로 경관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관에 의해 구금된 때
- (c) 2002년 경찰개혁법("2002년 법") 부칙 4의 제2항제3호, 제3B호에 따라 치안보조관과 대기할 조건에 속한 때
- (ca) 2006년 폭력범죄감소법 제27조[무질서의 위험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한 지시]에 따라 경관에 의해 지시를 받은 때
- (d) 2001년 형사사법과 경찰법 제1장 제1부[현장에서 무질서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금]에 따라 정부경찰관에 의해 벌금통지를 받은 때, 1996년 교육법 제444A에 따라 경관에 의해 벌금통지를 받은 때, 1988년 도로교통위반자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경찰에 의해 범칙금통지를 받은 때
- (e) 본항을 적용하여 지명된 치안보조관에 의하여 (2002년 법 부칙 4의 제1항 내) 스티커발부 범죄와 관련한 통지를 받은 때
- (f) 본항을 적용하여 지정된 승인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에 의해 (2002년 법

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5. 8. 1. 신설됨. 제7항은 2003년 범죄인 인도법(제41호)에 의하여 2004. 1. 1. 신설됨.

- 부칙 5의 제1항 내에) 스티커발부 범죄와 관련한 통지를 받은 때
- (g) 2002년 법 부칙 5A의 1항을 적용하여 지정된 승인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하여 (2002년 법 부칙 5A의 의미에 한해) 스티커발부 범죄와 관련한 통지를 받은 때

(2) 본조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 (a)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대상자의 머리, 얼굴을 덮은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b) 그 조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직접 물품이나 의류를 제거할 수 있다.

(3) 본조에 따라 사진을 촬영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관에 한한다.

(4) 본조에 따라 촬영된 사진은

- (a) 범죄의 예방·인지, 범죄수사, 기소, 형의 집행에 쓰일 수 있고
- (b) 사용한 후에는 보관할 수 있으나 관련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4항에서

- (a) 범죄에는
- (i) (영국본토 법이나 영국 외의 국가·영토의 법으로)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 (ii) 모두 영국에서 발생하여 하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b) 조사와 기소에는 각각 영국 외에서 범죄나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것과 영국 외의 국가·영토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선고”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법원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

- (6) 본조의 사진촬영은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식을 포함하며,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
- (6A) 본조에서, “사진”은 동화상을 포함하며, 대응상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
- (7) 본조는 범인인도조약상의 피체포자의 체포권한에 적용하지 않는다.

65 제5부-부칙

본법 제5부에서

“분석”은 피부흔과 관련하여 대조 및 매칭을 포함한 의미이고

“적절한 동의”는

- (a) 17세에 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 (b) 14세에 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 부모, 후견인의 동의
- (c) 14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의미한다.

“범인인도 체포권”은

- (a) (2003년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의미로서) 동법 제2조의 증명서로서 발부된 제1부의 영장으로
 - (b) 동법 제5조 또는
 - (c)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이나
 - (d) (동법의 의미 내에서) 임시영장을 의미한다.
- 삭제

“지문”이란, 사람과 관련하여(어떤 양식과 방법에 따라 생성된)

- (a) 사람의 손가락이나
- (b) 사람의 손바닥의
피부결과 다른 모양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내밀영역 샘플”이란

- (a) 혈액, 정액, 체액, 소변, 음모의 샘플
- (b) 치아흔
- (c) (음모를 포함하여) 사람의 치아, 구강을 제외한 사람의 체강으로부터
채취한 샘플

“내밀영역 수색”이란 구강을 제외한 사람의 체강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수색이다.

“비내밀영역 샘플”이란

- (a) 음모를 제외한 모발의 샘플
- (b) 손톱이나 손톱아래에서 채취한 샘플
- (c) 채취한 샘플이 내밀영역 샘플인 부분을 제외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부터 채취한 샘플
- (d) 타액
- (e) 피부흔

“등록치과의사”는 1984년 치과의사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등록의료인”이란 (의사를 제외하고)

- (a) 등록간호사 또는
- (b) 국무장관이 발하는 규범에 의해 본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등록의료인을 말한다.

“피부흔”이란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발 기타 신체 다른 부위의 전부·
부분의 피부결과 다른 모양의 신체적 특징의 (어떤 양식과 방법에 따라

생성된) 기록을 의미한다.

“임의대조”란 사람의 지문 또는 샘플과 관련하여, 제63A조제1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지문이나 샘플, 다른 샘플로부터 추출한 정보와의 비교를 의미한다.

“충분한”과 “불충분한”은 샘플과 관련하여, (본조제2항에 따라) (질 또는 양의 측면에서)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또는 불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테러관련 조항”이란 2000년 테러방지법 제41조와 동법 부칙 7에서 부여한 유지권을 의미하고

“테러리즘”이란 동법 제1조 상의 의미이다.

삭제¹⁾

(1A)²⁾ 의료인이란 1999년 건강법(제8호)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한 개업의와 간호직을 제외한 직업이다.

(1B) 제1항에 따른 부령은 령에 의하여 제정되고 의회의 결의로 폐지되어야 한다.

(2) 제5부에서 충분하지 않은 샘플이란

- (a) 샘플의 전부·일부의 손실, 폐기, 오염
- (b) 샘플의 전부·일부의 손상
- (c) 샘플의 전부·일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관련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샘플이 정보를 제공하기에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하거나, 샘플을 분석하여 획득된 특정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도 신뢰할 수 없거

1) [원] 2002년 형사절차법(Proceeds of Crime Act)(제29호)에 따라 2003. 3. 24. 삭제함.

2) [원] 제1A항 및 제1B항을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따라 2002. 10. 1. 신설함. 제2항은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3. 1. 1. 신설함.

나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한다.

65A¹⁾ 한정범죄

(1) 본 장에서, “한정범죄”란

- (a) 다음 제2항에서 지정한 범죄
- (b) 그러한 범죄와 관련된 부수적인 범죄를 말한다.

(2) 제1항a호 상의 범죄는

- (a) 고살
- (b) 모살
- (c) 불법구금
- (d) 납치
- (e)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법 제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에서 제24조, 제47조 범죄
- (f) 1883년 폭발성 물질법 제2조 또는 제3조 범죄
- (g) 1933년 아동과 청소년법 제1조 범죄
- (h) 살인과 부합하여 행한 1967년 형법 제4조제1항 범죄
- (i) 1968년 화기법 제16조에서 제18조 상의 범죄
- (j) 1968년 절도법 제9조 또는 제10조상의 범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포함한 동법 제12A조 상의 범죄
- (k) 방화로 기소된 1971년 기물파손법 제1조 상의 범죄
- (l)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상의 범죄
- (m) 1982년 항공보안법 제1조상의 범죄
- (n) 1984년 아동유괴법 제2조상의 범죄

1) [역] 본조는 2010년 범죄 및 안보법(제17호)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나, 정의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규정을 번역해 두고자 함.

- (o) 1990년 항공 및 해양보안법 제9조상의 범죄
- (p) 2003년 성범죄법 제1조에서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에서 제41조, 제47조에서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에서 제59조, 제61조에서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 상의 범죄
- (q) 2004년 가정폭력, 범죄와 피해자법 제5조상의 범죄
- (r) 2008년 대테러법 제41조제1항에서 열거한 범죄

- (3) 국무장관은 영을 통한 제2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4) 제3항의 부령을 포함한 영은 그 안을 상하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여야 한다.
- (5) 제1항b호의 “부수적인 범죄”란 범죄와 관련하여
 - (a) 그 범죄의 실행을 돕거나, 방조, 조언, 알선하는 행위
 - (b) 그 범죄와 관련된 2007년 중요범죄법 제2부(범죄의 고무 또는 조력)상의 범죄행위(동법 제2부의 범죄실행 전의 기간동안 선동범죄를 포함하여)
 - (c) 범죄실행의 기도 또는 공모를 의미한다.

제6부 실무규범일반

66 실무규범

국무장관은 다음에 관련된 실무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 (a) 경찰관의 법정 수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 (i) 체포하지 않고 사람을 수색하는 것

- (ii) 체포하지 않고 차량을 수색하는 것
- (iii) 사람을 체포하는 것
- (b) 경찰관의 유치, 처우, 신문과 신분확인
- (c) 경찰관에 의한 장소수색과
- (d) 사람이나 장소에서 경찰관이 발견한 물건의 압수

(2) 실무규범에는 특히 제63B조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67 실무규범-보칙

- (1) 본조에서, “규범”은 실무규범 제60조, 제60A조, 제66조에 따른 실무규범을 의미한다.
- (2) 국무장관은 언제든지 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규범은 제·개정될 수 있다.
 - (a) 하나 이상의 특정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규범
 - (b) 특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규범
 - (c) 특정범죄 또는 특정범죄자군에만 적용되는 규범
- (4) 규범의 제·개정 전에, 국무장관은 다음의 기관이나 사람과 협의하여야 한다.
 - (a) 경찰협회
 - (b) 영국, 웨일즈, 북아일랜드 경찰서장 협의회
 - (c) 변호사협회
 - (d) 영국 및 웨일즈 법률협회
 - (e) 사무변호사협회

(f) 그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 (5) 규범 또는 개정된 규범은 국무장관이 명령을 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 (6) 제5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령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 (7) 규범을 발효하는 령은 그 안이 의회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 (7A) 개정된 규범을 발효하는 령은 그 초안이 의회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 (7B) 령 또는 안이 발효되면, 관련 규범 또는 개정된 규범도 발효된다.
- (7C) 령이나 령의 초안은 제4항에서 요구하는 협의에 따라 발효할 수 있다.
- (7D) 규범 또는 규범의 개정을 위한 령에는 과도기적이거나 유보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8) 삭제¹⁾
- (9) 범죄조사 또는 범죄자 기소의 의무를 부담한 경찰관을 제외한 사람은 의무의 면제에 있어서 규범의 관련조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9A)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 (a) 2002년 경찰개혁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임무 (제30호)(경찰대 고용을 위한 경찰권) 또는
 - (b) 동법 제41조에 따른 승인 (지역사회 안전 승인계획에 따른 승인)
 - 지명 또는 승인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규범의 관련조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 본항은 1996년 경찰법(제16호)에 따라 1999. 4. 1. 삭제됨.

(10)

- (a) 경찰관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 (b) 범죄조사 또는 범죄인기소의 책임이 있는 경찰관을 제외한 사람이 의무의 면제에 있어서 규범을 고려하지 않으며
- (c)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 또는 동법제41조에 따라 승인된 사람이 임명 또는 승인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규범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사 또는 민사절차의 책임이 있다.

(11) 모든 민·형사절차에서 규범은 증거로 허용되어야 하고 규범의 조항이 법원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재판소에 제출된 때에는, 그 결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11항에서 “형사절차”에는 공무절차를 포함한다.

(13) 본조에서 “공무절차”란 (민사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의 절차로 공무원범죄와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와 “민사법원”은 2006년 육군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제7부 형사절차에서의 서류증거

68~70

삭제¹⁾

1) [원] 제68조는 1988년 형사사법법(제33조)에 따라 삭제함. 제69조 및 제70조는 1999년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제23호)에 의하여 2000. 4. 14. 삭제됨.

71 마이크로필름 사본

어떤 절차에서든지 서류의 내용은 (그 서류의 현존여부와 관계없이) 그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의 확대물 또는 그것의 부분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

치안판사법원에서 범죄를 심문하는 절차와 관련된 절차는 “법원이 승인한 방식으로 지정성이 입증되는”은 제외하고 효력이 있다.

72 제7부-부칙

(1) 본법 제7부에서

“복사”는 문서와 관련하여, 문서에 기재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사한 어떤 것을, “진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절차”는 공무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를 의미한다.

(1A)¹⁾ 제1항에서 “공무절차”란 (민사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절차를 의미하고 “공무원범죄”와 “민사법원”은 2006년 육군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2) 본조 제7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방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배제할 권리를 막지 못한다.

1) [원] 본항은 2006년 국군법에 따라 2009. 3. 28. 신설됨.

제8부 형사절차상 증거-일반론

〈유죄판결과 무죄석방〉

73 유죄와 무죄의 입증

(1) 어떤 절차에서든지 영국본토 또는 다른 연방에서 행정심판을 제외한 범죄로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에는, 유죄판결문으로 입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 범죄와 관련하여 석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에서 범죄의 유죄 또는 무죄로 적시한 사람이 그 입증의 책임을 진다.

(2) 본조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의 진본확인서에는

(a) 기소되어 유죄 또는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진본확인서에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속한 권한있는 직원의 서명과, (정형적인 부분은 생략한) 기소·유무죄 판단의 내용과 결과를 담고 있어야 하며

(b) 약식재판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받은 경우, 유죄판결 또는 고소사건 기각결정의 사본에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 또는 유무죄의 의견서를 보낸 법원에 속한 권한있는 직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c)¹⁾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에서 법원이 유무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진본확인서에 유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속한 권한있는 직원의 서명과 범죄, 유무죄, 형량의 상세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유무죄 진본확인서에 서명될 서류는 본조에 따라 반증이 없는 한 진본확인서로써 채택되어야 한다.

(3) 본조제2항에서 “권한있는 직원” 이란

1) [원] 본호 및 제3항c호는 2009년 검시 및 사법법(제25호)에 따라 2010. 8. 15. 신설됨.

- (a) 영국 및 웨일즈 치안관사법원과 관련하여 법원이 지정한 공무원
- (b) 영국의 다른 법원에서는 법원사무관, 직무대리 또는 법원기록관리관
- (c) (“유럽연합 법원”)과 같은 다른 회원국의 법원에서는, 영국에서와 같은 급의 유럽연합의 권한있는 직원을 의미한다.

(4) 본조에 따른 유무죄 증명 방법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유무죄 증명방법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74 범죄실행의 증거로서의 유죄판결

- (1) 어떤 절차에서든지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서 또는 영국 밖에서 행정 법원에 의해 범죄로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그가 그 범죄를 행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범죄를 범했다는 증거로서 수용될 수 있다.
- (2) 어떤 절차에서든지 본조에 따라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법정에서 또는 영국 밖의 행정법원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3) 어떤 절차에서든지, 증거가 피고인이 범죄를 실行了 사실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만일 피고인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 (a)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법원에 의해
 - (b) 영국 바깥의 행정법원에 의해서 입증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75 제74조의 보충규정

- (1)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증거는 제74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증거능력있는 증거의 채택을 배제하지 않고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확인을 위하여 다른 허용된 증거의 채택을 배제하지 않고
- (a)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 (b)
- (i) 고발, 고소, 기소 또는 용의자를 기소했던 기소장의 내용과
- (ii) (영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 법원에서 범죄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른 문서 또는 i 목에서 특정한 문서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의 내용은 사실확인을 위한 증거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 (2) 어떤 절차에서든지 제1항에 따라 어떤 문서의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때는, 확인할 목적 또는 법원 또는 법원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 문서를 보관할 권한이 있는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 일부의 복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또는 일부의 원본을 증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 (3)
- (a) 2000년 형사법원권한(양형)법 제14조(집행유예와 면제가 따르는 기소는 본조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무시함)
- (aa) 2006년 육군법 제187조 (공무원의 기소와 관련된 유사규정)¹⁾
- (b) 1995년 형사절차(스코틀랜드)법 제247조 (스코틀랜드에서 기소후 유죄판결에 관한 유사조항을 제정하는 것)과
- (c) 1950년 집행유예법(북아일랜드) 제8조 (1973년 형사법원권한법 제13조에 부합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어떤 법과 그 조항에 상응하는 법은

1) [원] 본호는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신설됨.

위 제7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조에 따라 1975년법 제182조 또는 제183조에 해당하여 스코틀랜드 즉결법원이 발한 명령은 기소로 간주한다.

〈자 백〉

76 자백

- (1) 어떤 절차에서든지 피고인에 의한 자백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것에 한하여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조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 (2) 검사가 피고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백이 다음의 경우로 획득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a) 강압에 의하여
 - (b) 자백을 할 당시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강압의 결과로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때에는, 법원은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자백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 법정에서 입증한 경우에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 (3) 피고인에 의한 자백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허용되는 조건으로서 본조제2항에 따라 자백이 획득되지 않았음을 검사가 입증하게 할 수 있다.

(4) 본조에 따라 자백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된 사실은 다음의 증거능력 여부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 자백의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나
- (b) 자백이 특별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말하고 쓰고 그 자신을 표현하여 나
타내기에 적절하고 그것이 필요한 때

(5) 본항을 적용한 사실이 피고인에 의한 진술의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증거는
그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제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6) 본조제5항은

- (a) 본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된 자백의 결과로 밝혀진 사실과
- (b) 그 사실이 자백의 배제된 부분의 결과로서 밝혀진 때에는, 그 배제된
자백부분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실에 적용한다.

(7) 본법 제7부는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본조에서 “강압”에는 (그 양과 관계없이)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
와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9)¹⁾ 본조에 따라 사법심사로서 범죄에 대하여 치안판사법원에서 심문하는 때에
는 제1항에서 언급한 절차는

- (a) 제1항에서의 “본조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과
- (b) 제2항에서 제6항과 제8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76A²⁾ 자백은 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 [원] 본항은 1996년 형사절차 및 수사법(제25호)에 따라 1996. 7. 4. 신설됨.

2) [원] 본조는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따라 2005. 4. 4. 신설됨.

- (1) 어떤 절차에서든지 피고인의 자백은 동 절차와 관련되어 있고 법원이 본조에 따라 배제하지 않는 때에는 같은 절차에서 기소된 다른 사람(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 (2)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자백이
 - (a)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 (b) 그 순간에 강압적인 환경의 결과로서 자백이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는 상태에서 획득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 공정한 가능성에 따라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백이 획득된 것으로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피고인에 의한 자백이 공동피고인의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법원은 본조제2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획득된 자백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게 하여야 한다.
- (4) 자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조에 따라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제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 자백의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나
 - (b) 피고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고 쓰고 표현한 것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백이 필요한 경우
- (5) 본항을 적용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의 결과로서 입증된 때에는 그 밝혀진 증거가 그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 (6) 제5항은
 - (a) 본조에 따라 전부 배제된 자백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실과
 - (b) 그 사실이 자백의 배제된 부분의 결과로서 밝혀졌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배제된 자백의 결과로서 밝혀진 사실에 적용한다.

- (7) 본조에서 “강압”은 (고문의 양과 관계없이)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 처와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포함한다.

77 정신장애자에 의한 자백

- (1) 기소에 대한 배심재판에서 일반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 (a) 피고인의 사건이 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으며
(b) 법정이
(i)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ii) 독자적인 사람이 부재한 때에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득한다 면¹⁾,

법원은 그 자백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전에 배심원설시를 할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배심원들에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위 a호와 b호의 정황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역] (한국)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가족 등의 참관]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상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3항).

(2)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간이공판사건에서, 배심재판을 하게 될 경우 제1항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2A)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배심재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재판이 배심 재판이 될 때에 제1항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3) 본조에서

“독자적인 사람”에는 경찰관 또는 치안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나 경찰활동과 관련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과 관련하여 “정신장애”란 지적능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중대한 손상을 포함하는 정신 발육정지 또는 지체상태를 의미한다.

“치안활동 목적”은 1996년 경찰법 제101조제2항1)에 따라 부여된 의미와 같다.

〈기 타〉

78 위법수집증거의 배제²⁾

(1) 어떤 절차에서든지 법원은 증거를 수집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

1) [역] 1996년 경찰법 제101조제2항에 따르면 ‘치안목적’이란 관할구역에 임명된 특별경관, 경찰조직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경찰후보생도, 특별경관 또는 생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고용된 민간인의 경찰관할구역내 활동을 의미한다.

2) [역] (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을 때에 절차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 본조에 따라 어떤 것도 법원이 증거를 배제하는데 필요한 법의 지배에 편견을 갖게 할 수 없다.
- (3)¹⁾ 본조는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개정하는 치안판사법정에서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9 피고인의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

만일 범죄피의자의 공판중에

- (a) 변호인이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두명 혹은 그 이상의 증인을 소환하려 하고
- (b) 이 증인들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피고인은 법원이 재량으로 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증인 혹은 증인들보다 먼저 소환되어야 한다.

80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혼자의 권한 및 의무

- (1) 어떤 절차에서든지 피고인의 처 또는 남편은 다음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 (a) 그 기소가 본조제4항에 따른 것이고
 - (b)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

- (2) 어떤 절차에서든지 그 소송절차에서 기소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동성혼자는,

1) [원] 본항은 1996년 형사절차 및 수사법(제25호)에 따라 1996. 7. 4. 신설됨.

제4항을 준수하여 그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2A) 어떤 절차에서든지 그 소송절차에서 기소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동성혼자는, 제4항을 준수하여, 다음의 사항이 강제될 수 있다.

- (a)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특정범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기소된 때에 한하여, 절차에서 기소된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 (b) 그 절차에서 기소된 어떤 사람과 함께 범행한 특정범죄에 한하여 그 기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3) 어떤 절차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혼자와 관련하여, 위 2A항에서 규정한 특정된 범죄란 다음과 같다.

- (a) 배우자, 동성혼자 또는 범죄 당시 16세 미만인 사람을 공격 또는 상해하거나 상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
- (b) 범행당시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행한 성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 (c) 위 a호 또는 b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실행을 기도, 공모, 방조, 교사, 원조, 조언, 알선, 선동한 경우

(4) 어떤 절차에서 기소된 사람은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을 강요당하여서는 안된다.

(4A) 본조에서 언급한 대상에는 (유죄답변의 결과이거나 다른 이유에서든지간에) 그 절차에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5) 피고인과 혼인하였으나 혼인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거제출을 강요할 수 있다.

(5A)¹⁾ 피고인과 동성혼의 관계를 맺었으나 그 관계를 지속되지 않은 사람은 피고

1) [원] 본항은 2004년 동성혼인법(제33호)에 따라 2005. 12. 5. 신설됨.

인과 혼인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거제출이 강요 될 수 있다.

- (6) 행위 당시 제3항의 연령에 해당하려면, 본 규정의 목적상 법원에 출석하거나 그 당시에 그 연령이어야 한다.
- (7) 제3항b호에서 “성범죄”란 1956년 성범죄법, 1960년 아동성추행법, 1967년 성범죄법, 1977년 형법 제54조, 1978년 아동보호법 또는 2003년 성범죄법 제1부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 (8) 피고인의 혼인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제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언급하여 증거제출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9) 1898년 형사증거법 제1조d호(부부간의 대화)와 1965년 혼인관계법 제43조제1항(부부관계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80A¹⁾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파트너에 대하여 강요할 수 없는 원칙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성파트너로부터 진술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소를 통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81 형사법정에서의 전문가증거에 대한 사전통고

- (1) 형사소송규칙에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a)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상대방 또는 그 집단에 전문가 증거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 (b) 위 a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거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법정에서 개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

1) [원] 본조는 1999년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제23호)에 따라 2002. 7. 24. 신설됨.

- (2) 본조에 의한 형사소송규칙에는 적용할 전문가증거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본 규칙에서 지정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9부 보칙

82 제8부-해석

(1) 본조 제8부에서

“자백”은 권한의 유무 또는 구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불리한 진술을 포함한다.

삭제

“절차”는 군사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절차를 의미한다.

“군사절차”는 군사법원 또는 군민사법원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 (1A) 제1항에서 “군사절차”는 (민간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 군사범죄와 관련된 절차를 의미하며, “군사범죄”와 “민간법정”은 2006년 국군법에서와 같은 개념이다.

(2) 삭제

- (3) 본법의 어떤 조문도 법원이 그 재량으로 (심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를 배제할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부 경찰의 민원과 징계

〈경찰민원기관〉

83

삭제¹⁾

〈민원의 처리 등〉

84~100

삭제

〈징계조항의 개정〉

101~103

삭제

〈일반규정〉

104~105

삭제

1) [원] 제83조~제106조는 1996년 경찰법(제16호)에 따라 1996. 8. 22. 삭제됨.

제11부 경찰-일반규정

106

삭제

107 상위계급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 본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수사, 경찰구금된 사람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권한은 총경급 이상 경찰관만이 실행할 수 있으며, 경감급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만 그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본다.

(a)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사안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b) 권한있는 총경급 경찰관이 그 사건에서 부재중인 때에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때

(2) 본조 또는 다른 법에 따라 경위급 이상 경찰관에게만 권한이 부여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총경급 이상 경찰관이 그 사건에 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사는 경위급 경찰관이 갖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본다.

108 경찰청 부서장

삭제¹⁾

1) [원] 2008년 법률(폐지)법에 따라 2008. 7. 21. 삭제됨.

109

삭제¹⁾

110 스코틀랜드에서 특수경찰의 역할

삭제²⁾

111 스코틀랜드에서 경찰대와 경찰후보생에 관한 규정

(1) 1967년 (스코틀랜드)경찰법 제26조에서(경찰대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

(a) 제1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신설한다.

“(1A) 본조에 따라 국무장관, 경찰위원회 또는 경찰서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b) 그리고 동조의 끝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10) 본조에 따른 어떤 입법기구도 의회의 폐지결의안에 따라야 한다”.

(2) 1967년 동법 제27조(경찰후보생에 대한 규정) 제3항의 “(9)” 는 “(1A), (9) 그리고 (10)” 으로 바꾼다.

112

삭제³⁾

1) [원] 1996년 경찰법(제16호)에 따라 1996. 8. 22. 삭제됨.

2) [원] 2008년 법률(폐지)법에 따라 2008. 7. 21. 삭제됨.

3) [원] 1996년 경찰법(제16호)에 따라 1996. 8. 22. 삭제됨.

제12부 잡칙 및 보칙

113 군사법 적용

(1) 국무장관은

- (a) 군사범죄의 수사
- (b) 2006년 국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체포된 사람
- (c) 군사범죄로 위 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
- (d) 영창구금되어 있는 사람
- (e) 군사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관련하여

본법 제5부의 규정에 따르거나(또는 제5부와 관련되는 한 본법의 제11부에 따라)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정 범위 내에서 규정 제·개정에 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제67조제9항은 군사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국무장관은 다음과 관련되는 경찰관을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실무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 (a) 2006년 국군법 제3부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고 실행하는 경찰관
- (b) 군사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

(3A)¹⁾ 제4항부터 제10항에서 “규범”이란 제3항의 실무규범을 의미한다.

(4) 제3항의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규범에는 제3항a호에서 언급한 권한, 제3항b호에서 언급한 조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 [원] 본항은 2003년 형사사법법(제44호)에 따라 2004. 1. 20. 신설됨.

- (a) 조사의 녹음
- (b) 사람과 장소에 대한 수색
- (c) 수색에서 발견된 물건의 압수

(5) 국무장관은 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6) 규범은 다음의 목적으로 제·개정될 수 있다.

- (a) 하나 이상의 특정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 (b) 특정 기간에만 시행하기 위하여
- (c) 특정범죄 또는 일부 범죄자집단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7) 국무장관은 규범의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규범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본조를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절차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

(9) 제8항은 2006년 국군법 제1부(제42조[범죄행위] 제외)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절차에 적용한다.

(10) 모든 민·형사절차에서, 규범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규범의 조항이 절차를 수행 중인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려대상으로 될 수 있다.

(11) 삭제¹⁾

(12) 본법 제7부 및 제8부는 국무장관이 령으로 지정한 개정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A)²⁾ 본조에서

1) [원]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삭제됨.

2) [원]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신설됨.

“군사범죄”는 2006년 국군법 제50조에 따른다.

“형사절차”는 군사절차를 포함한다.

“군사절차”는 군사범죄와 관련하여 (민사법원을 제외한) 법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며,

“민사법원”은 2006년 국군법 제374조상의 의미와 같다.

동법 제376조제1항 및 제2항(간이공판과 약식재판에서 “기소된”의 의미)은 2006년 국군법에서 적용한 목적과 동일하게 제1항e호에 목적에 맞게 적용된다.

(13) 본조에 따른 명령은 령으로 제정되며 의회의 결의안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

(14) 2006년 국군법 제373조제5항 및 제6항(부칙 규정)은 동법에 따른 령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법에 따른 령에도 적용한다.

114 소비세 및 관세에 관한 법의 적용

(1) 1979년 관세 및 소비세관리법 제1조제1항에서 정의한 것처럼 관세 및 소비세 법에서는 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체포된”, “체포중인”, “체포” 및 “체포하기 위하여”는 각각 “유치된”, “유치중인”, “유치”, “유치하기 위하여”로 바꾼다.

(2) 재무부는 령으로 다음의 내용을 지시할 수 있다.

(a) 경찰관이 수행하는 범죄수사나 경찰에 의하여 유치된 사람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령으로 특정한 개정조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행하는 수사나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유치된 사람에도 적용한다.

(b)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i) 본법은 제14조 다음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14A 수입 및 관세

무역, 사업, 전문직 기타 직업으로 탈세·납세의 목적으로 물건을 획득하거나 창출한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 관세청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위 제9조제2항에서 언급한 법률에 따라 그 물건이나 특수처리물건을 제외시킬 수 없다.

14B 수입 및 관세: 문서제출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

- (1) 세관공무원은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제3항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문서를 배달하거나 문서에 접근하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공무원이 필요한 물질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특수처리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1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규정이란

- (a) 1970년 세금관리법 제20BA조와 부칙 1AA(중대한 세금사기)
- (b) 1994년 부가가치세법(VAT) 부칙 11의 제11항
- (c) 1994년 재정법 부칙 7의 제4A항(보험료세)
- (d) 1996년 재정법 부칙 5의 제7항(매립세)
- (e) 2000년 재정법 부칙 6의 제131항(기후변화 부담금)
- (f) 2001년 재정법 부칙 8의 제8항(총액부담금)
- (g) 2003년 재정법 부칙 13의 제6부(인지세 지세)를 포함한다.”
 - (ii) 위 제55조는 동조 제1항a호에서 언급된 것과 관련되는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 (d)¹⁾ 세관공무원이 (본항의 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법 제8조, 부칙 1의 12항에 따른 영장에 근거하여 구역을 수색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그 장소에서 사람을 수색할 권한이 있다.

1) [원] 동조제2항d호, e호 및 제2A항은 2007년 재정법에 따라 2007. 11. 8. 신설되었으며, 제4항은 2005년 소비세 및 관세위원회법(제11호)에 따라 2005. 4. 18. 삭제됨.

- (i) 령에서 특정한 것과 같은 사건 및 정황에 해당하며
- (ii) 령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e) 본법에서 정한 권한 및 기능(본항에 따른 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도 같음)은 수입 및 관세위원에서 부여한 (일반적인 혹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A) 제2항3호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권한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증명서는 그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령은

- (a) 일반 혹은 특정사안이나 정황에서 적용할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 (b) 각각의 사안이나 정황에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 (c) 규정을 개정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 (d) 1979년 관세 및 소비세법 제164조에 따른 권한을 제한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4) 삭제

(5) 본조의 령은 입법기구가 제정하여야 하며 의회의 폐지결의안에 따라야 한다.

114A¹⁾ 국무장관에 대한 본법의 적용 등

(1) 국무장관은 령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을 지시할 수 있다.

- (a) 특수처리물질과 관련되는 한 동법 부칙 1의 규정과

1) [원] 본조는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제16호)에 따라 2001. 7. 11. 신설됨.

- (b) a항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본법의 다른 규정은
령에 따라 특정할 수 있게 수정하여 경찰관이 수행하는 범죄수사 목적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항에 해당하는 수사 목적에 적용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본항의 수사에 해당한다.

- (a) 경제혁신기술부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 (b) 범죄수사의 의무를 면한 공무원 기타 다른 사람이 수행한 경우
- (c) 그 수사가 기소가능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소가능범죄의 실행을 포
함한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어떤 것을 수사하는 경우

(3) 본조의 규정을 본조에 따른 령으로 개정하게 할 목적의 수사에는 본법이나 령
으로 시행되기 전에 범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완성된 범죄의 수사를 포함한다.

(4) 본조에 따른 령은 입법기구가 제정하여야 하고, 국회의 폐지결의안에 따라야
한다.

115 비용

타법에 기인한 증가분을 포함하여 본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의회의 예산범위내에서 부담한다.

116 “중대한 체포가능 범죄”의 의미

삭제¹⁾

1) [원]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1. 1. 삭제

117 적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관의 권한

본조의 규정이

- (a) 경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 (b) 경찰관 이외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권한을 행사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적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18 일반해석

(1) 본조에서

삭제

“영국교통경찰대”란 1949년 영국교통위원회법(제29호) 제53조에 따라 임명된 경관을 의미한다.

“지정경찰서”란 제35조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란 상세정보가 기록된 것을 뜻한다.

삭제

“법적 특권에 속하는 물건”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모, 후견인”이란

- (a) 지역당국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지역당국을 (이하 삭제)
- (b) (삭제)를 의미한다.

“구역”이란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등록범죄”는 제27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 범죄를 의미한다.

“선박”에는 배, 보트, 래프트 기타 물에 뜨는데 적합한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삭제

(2) 본조 제2A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 (a) 범죄로 체포되거나 2000년 테러법 제41조에 따라 체포된 직후에 경찰서로 인계된 경우
- (b)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였거나 경관과 동행한 후 경찰서에서 체포된 경우
본법에 따라 그 목적으로 경찰서에 유치되지 않은 기소후 범정에 출석한 사람을 제외하고 경찰서 기타 장소에 유치된다.

(2A)¹⁾ 2002년 경찰개혁법 부칙 4의 22, 34(1), 35(3)에 따라 적법하게 구금된 사람은 경찰유치와 동일하게 처우되어야 한다.

119 개정 및 폐지

- (1) 본법 부칙 6에서 언급된 법령은 거기에 특정된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 (2) 본법 부칙 7에서 언급된 (이미 폐지되었거나 불필요한 법령을 포함한) 법령은 동부칙의 3번째 범주에서 특정된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
- (3) 본법 부칙 7의 2부와 4부에서의 폐지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만 효력을 갖는다.

1) [원] 본항은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따라 2002. 12. 2. 신설됨.

120 적용범위

(1) 본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본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된다.

(2)

삭제

삭제

제111조

제112조제1항과

제119조제2항은, 부칙 7의 6부에 의해 폐지된 1871년 행상인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한 스코틀랜드에만 적용된다.

(3) 다음은 북아일랜드에만 적용한다.

제6조제4항

제112조제2항

(4) 다음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적용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1871년 행상인법 제19조와 관련하여 제119조제2항

(5) 다음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적용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2A항

삭제

제114조제1항

(6) 본조제1항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제113조제1항 내지 제7항과 제12항 내지 제14항

(b) 군사절차와 관련되는 한 관련규정의 적용범위

(8) 본조에서 “관련규정” 이란

(a) 제67조제11항 내지 제13항

(c) 부칙 3의 10항을 제외한 본법 제7부와 제8부

(d) 제113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의미한다.

(8A) 본조에서 “군사절차”는 군사범죄와 관련하여 (민사법원을 제외한)법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서 “군사범죄”와 “민사법정”은 2006년 국군법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8B) 2006년 국군법 제384조(채널제도, 맨섬과 영국의 해외영토)는 동법과 관련한 적용과 마찬가지로 제6항a호와 b호에 언급된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9A) 부칙 6의 제2부에 의하여 개정된 조항과 관련되는 한 제119조제1항은 동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10) 제119조제2항은

- (a) 1955년 육군법, 1955년 공군법, 1981년 군대법, 1983년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규정과
- (b) 1871년 행상인법 제18조를 제외한 부칙 7의 6부에 언급된 규정에 해당하는 한,
본조는 위 조항을 적용하는 모든 곳에 적용한다.

- (11) 제115조, 제118조에서, “서류”의 정의, 본조, 제121조와 제122조가 본법의 다른 규정들과 관련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한, 본조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121 개시시기

- (1) 위 제120조를 제외하고 본법에서 본조와 제122조는 명령에 따라 국무장관이 령을 발한 그 날, 다른 규정과 다른 목적으로 지정된 그 다른 날에 발효된다.
- (2) 본조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제60조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3) 제60조가 본조에 따라 위 제2항에 의하여 령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효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때에는, 국무장관은 그 지역에서의 조사와 관련된 령을 제정할 의무를 가진다.
- (4) 본조에 따른 명령은 국무장관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편의에 따라 제정하는 임시규정이다.

122 소제목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부 칙

부칙 1 특별절차

〈법원이 발한 명령〉

1

경관이 작성한 신청서상의 하나 이상의 접근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제4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제1 접근 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다.

(a)

- (i) 기소가능범죄가 행하여졌고
- (ii) 특수처리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수처리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며 (신청서에 특정할만한 합당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모든 구역을 포함하여) 신청서에 지정된 구역, 신청서에 지정된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구역에서 배제될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 (iii) 그 물건이 신청서에서 명시한 수사에 (그 자체 또는 다른 물건과 함께이든) 상당한 가치가 있는
- (iv) 그 물건이 관련증거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b) 그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i)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ii) 실패가 자명하여 시도해 본 적이 없으며

(c)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 그 물건을 획득하게 되면 수사에 이익이 축적될 수 있고

(ii) 그 소유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당해 물건은 제출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 접근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다.

(a) 당해 물건이 (신청서에 특정할만한 합당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모든 구역을 포함하여) 신청서에 특정된 구역, 신청서에 특정된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구역에서 배제될 물건이나 특수처리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나

(b) 본 부칙을 제외한 규정 하에서 경관에게 발부된 영장으로 권한을 부여 받아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구역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c) 그 영장의 발부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4

본 항에서의 명령이란 신청서와 관계있는 물건의 소유자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a) 경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하여 취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b) 경관에게 접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 명령은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명령에 지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5

물건이 어떤 전자적 형식으로 저장된 정보로 구성된 경우

- (a) 제4항a호에 따른 명령은 그 물건을 취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보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거나 쉽게 보거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라는 것이며
- (b) 제4항b호의 명령은 경관이 보거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 물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

본조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여 위 제4(a)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은 경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질과 같은 것으로 본다.

〈명령을 위한 신청공문〉

7

제4조에 따른 명령을 위한 신청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명령을 위한 신청공문은 해당자에게 배달하거나, 주소지에 남겨두거나, 등기우편, 등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9

공문은

- (a) 법인, 법인의 비서, 사원이나 이와 유사한 직원
- (b) 동업자인 경우에는 동업자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0

본 부칙과 1978년 통역법 제7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부칙의 신청서에는 그 사람의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비서, 사원이나 그와 유사한 직원이 등록된 사무소나 본사의 주소, 회사의 파트너인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 기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지된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제4항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한 신청공문은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공지대상자는

- (a)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
 - (b) 경관의 서면허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i) 신청이 기각, 취소되거나
 - (ii) 제4항에 따라 신청서상의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 신청서와 관련한 물건을 은닉, 폐기, 변경,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

12

경관이 작성한 청구서에서 판사가

- (a)
 - (i) 접근조건을 이행하고
 - (ii) 청구서에 특정된 장소와 관련하여 아래의 제14항에서 정한 추가 조건 또한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 (b)
 - (i) 두번째 접근조건을 이행하고
 - (ii) 해당 물건과 관련된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판사는 경관에게 그 장소나 (경우에 따라서) 제2(a)(ii), 제3(a)에서 언급한 그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출입·수색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의 장소에는 신청서에 특정된 장소를 포함한다 (“포괄영장”).

12A¹⁾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사는 포괄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a) 문제가 되는 물건을 찾기 위한 경우와 같은 정도로 신청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용의자가 점유 또는 관리하는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 (b) 수색할 필요가 있는 점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1) [원] 본항은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따라 2006. 1. 1. 신설됨.

13A

경관은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수색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압류하고 보관할 수 있다.

14

제12(a)(ii)에 따른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그 장소에 들어가게 할 권한이 있는 어떤 사람과 사실상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b) 그 장소에 들어가게 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였으나, 그 물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연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c) 그 물건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경우
 - (i) 제11조제2항b호에서 언급한 제한 또는 의무에 속하고
 - (ii)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범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 (d) 제4항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한 신청사실을 알리는 것이 조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

15

- (1) 위 제4항에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때에는, 판사는 형사법원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 형사법원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은, 모욕을 하기 위하여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연관성이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비 용〉

16

이 부칙에 따른 청구서와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들의 비용은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해 석〉

17¹⁾

이 부칙에서 “판사”란 순회판사 또는 지역판사(치안판사법원)를 의미한다.

부칙 1A²⁾ 1981년 야생 및 지역공원법

9

1981년 야생 및 지역공원법(제69호)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야생조류의 사냥, 소유, 판매 등)의 범죄(동법 부칙의 조류 또는 조류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

1) [원] 본항은 2003년 법원법(제39호)에 따라 2005. 4. 1. 신설됨.

2) [원] 부칙 1A는 2002년 경찰개혁법(제30호)에 따라 2002. 10. 1. 신설되어, 2005년 중대 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의하여 2006. 1. 1. 삭제됨.

부칙 2 제26조에 따른 체포권한의 근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52년 제52호	1952년 감옥법 제49조
1952년 제67호	1952년 체류공무원법 제13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69년 제54호	1969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32조
1971년 제77호	1971년 이민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부칙 2의 17항, 24항, 33항, 부칙 3의 7항
삭제	삭제
1976년 제63호	1976년 보석법 제7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983년 제20호	1983년 정신건강법 제18조, 제35조제10항, 제36조제8항, 제38조제7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8조
삭제	삭제
1984년 제47호	1984년 수형자송환법 제5조제5항

부칙 2A¹⁾ 지문채취와 샘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할 권한

제1부 지문채취

〈체포된 사람과 석방된 사람〉

1

- (1) 경관은 제61조제5A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권한은 제61조제5A항b호(이전에 채취한 지문이 충분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경찰관이 제61조제3A항a호 또는 b호를 적용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지정경찰관”이란 피체포자의 범죄를 조사한 경찰관을 의미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2

- (1) 경관은 제61조제5B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권한은
 - (a) 제61조제5B항a호(이전에 채취하지 않은 지문)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죄

1) [역] 부칙 2A는 2010년 범죄 및 안보법에 따라 신설될 예정임.

- 판결을 받거나 등록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날 또는
- (b) 제61조제5B항b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존에 채취한 지문이 충분치 못한 경우 등), 해당경찰관이 제61조제3A항a호 또는 b호가 적용한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위 제2항b호에서 “지정경찰관” 이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등록될 것으로 고지받은 사람의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 (1) 경관은 제61조제6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61조6ZA항a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에 채취되지 않은 지문), 제1항의 권한은
 - (a) 그 사람이 유죄판결, 경고, 주의, 견책을 받은 날 또는
 - (b) 그 이후라면, 본 부칙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61조6ZA항b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기존에 채취한 지문이 충분치 못한 경우 등), 제1항의 권한은
 - (a) 해당경찰관이 제61조제3A항a호 또는 b호를 적용한다는 것을 안 날 또는
 - (b) 그 이후라면, 본 부칙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4) 제3항제a호에서의 “해당경찰관” 은 문제가 된 범죄를 조사한 경찰서의 경찰관을 의미한다.
- (5) 제2항과 제3항은 그 범죄가 한정범죄(그 범죄가 유죄판결, 경고 또는 주의, 견책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제명령에 속한 사람〉

4

경관은 제61조제6BA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외에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 등〉

5

경관은 제61조제6D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중 출석〉

6

- (1) 제61조에 따라 범죄와 관련되어 2건의 지문을 채취하는 때에는, 대상자는 본 부칙에 따라 경위급 이상 경찰관의 승인없이 두번째 건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지문채취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때에는

(a) 승인한 사실과

(b) 승인을 한 이유를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부 내밀영역 샘플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7

경관은 제62조제1A항에 따라 범죄수사과정에서, 같은 분석수단에 적합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비내밀영역 샘플을 대상자로부터 채취하였으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에서 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람〉

8

경관은 제62조제2A항에 따라 범죄수사과정에서, 제63조제3E항을 적용하여 같은 분석수단에 적합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비내밀영역 샘플을 대상자로부터 채취하였으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부 비내밀영역 샘플

〈체포 및 석방된 사람〉

9

- (1) 경관은 제63조제3A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63조제3A항b호(이전 사건에서 채취한 샘플이 충분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권한은 해당경찰관이 제63조제3A항b호 i 목 또는 ii 목에 지정된 물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2항에서, “해당경찰관”이란 체포의 이유가 된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기소된 사람 등〉

10

- (1) 경관은 제63조제3A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63조제3A항a호에 해당(이전에 채취한 적이 없는 샘플)하는 때에는 제1항의 권한은 기소되었거나 등록예정으로 고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63조제3A항b호에 해당(이전에 샘플을 채취하였으나 적합하지 않는 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권한은 해당경찰관이 제63조제3A항b호 i 목 또는 ii 목에서 지정된 물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4) 위 제3항에서 “지정경찰관”이란 기소된 또는 입건가능범죄 등록이 고지된 범죄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람〉

11

- (1) 경관은 제63조제3B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63조3BA항a호의 조건이 충족되면(이전에 샘플을 채취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권한은
 - (a) 그 사람이 유죄판결, 주의 또는 경고, 견책을 받은 날 또는
 - (b) 만약 그 이후라면, 본 부칙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63조제3BA항b호의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이전 사건으로 채취한 샘플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권한은
 - (a) 해당경찰관이 제63조제3BA항b호 i 목 또는 ii 목에 따라 지정물건을 고지한 날
 - (b) 만약 그 이후라면, 본 부칙이 효력을 발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 (4) 제3항제a호에서 “해당경찰관”이란 해당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서의 경찰관을 말한다.
- (5) 제2항과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해당범죄가 한정범죄인 때(그러한 범죄가 유죄판결, 경고, 주의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 (b) 1995년 4월 10일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고 1997년 (개정)형사증거법 제1

조를 적용한 때

〈통제명령에 따르는 사람〉

12

경관은 제63조제3D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외에서 범죄로 기소 등에 처해진 사람〉

13

경관은 제63조제3E항에 따라 비내밀영역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다중행사〉

14

- (1) 제63조에 따라,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비내밀영역 샘플을 두번의 기회에 채취한 경우에는, 본 부칙에 따라 경위급 이상 경찰관의 승인없이 후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다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없

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으면

(a) 승인을 한 사실과

(b) 승인을 한 이유를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부 일반 및 보칙

〈지문이나 샘플을 채취할 권한의 필요조건〉

15

본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지문이나 샘플을 채취할 목적으로 본 부칙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은 그 규정에 따라(특히 지문 또는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을 얻어서) 지문 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출석일자와 시간〉

16

- (1) 본 부칙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b) 지정된 날짜의 특정 시간이나 지정된 날짜의 지정된 시간 사이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목적으로 시간이나 날짜를 지정하는 때에는, 경관은 대상자가 경찰서에 다른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한꺼번에 지문이나 샘플을 적정하게 채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본 부칙에 따른 조건은 다음에 해당하면 7일 미만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a)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지문이나 샘플을 채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때

(b) 경위급 이상 경찰관이 기간단축을 승인한 때

(4) 위의 (3)(b)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a) 승인사실 및

(b) 승인이유를

승인후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경관이 본 부칙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고 고지받은 사람이 이에 동의한 경우, 그 사람이 출석하여야 하는 날짜 또는 장소를 특정하거나 어떤 기간을 지정함으로써 날짜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변경은 경관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집행〉

17

경관은 이 부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부칙 3

삭제¹⁾

1) [원] 1999년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제23호)에 의하여 2000. 4. 14. 삭제

부칙 4

삭제¹⁾

부칙 5

삭제²⁾

부칙 6³⁾ 사소하고 간접적인 개정

제1부 잉글랜드와 웨일즈

〈1831년 수렵법 (제32호)〉

1

1831년 수렵법 제31조 다음에 아래 조문을 신설한다.

“제31A조 무단침입자에 대한 경관의 권한

경관은 타인의 소유지에서 발견된 사람의 침입을 멈추게 하고 세레명, 이름 및 주소를 말하도록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원] 1996년 경찰법(제16호)에 따라 1999. 4. 1. 삭제

2) [원]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1. 1. 삭제

3) [원] 부칙 6은 2008년 런던게이트웨이포트항 특구령에 의하여 2008. 5. 16. 통합됨.

〈1839년 수도경찰법(제47호)〉

2

1839년 수도경찰법 제39조(수도경찰국 내의 전람회)의 “놀이” 뒷 부분에 “범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를 삽입한다.

〈1840년 철도규제법(제97호)〉

3

1840년 철도규제법 제16조(철도회사의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철도에 불법침입하는 사람)에서 “사법”쪽의 세번째의 “그리고”는 “, 치안판사법원에 의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으로 바꾼다.

〈1843년 런던마차법(제86호)〉

4

1843년 런던마차법 제27조(소유주의 동의없이 마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서 “경관” 다음은 “만일 필요하다면, 마차와 관리하는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불법하게 운전자로서 행위하고 소유자가 운전할 때 까지 같은 장소에 보관하여 두기 위하여”로 대체한다.

〈1863년 마을정원보호법 (제13호)〉

5

1863년 마을정원보호법 제5조(정원훼손에 대한 처벌)에서 처음부터 “구역”까지를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침입하거나, 레일이나 담장을 넘어가거나, 화초를 절취 또는 손괴하거나, 소란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로서 인정되고”로 바꾼다.

〈1872년 공원규제법 (제15호)〉

6

1872년 공원규제법 제5조(이름이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체포)는 다음 조문으로 대체한다.

“제5조

- (a) 공원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공원에서 앞에서 언급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모습이 공원경찰의 시야에 들어오고
- (b) 공원경찰 또는 기타 경찰에게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였으나, 가명 또는 거주소일 때에는,

1982년 형사사법법 제75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1단계를 넘지 않는 벌금으로 즉결처분될 수 있다”.

〈1953년 개(가축보호)법 1953(제28호)〉

7

1953년 개(가축보호)법 제2조 이하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2A조 치안법원판사의 출입과 수색을 승인할 권한

경관이 작성한 신청서에 따라 치안법원판사가

(a) 이 법에 따른 범죄를 범하였고

(b) 범죄 대상 개가 신청서에 특정된 장소에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관이 그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955년 육군법(제18호), 1955년 공군법(제19호)〉

8

삭제¹⁾

〈1956년 성범죄법 (제69호)〉

9

삭제²⁾

〈1960년 (개정)수렵법(36호)〉

1) [원]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삭제(예외적임. 나머지 규정은 2009. 10. 31. 적용)
2) [원] 2003년 성범죄법(제42호)에 따라 2004. 5. 1. 삭제

10

1960년 (개정)수렵법 제2조제1항(경찰의 대지에 들어갈 권리)의 “앞의 조문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목적으로”는

“ (a) 1831년 수렵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의 행사와 동법제31A조가 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의 행사 또는

(b)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25조에 따라 체포할 목적으로”로 바꾼다.

11

동법 제4조제1항(집행권)의 “31”에서 맨 처음 나오는 “아래”는 “,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25조에 따른 1828년 야간불법침입법 제1조에서 제9조의 범죄 또는 제30”으로 바꾼다.

〈1963년 배팅, 게임 및 복권법 (제2호)〉

12

삭제¹⁾

〈1963년 사슴보호법(제36호)〉

13

1) [원] 2005년 도박법(제19호)에 따라 2007. 9. 1. 삭제

삭제¹⁾

〈1964년 경찰법(제48호)〉

14

삭제²⁾

15

삭제

16

삭제³⁾

〈1967년 형법(제58호)〉

17

삭제⁴⁾

〈1968년 극장법(제54호)〉

-
- 1) [원] 1991년 사슴보호법(제54호)에 의하여 1991. 10. 25. 삭제
 - 2) [원] 14-15항: 1994년 경찰 및 치안법원법(제29호)에 따라 삭제
 - 3) [원] 1989년 경찰관(중앙공무원)법(제11호)에 따라 삭제
 - 4) [원]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제15호)에 따라 2006. 1. 1. 삭제

18

1968년 극장법 제15조제1항(출입 및 조사권)에서 “14일”은 “한달”로 바꾼다.

〈1969년 아동 및 청소년법(제54호)〉

19

1969년 아동 및 청소년법¹⁾

(a) 삭제

(b) 제29조는 다음 조문으로 대체한다.

“제29A조 영장집행으로 체포된 아동 및 청소년은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유치경찰서에서 (보석 또는 무보석으로) 기소심리절차에 출석할 것을 보증한 점을 고려하여 유치된 경찰서에서 출석서약할 수 있으며, 유치보호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심리에 부모나 보호자를 출석하는 조건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서약할 수 있다”.

〈1971년 이민법 (제77호)〉

20

1971년 이민법 제25조제3항의 “경관 또는”은 “경관”으로 바꾼다.

〈1972년 형사사법법 (제71호)〉

1) [원] 1989년 아동법(제41호)에 따라 1991. 10. 14. 삭제

21

1972년 형사사법법 제34조제1항 (경관이 음주상태인 범죄인을 치료센터로 보낼 수 있는 권한)에서 “제”로 시작하는 부분은 “다음 범죄로 체포하는 경우

(a) 1872년 면허법 제12조 또는

(b) 1967년 형사사법법 제91조제1항”

으로 바꾼다.

〈삭 제¹⁾〉

22

삭제²⁾

〈1980년 사슴보호법 (제49호)〉

23

삭제³⁾

〈1981년 동물건강법 (제22호)〉

1) [원] 1989년 아동법(제41호)에 따라 1991. 10. 14. 제목삭제

2) [원] 1989년 아동법에 따라 1991. 10. 14. 삭제

3) [원] 1991년 사슴보호법(제54호)에 따라 1991. 10. 25. 삭제

24

1981년 동물건강법 제60조제5항(집행권)의 “경관 또는 경찰관”은 “경관을 제외한 경찰관”으로 바꾼다.

〈1981년 야생 및 전원법 (제69호)〉

25

1981년 야생 및 전원법 제19조제2항(집행권)의 “제1항”의 다음에 “또는 그러한 범죄로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25조에 따라 체포한 사람”을 삽입한다.

〈1983년 정신건강법 (제20호)〉

26

1983년 정신건강법 제135조제4항의 두 군데에 나온 “지시를 받은 경관”은 “경관”으로 대체한다.

27

삭제¹⁾

제2부 기타 개정

〈1955년 육군법 (제18호)〉

28

1) [원] 1989년 테러방지법(임시규정)(제4호)에 따라 삭제

삭제¹⁾

〈1955년 공군법 (제19호)〉

29

삭제²⁾

〈1967년 경찰(스코틀랜드)법(제77호)〉

30

1967년 경찰(스코틀랜드)법 제6조제2항(차장급 이하 경관)의 “차장이나 부서장급 경관”은 “부서장 또는 차장”으로 수정한다.

31

동법 제7조제1항의 “서장” 다음에 “부서장”을 삽입한다.

32

동법 제26조제7항(징계권자)의 “부서장” 바로 앞에 “어떤”을 삽입한다.

33

1) [원]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삭제
2) [원] 2006년 국군법(제52호)에 따라 2009. 3. 28. 삭제

동법 제31조제2항(경찰서장 등의 강제퇴직)의 “경찰서 부서장 또는 차장”은 “부서장 또는 차장”으로 바꾼다.

〈1968년 군사법원 (항소)법(제20호)〉

34

삭제¹⁾

〈1975년 하원의원자격제한법²⁾ (제24호)〉

〈1975년 북아일랜드 의회의원 자격제한법(제25호)〉

35

1975년 하원의원자격제한법 부칙 1의 제2부와 1975년 북아일랜드의회의원자격제한법 부칙 1의 제2부(이 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모든 사람)에는 알파벳 순에 따라 적절한 곳에 다음의 내용을 삽입한다.

“경찰 민원 센터”

〈1976년 국군법 (제52호)〉

36

-
- 1) [원] 2001년 국군법(제19호)에 의하여 2001. 5. 11. 삭제
 - 2) [역] 1975년 하원의원자격제한법은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이 하원의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57년 법의 전면개정판이다. 법관, 직업군인, 공무원, 임명직 장관 등은 이 법에 따라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삭제1)

〈1979년 관세 및 간접세 관리법 (제2호)〉

37

1979년 관세 및 간접세법 제138조제4항은 다음 내용으로 대체한다.

“(4)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체포된 때에는

(a) 본조에 의하거나

(b)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법 제24조에 의하여 관세 및 간접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청구서에

그를 체포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세 및 간접세무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8

동법 제161조

(a) 제3항에서, 맨 마지막 부분의 “그 경찰관”을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장에 성명이 기재된 경찰관 및 경찰관과 동행하여 건물 또는 장소에 출입·수색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b)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라 영장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은 “이를 승인한 다른 사람”으로 수정한다.

1) [원] 2001년 국군법(제19호)에 따라 2001. 5. 11. 삭제

〈1981년 내기·도박세법(제63호)〉

39

내기·도박세법 규정 중에서

- (a) 삭제¹⁾
- (b) 삭제²⁾
- (c) 삭제
- (d) 삭제

“14일”을 “한달”로 수정한다.

〈1983년 자동차세법 (제53호)〉

40

삭제³⁾

〈1983년 부가가치세법 (제55호)〉

41

삭제⁴⁾

1) [원] 1997년 재정법(제16호)에 따라 1997. 3. 19. 삭제
2) [원] b~d호는 2007년 재정법(제11호)에 따라 2007. 7. 19. 삭제
3) [원] 2004년 법률(폐지)법(제14호)에 따라 2004. 7. 22. 삭제
4) [원] 1994년 부가가치세법(제23호)에 따라 1994. 9. 1. 삭제

부칙 7 법률의 폐지

제1부 제1부에서 제5부의 내용에 따른 폐지법률

장	소제목	폐지의 범위
조지4세 5년 제83호	1824년 노숙자법	제8조
윌리엄4세 1,2년 제32호	1831년 수렵법	제31조의 “또는 모든 경관”
빅토리아 2,3년 제47호	1839년 수도경찰법	제34조
		제38조에서 여섯 번째 나오는 “그것”에서 “그리고”까지
		제39조 “구금한”
		제47조 “구금한”과 “그리고 발견한 모든 사람”
		제54조 끝부분의 “그리고”
		제62조 두 번째로 나오는 “그리고”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제63조 내지 제67조	
빅토리아 3,4년 제50호	1840년 운하(범죄)법	법 전체
빅토리아 5,6년 제55호	1842년 철도규제법	제17조 “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별경관”
빅토리아 8,9년 제20호	1845년 철도관련조항 통합법	제104조의 “그리고 모든 경관, 교도관 및 경찰관”
빅토리아 10,11년 제89호	1847년 마을경찰조항법	제15조의 “경관에 의하여 영장없이 구금될 수 있거나”와 동조 끝부분의 “제공된”부터 제28조, 두 번째로 나오는 “범죄” 부분의 첫 번째 “그리고”
빅토리아 14,15년 제19호	1851년 범죄예방법	제11조
빅토리아 23,24년 제32호	1860년 교회법원관할법	제3조 “경관 또는”
빅토리아 24,25년 제100호	1861년 대인범죄법	제65조에서 “낮시간 동안”
빅토리아 34,35년	1871년 행상인법	제18조 내지 제19조

장	소제목	페이지의 범위
제96호		
빅토리아35,36년 제93호	1872년 전당포업법	제36조 “일과시간 이내에”
빅토리아38,39년 제17호	1875년 폭발물법	제78조의 “경관, 또는”
빅토리아52,53년 제18호	1889년 외설물광고법	제6조
빅토리아52,53년 제57호	1889년 철도규제법	제5조제2항의 “또는 어떤 경관”
에드워드7세 8년 제66호	1908년 공청회법	제1조제3항의 끝부분의 여섯 번째 “그리고”부터
조지5세 1,2년 제28호	1911년 공공기밀법	제9조제1항 “그 속에 명명된”
조지5세 15,16년 제71호	1925년 공공건강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조지5세 23,24년 제12호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에서 제1항의 “그 속에 명명된”과 제4항의 “~라 불리는 그리고”
조지6세11,12년 제58호	1948년 형사사법법	제68조
엘리자베스2세 1,2년 제14호	1953년 범죄예방법	제1조제3항
엘리자베스2세 3,4년 제28호	1955년 아동 및 청소년(유해간행물)법	제3조제1항 “그 속에 명명된”
엘리자베스2세 4,5년 제69호	1956년 성범죄법	제40조
		제43조제1항에서, “명명된”
엘리자베스2세 5,6년 제53호	1957년 해군복무규율법	제106조제1항에서 “그리고”가 처음 나오는 “~할 수 있는”부터
엘리자베스2세 7,8년 제66호	1959년 외설물간행법	제3조제1항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엘리자베스2세 8,9년 제36호	1960년 게임(개정)법	제1조
1963년 제2호	1963년 도박·게임·복표법	제51조제1항 “영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와 “체포 그리고”
1963년 제36호	1963년 사슴보호법	제5조제1항c호

장	소제목	폐지의 범위
1964년 제26호	1964년 면허법	제187조제5항
1967년 제58호	1967년 형법	제2조
1968년 제27호	1968년 화기법	제46조제1항에서 “거기에 명명된” 제50조
1968년 제52호	1968년 이동주택공간법	제11조제5항
1968년 제60호	1968년 절도법	제1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5조제2항
1968년 제65호	1968년 도박법	제43조 제4항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제5항b호에서 “체포 그리고”
1970년 제30호	1970년 바다표범보존법	제4조제1항a호
1971년 제38호	1971년 약물오남용법	제24조
1971년 제77호	1971년 이민법	부칙 2의 제17(2)항 “거소가 위치한 경찰관할에서의 행동”과 “영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
1972년 제20호	1972년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제164조제2항
1972년 제27호	1972년 도로교통(외국차량)법	제3조제2항
1972년 제71호	1972년 형사사법법	제34조제3항
1973년 제57호	1973년 행상인법	제10조제1항b호
1974년 제6호	1974년 생화학무기법	제4조제1항 “이름이 기재된”
1976년 제32호	1976년 복표 및 오락법	제19조 “영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1976년 제58호	1976년 부패가 쉬운 식품의 국제화물법	제11조제6항
1977년 제45호	1977년 형법	제11조 제62조
1979년 제2호	1979년 관세 및 소비세법	제138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 “또는 경관”
1980년 제43호	1980년 치안판사법원법	제49조
1980년 제49호	1980년 사슴법	제4조제1항c호
1980년 제66호	1980년 고속도로법	제137조제2항

장	소제목	폐지의 범위
1980년 제10호	1980년 머지사이드주법	제33조
1980년 제9호	1980년 웨스트미들랜드주 의회법	제42조
1981년 제14호	1981년 대중교통법	제25조제2항
1981년 제22호	1981년 동물건강법	제60조 제3항과 제4항 “또는 이해하는”과 제5항의 두 번째 “경관 또는”
1981년 제42호	1981년 외설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영장의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981년 제47호	1981년 범죄기도법	제9조제4항
1981년 제69호	1981년 야생 및 공원법	제19조제1항c호
1982년 제48호	1982년 형사사법법	제34조
1983년 제2호	1983년 의회법	제97조제3항 세 번째 “그를”이 있는 다섯 번째 “그리고”부터 삭제
1983년 제20호	1983년 정신건강법	제135조 제1항과 제2항 “영장에 이름이 명시된”

제2부 제7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법령

장	소제목	폐지범위
1971년 제14호	1971년 콘웰주 의회법	제98조제4항
1972년 제27호	1972년 햄프셔주 의회법	제86조제2항

제3부 제7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되는 법령

장	소제목	폐지범위
엘리자베스2세 3,4년 제18호	1955년 육군법	제198조제1항의 “본법의 본조와 제198A조 및 제198B조”
		제198A조와 제198B조
엘리자베스2세 3,4년 제19호	1955년 공군법	제198조제1항의 “본법의 본조와 제198A조 및 제198B조”
		제198A조와 제198B조
1965년 제20호	1965년 형사증거법	법 전체
1969년 제48호	1969년 우체국법	제93조제4항의 “1965년 형사증거법”
		부칙 4의 77항
1981년 제55호	1981년 국군법	제9조
1981년 제18호	1981년 켄트주법	제82조
1983년 제55호	1983년 부가가치세법	부칙 7의 7항7호 및 8호

제4부 제8항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폐지되는 법령

장	소제목	폐지범위
빅토리아14,15년 제99호	1851년 증거법	제13조
빅토리아28,29년 제18호	1865년 형사절차법	제6조 “그리고 증명서”부터
빅토리아34,35년 제112호	1871년 범죄예방법	“영연방 중 어떤 곳에서 이전에 기소된 적이 있다는 것이 다른 영연방에서 구금된 사람에게 해당하는”을 제외한 제18조

제5부 제8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폐지되는 법령

장	소제목	폐지범위
빅토리아 16,17년 제83호	1853년 증거(개정)법	제3조
빅토리아 46,47년 제3호	1883년 폭발물법	제4조제2항

빅토리아 58,59년 제24호	1895년 고충처리법	제5조
빅토리아 61,62년 제36호	1898년 형사증거법	제1조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기소된 사람의 배우자” (b호에서) “또는 사안에 따라, 기소된 사람의 배우자”와 c호 및 d호
		제4조
		제6조제1항에서 마지막 부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
조지5세 4,5년 제58호	1914년 형사사법행정법	제28조제3항
조지5세 19,20년 제34호	1929년 신생아(보호)법	제2조제5항
조지5세 23,24년 제12호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조
		제26조제5항
엘리자베스2세 4,5년 제69호	1956년 성범죄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15조제4항과 제5항
		제16조제2항과 제3항
		제39조
엘리자베스2세 8,9년 제33호	1960년 아동성범죄법	제3조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 제15조와 관련한 접수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제15조(피고인 배우자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예외”
1965년 제72호	1965년 혼인원인법	제43조제1항
1968년 제60호	1968년 절도법	제30조제3항
1970년 제55호	1970년 가계수입보조법	제12조제5항
1973년 제38호	1973년 사회안전법	부칙 23의 4항
1975년 제14호	1975년 사회안전법	제147조제6항
1975년 제16호	1975년 산업재해 및 질병(미해결)법	제10조제4항
1975년 제61호	1975년 아동복지법	제11조제8항
1976년 제71호	1976년 추가보조금법	제26조제5항
1977년 제45호	1977년 형법	제54조제3항 “제2항(피고인 배우자의 증거제출능력)”.
1978년 제37호	1978년 아동보호법	제2조제1항
1979년 제18호	1979년 사회안전법	제16조
1980년 제43호	1980년 치안관사법원법	부칙 7의 4항
1982년 제24호	1982년 사회안전 및 주거보조법	제21조제6항

제6부 기타 폐지

장	소제목	페이지의 범위
빅토리아 2-3년 제47호	1839년 대도시경찰법	제7조
빅토리아 34-35년 제96호	1871년 행상인법	제18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법”의 “또는”과 동조 끝의 “그리고 즉시”
1964년 제48호	1964년 경찰법	제49조 제50조
1967년 제77호	1967년 경찰(스코틀랜드)법	제5조제3항과 제17조제6항
1972년 제11호	1972년 연금법	부칙 1에서 경찰고충위원회
1975년 제24호	1975년 하원의원자격제한법	부칙 1의 제2부에서 경찰고충위원회에의 접수
1975년 제25호	1975년 북아일랜드의원자격제한법	부칙 1의 제2부에서 경찰고충위원회에의 접수
1976년 제46호	1976년 경찰법	제1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2호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에서 “보수”와 “수당”, 제5항 내지 제13항

책임연구보고서 2011-19

영국의 PACE법 연구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